발 간 등 록 번 호
11-1543000-001300-01

2016. 2.

친환경축산물 인증 및 직불제 개편방안 연구

연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REI

농림축산식품자료실
0016503

-106

농림축산식품부

연구 담당

송우진	연구위원	연구 총괄, 제1장, 제5장, 제6장 집필
김현중	전문연구원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집필
정세미	연구원	제2장, 제4장 집필
강혜정	전남대학교 교수	제5장 집필

제 출 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친환경축산물 인증 및 직불제 개편방안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6년 2월

연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책임자: 송 우 진(연 구 위 원)
연구참여자: 김 현 중(전 문 연 구 원)
연구참여자: 정 세 미(연 구 원)
연구참여자: 강 혜 정(전남대학교 교수)

요 약

○ 무항생제축산물에 항생제가 사용되고 있다는 소비자의 불만이 표출되고 있어 인증기준의 개선이 요구됨. 소비자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 무항생제축산물 인증기준을 강화하여 항생제 사용 가축의 시장 격리 방안을 제안함. 항생제가 사용된 경우 격리되기 때문에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품으로 한정하여 보면, 항생제 사용이 금지된 효과가 있음.

○ HACCP, 친환경축산물(무항생제, 유기), 동물복지 인증제가 개별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농가가 복수의 인증을 받는 경우 평가의 중복으로 인하여 불편을 호소함. 인증제의 통합운영을 위하여 인증제 간 공통사항을 검토하였으나 통합인증 방안 마련이 어렵다고 판단함.

○ 복수 인증 농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는 인증기준의 통합보다는 하나의 인증기관이 복수 인증을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음. 그러나 인증기관의 인증 영역이 분리되어 운영되는 상황에서 인증기관이 복수인증을 수행하는 것은 인증영역 구분을 무력화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함.

○ 산지생태축산 지정 및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지만 사업 실적이 부진하여 축산농가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유인 제공이 요구됨. 산지생태축산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증표시를 통한 시장 차별화, 기존 직불제 또는 정부사업 활용, 기존 인증제 활용 등의 방안을 검토함.
  - 산지생태축산 인증제 신설은 소비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함.
  - 산지생태축산의 결과 유휴자원을 활용한 조사료 생산, 조건불리지역에서의 소득창출, 주변경관의 개선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각각에 지원되고

있는 기존의 제도를 활용하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함.

- 산지생태축산 농가를 친환경축산물 인증 또는 동물복지 인증으로 유도한다면, 기존의 인증제를 활용하여 산지생태축산 농가에 경제적 이익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함.

○ 2009년 친환경안전축산물 직불제가 도입된 이후, 축산업의 여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직불금 지급단가 조정이 없었음. 또한 경종부분의 친환경농산물 직불 단가가 인상되고 직불 기간이 확대되었음에도 축산부분에서는 이에 대응하는 조치가 없었음. 유기축산물 인증 실적이 감소(11년 20,695톤 → 14년 13,863톤)하고 있어 유기축산물 인증농가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함. 지원 확대 방안으로 직불금 단가의 인상과 유기지속 직불금의 도입을 제안함.

○ 동물복지 인증농가는 생산물에 인증표시를 하여 시장에서 차별화된 가격을 수취할 수 있으나 소비자의 추가지불 의향이 생산비 증가분을 상쇄할 정도로 높지 않음. 따라서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으로 인한 소득감소분을 직불금으로 보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 친환경인증의 업무는 경종부분에서 주로 이루어짐. 따라서 민간인증기관은 주로 경종에 전문성이 있는 심사원을 확보하고 있음. 이에 따라 심사원의 축산관련 전문성이 떨어져 인증대상 축산농가의 불만이 표출됨. 인증대상 농가의 불만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인증의 신뢰도 저하임. 산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으면 공정하고 정밀한 심사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임. 인증기관의 전문성 강화 방안으로 심사원에 대한 축산관련 전문성을 평가하는 방안을 제안함. 평가의 기준은 축산관련 학위, 경력, 자격증 등이 있음. 또한 인증원에 대한 교육의 기회(자격취득 교육, 보수 교육)를 제공할 필요도 있음.

차 례

제1장 서 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 1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 5
3. 선행연구의 검토 ····· 9

제2장 축산 인증제도 현황

1. 친환경축산물 인증제도 ····· 15
2. HACCP 인증 ····· 30
3.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도 ····· 34
4. 산지생태축산 시범농장 지정 ····· 41

제3장 친환경안전축산물 직불제 운영 실태

1. 친환경안전축산물 직불제 도입 경과 ····· 47
2. 친환경안전축산직접지불 사업 ····· 49
3. 직불금 예산 및 지급 현황 ····· 54

제4장 설문 조사 분석

1. 생산자 조사 분석 ····· 59
2. 인증 농가 조사 분석 ····· 64
3. 소비자 조사 분석 ····· 84
4. 전문가 조사 분석 ····· 90
5. 분석 결과의 시사점 ····· 94

제5장 외국 사례

1. 유기축산물 인증제도 ····· 99
2. 외국의 축산 직불제 운영 실태 ····· 115
3. 외국사례의 시사점 ····· 124

제6장 축산 인증제 및 직불제의 개선방안

1.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개선 방안 ····· 127
2. 축산 인증제도의 효율적 운영 방안 ····· 142
3. 산지생태축산 활성화 방안 ····· 145
4. 축산관련 직불제 개선 방안 ····· 150
5. 친환경축산물 인증기관 전문화 방안 ····· 156

제7장 요약 및 결론 ····· 159

부록 1: 소비자 조사표 ····· 163
2: 생산자 조사표 ····· 169
3: 동물용의약품 휴약기간 ····· 180
4: 축산관련 인증 간 기준 비교 ····· 184

참고 문헌 ····· 198

표 차 례

제2장

표 2- 1. 친환경축산물 인증 기준의 심사 사항 ····· 17
표 2- 2. 친환경축산물 인증 마크와 표시 사항 ····· 20
표 2- 3. 친환경축산물의 인증 농가 현황 ····· 21
표 2- 4. 전체 사육농가에서 친환경축산물 인증 농가 비중 ····· 24
표 2- 5. 인증농가의 가구당 사육마릿수 ····· 26
표 2- 6. 인증심사원의 자격 기준 ····· 28
표 2- 7. 축산 부문 HACCP 적용 대상 ····· 31
표 2- 8. HACCP 적용 절차 ····· 32
표 2- 9. 가축사육업 HACCP 인증 현황 ····· 33
표 2-10.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산란계, 육계농장) ····· 35
표 2-11.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양돈농장) ····· 36
표 2-12. 동물복지 축산농장 표시사항 ····· 37
표 2-13.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누계 현황 ····· 39
표 2-14. 산지생태축산과 일반 관행축산의 비교 ····· 42
표 2-15. 산지생태축산농장 시범조성사업 내용 ····· 43

제3장

표 3- 1. 유기·무항생제축산물 직불제와 친환경안전축산물 직불제 비교 ····· 48
표 3- 2. 친환경안전축산물 직불금의 지급단가 ····· 51
표 3- 3. 친환경안전축산물 직불금 예산 및 지급 실적 ····· 54
표 3- 4. 친환경축산물 인증 농가 대비 직불금 수령 농가 비중 ····· 55
표 3- 5. 축종별 직불금 지급액 ····· 56

제4장

표 4- 1. 축종별 응답 현황 ····· 59
표 4- 2. 표본농가의 축산 인증 현황 ····· 60
표 4- 3. 인증 유무별 인증 유지 및 신규 인증 의향 ····· 60
표 4- 4. 축종별 인증 현황 ····· 61
표 4- 5. 축종별 중복 인증 현황 ····· 62
표 4- 6. 축종별 인증 참여 의향 ····· 63
표 4- 7. 표본농가 인증 현황 ····· 65
표 4- 8.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은 이유 ····· 66
표 4- 9. 친환경축산물 인증 준비시 애로사항 ····· 66
표 4-10. 친환경축산물 인증 후 운영시 어려웠던 점 ····· 67
표 4-11. 친환경축산물 인증 후 증가한 비목 ····· 69
표 4-12.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을 받으려는 이유 ····· 71
표 4-13.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의향이 없는 이유 ····· 71
표 4-14. 친환경안전축산물 직불금 수령 농가 비율 ····· 72
표 4-15. 직불금을 수령하지 않은 이유 ····· 72
표 4-16. 친환경축산물 직불금 단가 및 지급기간 연장 관련
만족 여부 ····· 73
표 4-17. 한우 표본농가 인증 현황 ····· 73
표 4-18. 사육기간별 항생제 사용 비중(한우) ····· 74
표 4-19.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개선에 대한 의견(한우) ····· 75
표 4-20. 한돈 표본농가 인증 현황 ····· 75
표 4-21. 사육기간별 항생제 사용 비중(한돈) ····· 76
표 4-22.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개선에 대한 의견(한돈) ····· 76
표 4-23. 우유 표본농가 인증 현황 ····· 77
표 4-24. 사육기간별 항생제 사용 비중(우유) ····· 78
표 4-25. 오리 표본농가 인증 현황 ····· 78

표 4-26. 사육기간별 항생제 사용 비중(오리) ····· 79
표 4-27.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개선에 대한 의견(오리) ····· 80
표 4-28. 산란계 표본농가 인증 현황 ····· 81
표 4-29. 사육기간별 항생제 사용 비중(산란계) ····· 81
표 4-30.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개선에 대한 의견(산란계) ····· 82
표 4-31. 육계 표본농가 인증 현황 ····· 82
표 4-32.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개선에 대한 의견(육계) ····· 83
표 4-33. 시행 중인 인증제도에 대한 인지도 ····· 85
표 4-34. 인증표시가 축산물 구매에 미치는 영향 ····· 85
표 4-35. 인증 축산물 구매 경험 및 구매의사 없는 이유 ····· 85
표 4-36. 일반 축산물과 인증 축산물의 식품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인식 ····· 87
표 4-37. 축산 인증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 ····· 87
표 4-38. 무항생제 인증 관련 동물용 의약품 사용에 대한 소비자 인식 ····· 89
표 4-39. 전문가의 유형 구분 ····· 90
표 4-40. 무항생제 축산물의 동물용의약품 사용에 대한 의견 ····· 91
표 4-41. 항생물질 잔류 없을 경우 무항생제축산물로 판매 가능 여부 ····· 92
표 4-42. 미래 축산 정책의 중요도 ····· 93

제6장

표 6- 1. 무항생제축산과 일반축산의 동물용 의약품 사용 기준 비교 … 128
표 6- 2. 도축장의 잔류물질 검사 양성 판정 현황(2013년) ····· 130
표 6- 3. 축종별 사육과정과 질병 취약 시기 ····· 137
표 6- 4. 오리 사육농가의 오리 출하일령 ····· 140
표 6- 5. 유기축산물과 동물복지 인증 세부규정 차이점(돼지) ····· 144
표 6- 6. 친환경안전축산물 직불금의 지급단가 조정(안) ····· 152

그 림 차 례

제1장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 8

제2장

그림 2-1.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의 친환경축산물 인증 절차 ····· 19
그림 2-2.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농가 수 변화 ····· 22
그림 2-3. 유기축산물 인증 농가 수 변화 ····· 22
그림 2-4. 축산물 종류별 인증 농가 비중 변화 ····· 23
그림 2-5. 지역별 친환경축산물 인증 농가 수 ····· 25
그림 2-6.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절차 ····· 37
그림 2-7. 지역별 동물복지 인증 현황(2015년 기준) ····· 39

제3장

그림 3-1. 친환경안전축산물 직불제 사업 추진 체계 ····· 53
그림 3-2. 축종별 직불금 지급액 비중 변화 ····· 57
그림 3-3. 축종별 농가당 평균 직불금 수령액 ····· 58

제4장

그림 4-1. 축종별 응답 비율 ····· 65
그림 4-2. 모든 축산물에 대한 친환경축산물 판매 여부 ····· 67
그림 4-3. 전체 사육 마릿수에 대한 친환경축산물 인증 여부 ····· 68
그림 4-4. 무항생제 명칭 변경 필요 여부 ····· 69
그림 4-5. 가축의 전생애 무항생제 사육 가능 여부 ····· 70
그림 4-6. 일반 축산물 및 인증 축산물에 대한 신뢰도 ····· 86

그림 4-7. 동물복지 축산 활성화 및 예산 지원 필요 여부 ····· 88
그림 4-8. 무항생제 축산물의 직관적 의미에 대한 국민 인식 ····· 88
그림 4-9. 산지생태축산 활성화 및 예산 지원 필요 여부 ····· 89

제5장

그림 5-1. EU의 유기농제품 인증마크 ····· 101
그림 5-2. 미국의 유기농제품 인증마크 ····· 102
그림 5-3. 일본 유기축산 JAS 인증마크 ····· 104
그림 5-4. 영국의 동물복지 인증마크 ····· 111
그림 5-5. 독일의 동물복지라벨 인증 마크 ····· 112
그림 5-6. Beter Leven의 단계와 친동물 육류 마크(Beter Leven) ····· 113
그림 5-7. 미국의 Free Farmed Program 인증마크 ····· 114

제6장

그림 6-1.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개선(안) ····· 131
그림 6-2. 오리 사육농가의 출하일령 분포 ····· 140

제 1 장

서 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1.1. 친환경축산물 인증제도 개편 필요성

○ 우리나라 축산 부문에 도입된 인증제도는 친환경축산물(유기, 무항생제) 인증,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HACCP 인증(가축사육업, 도축업, 축산물 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 판매업 등),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1]이 있음.

○ 친환경축산물 인증은 유기축산물과 무항생제축산물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있음. 유기축산물 인증은 2001년부터 도입되었으며,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은 2007년부터 도입되었음.

- 친환경축산물 인증제가 도입된 이후 인증 실적은 무항생제축산물 위주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2013년을 정점으로 감소함. 친환경축산물에서 유

1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 제도는 2009년에 도입된 이후 2013년까지 8농가 지정에 그치고, 가축분뇨 자원화, 축산업 허가제 등으로 가축분뇨의 적절한 처리 및 이용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짐에 따라 본 제도의 필요성 약화로 폐지할 계획임(농림축산식품부 2014. 1. 16일자 보도자료).

기축산물 인증농가의 비중은 매우 낮은 실정임.

- 2013년 이후 인증이 크게 감소한 것은 2013년 관련 법령 개정으로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유효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변경되어 인증 농가의 인증 유지비용이 증가하였고, 2013년 10월에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가 강화되었기 때문임.

○ 최근 들어 친환경축산물 인증제의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은 상황임. 무항생제축산물 인증농가의 전환기간 및 휴약기간 미준수, 유기축산물 인증농가의 유기사료 인증기준 미준수, 친환경축산물의 잔류물질 모니터링 검사 부실 및 생산과정 조사 부실, 친환경축산물의 유해성 잔류물질 검출 등 친환경축산물 인증의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2]

- 이외에 친환경농산물 부실인증 방지 대책 미흡(감사원 2014)이 제기된 바 있었고, 이와 더불어 축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인증심사원이 인증을 할 경우 부실 인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강화하거나 축산부문 전문인증기관의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됨.

○ 아울러 “무항생제”란 명칭을 사용할 경우 가축에게 항생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의미로 소비자들이 오해할 수 있으므로 무항생제축산물에 대한 명칭 변경 또는 정확한 정보 제공 등에 대한 요구가 높음.[3]

- 친환경축산물 인증 기준에 의하면, 유기축산물 또는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농가라 하더라도 질병이 발생할 경우 수의사의 처방이나 처방매뉴얼에 따라 가축에게 항생제 등 동물용 의약품의 사용이 가능함.

○ 무항생제축산물 명칭 개선과 더불어 인증기준 강화에 대한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음.

---

2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2015. 2; 축산물 안전 관리 실태, 2014. 2; 농식품 인증제도 운영실태) 내용 참고.

3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2015. 2; 축산물 안전 관리 실태) 내용 참고.

- 무항생제축산물 명칭에 맞게 항생제 등 동물용 의약품 사용과 관련된 인증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음.
- 2011년 하반기에 사료첨가용 항생제 사용[4]이 전면 금지되고 2013년 8월에는 동물약품 수의사 처방제[5]가 시행되어 일반축산물과 무항생제축산물의 차이가 축소되는 상황임.

○ 친환경축산물 인증 이외에도 국내 축산 부문 인증제도로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축산물 HACCP 인증이 운영되고 있음. 친환경축산물 인증 농가는 친환경안전축산물 직불금 신청을 위해 HACCP 인증을 받고, 최근 소비자들의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을 받는 등 중복 인증을 받는 농가들이 늘어나고 있음.

- 축산부문 인증 간 유사점이 있고 복수 인증 농가들이 중복 서류 제출 등으로 불편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어 복수 인증 농가의 불편을 해소할 방안 마련이 필요함.

○ 한편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은 2012년 산란계에 도입되었고, 2013년 돼지, 2014년 육계, 2015년에는 한육우, 젖소, 염소로 확대되었음.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은 2015년 11월 기준 76건으로 인증 건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산란계 농가 위주로 이루어짐.

-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실적이 저조하고, 산란계 이외에 다른 축종으로 확산되지 않는 원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

4 농식품부 2010년 4월 9일자 보도자료 “사료용 항생제 없이 축산 가능합니다”

5 농식품부 2013년 7월 24일자 보도자료 “동물약품 수의사 처방제, 8월 2일부터 실시”

1.2. 친환경안전축산물 직불제 개편의 필요성

○ 정부는 친환경 축산의 확산과 지속가능한 축산 기반 구축을 위해 2009년부터 친환경안전축산물 직접지불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 제도를 통해 친환경축산 실천 축산농가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을 지원하고 있음.[6]

○ 축산업 여건 변화 등에 따라 직불금의 지급 단가에 대한 조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유기농업에 지급하고 있는 유기지속직불금을 유기축산에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됨. 또한 사슴, 번식 농가, 종축업 등 다른 축종과 번식 부문으로 직불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자는 의견도 있음.

- 메추리알, 산양, 산양유를 제외한 다른 축종들의 지급단가는 직불제가 도입된 2009년 이후 조정이 없었음. 메추리알, 산양유, 산양은 2014년부터 직불금 대상에 포함됨[7].
- 유기농산물 생산하여 직불금을 최장 5년간 지급 받은 필지라도 추가적으로 3년간 유기지속직불금을 지급하지만, 유기축산에는 유기지속직불금이 적용되지 않음.
- 사슴의 경우, 친환경축산물 인증은 받을 수 있지만 HACCP 인증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직불금을 신청할 수 없음. 친환경축산물의 출하실적에 따라 직불금이 지급되고 있어 번식농가나 종축업은 대상에서 제외됨.

○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부존자원인 산지를 활용하여 사료 자급률을 제고하고, 친환경, 동물복지, 농가 소득 증대 등을 도모하는 산지생태축산의 육성을 위해 2014년부터 산지생태축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음.[8] 2015년 9월 기준 18농가가 산지생태축산 시범 농장으로 선정되었음.

- 시범 농장을 선정하여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등 정책 사업을 통해

---

6 농림축산식품부 2015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참조.
7 메추리알, 산양, 산양유는 한성일 외(2013년)에서 제시한 지급단가를 적용함.
8 농림축산식품부(www.mafra.go.kr)-정책 홍보-축산분야-산지생태축산활성화 참조.

지원하고 있지만 산지생태축산의 육성에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산지생태축산이 친환경 축산과 관련이 높은 만큼 친환경축산물 인증과 친환경안전축산물 직불제 등과의 연계를 통해 산지생태축산 실천 농가에 대한 지원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1.3. 연구의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소비자의 신뢰 구축과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의 확산을 위해 친환경축산물 인증제도와 친환경안전축산물 직접지불제 개편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음.

- 무항생제축산물에 대한 명칭 변경 및 인증기준 개선 검토
- 친환경축산물, 동물복지 축산농장, HACCP의 인증기준 비교 분석을 통한 인증제도의 효율적 운영 방안 제시
- 친환경축산물 인증의 전문성 제고 방안 제시
- 친환경안전축산물 직불제의 지급단가, 지급기한 등 개선 방안 제시
- 산지생태축산의 활성화 방안 제시
-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저조 원인 분석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2.1. 연구내용

○ 축산 인증제도 운영 실태와 개선 과제

- 친환경축산물 인증, 동물복지 축산농장, HACCP 인증 제도 현황
- 산지생태축산 시범농장 지정 및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 제도 현황

- 개별 인증 기준 비교 분석: 공통 인증기준과 개별 인증기준으로 구분
- 친환경축산물 인증제도의 개선 과제 도출

○ 친환경안전축산물 직접지불제 운영 실태와 개선 과제
- 친환경안전축산물 직불제 도입 경과
- 직불제 개요 및 직불금 지급 현황
- 직불제 개선 과제 도출

○ 해외 축산 관련 인증제도 및 직불제 운영 실태와 시사점
- 미국, 유럽, 일본의 사례
- 외국 사례의 시사점

○ 축산 부문 인증제 개편 방안
-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개선 방안
- 축산부문 인증제도의 효율적 운영 방안
- 산지생태축산 활성화 방안
-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저조 원인 분석
- 친환경축산물 인증 전문성 제고 방안

○ 친환경안전축산물 직접지불제 개편 방안
- 축종별 직불금 지급단가 등 조정
- 직불제 수혜 대상 확대
- 유기축산물 지속 직불금 지원

2.2. 연구방법

○ 문헌 조사 및 자료 수집
- 친환경축산물, HACCP, 동물복지축산농장 등 인증제 현황 및 개선과제
- 축산 부문 인증제도의 개별 인증기준에 대한 비교 분석
- 산지생태축산 시범농장 지정제도 현황
- 친환경안전축산물 직불제 운영 실태 및 개선과제
- 외국의 인증제도와 직불제 운영 실태

○ 소비자, 생산자, 전문가 조사 분석
- 소비자 조사 내용: 축산물 인증제도 인지도 및 필요성, 인증 축산물의 신뢰도, 안전성, 무항생제축산물에 대한 인식 등
- 생산자 조사 내용: 도입 의향, 도입 동기, 인증 지속 의향, 항생제 사용 실태, 건의 사항 등
- 전문가 조사: 무항생제축산물의 동물용의약품 사용 및 개선 의견 등

○ 전문가 협의회
- 정부 담당자, 인증기관협회, 인증제도 및 직불제 운영 기관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협의회 운영
- 친환경축산물 인증제도 및 직불제 개편 방안에 대한 논의 등

○ 협동 연구
- 외국의 축산 부문 인증제도와 직불제 운영 실태와 시사점

2.3. 연구의 흐름도

○ 본 연구는 친환경축산물 인증제도와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 개선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의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 문헌조사 및 자료 수집, 설문 조사, 외국 사례 조사 등을 통해 개선 과제와 시사점을 도출하여, 친환경축산물 인증제와 친환경안전축산물 직불제 개편(안) 마련 후, 전문가 협의회를 거쳐 최종 개편 방안을 마련함.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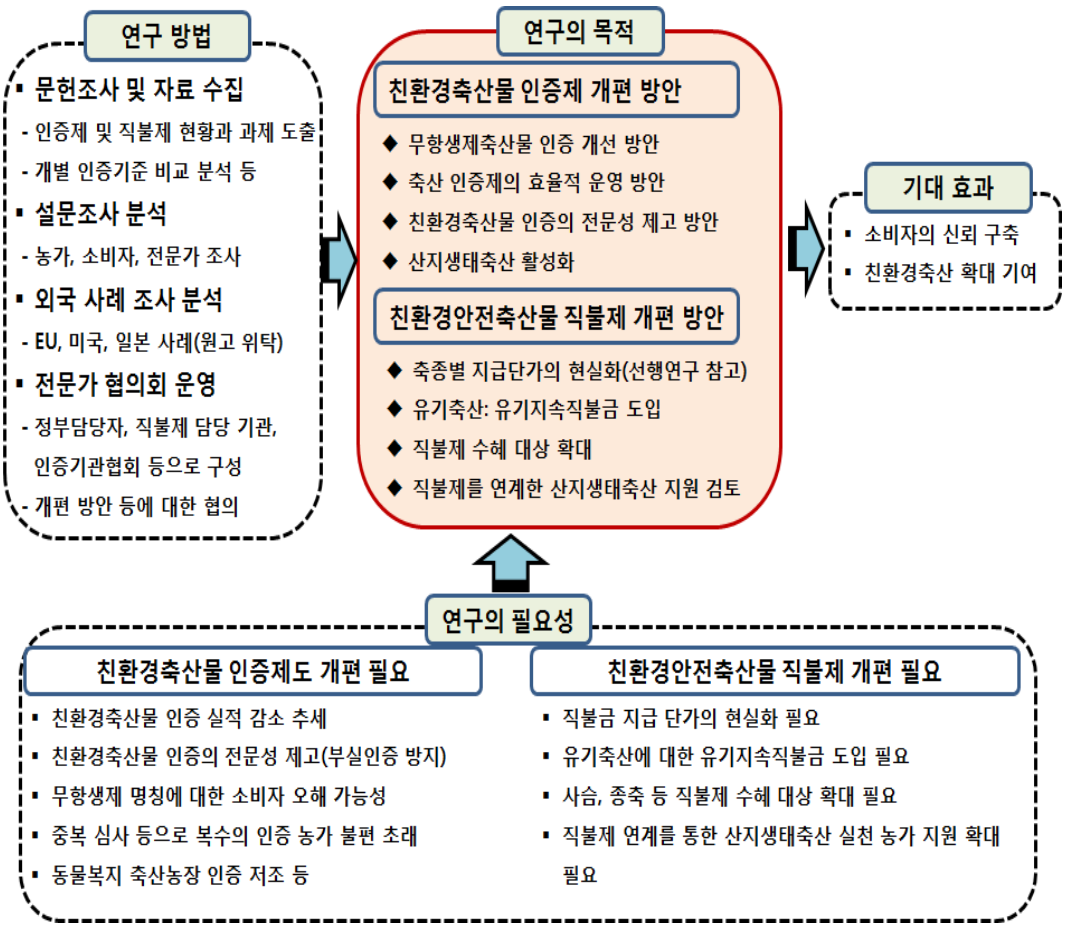

3. 선행연구의 검토

3.1. 축산 부문 인증제도 관련 연구

○ 친환경 축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 타당성 검토(유병덕 외 2015)

- 운용중인 축산부문 네 종류의 인증제도의 인증기준을 검토하고 농가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인증제도의 통합운영 타당성을 검토함. 통합 운영 검토 결과 HACCP은 별도 인증체계를 유지하되 유기축산물과 동물복지를 하나의 기준으로 통합할 것을 제안함.
-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의 경우 '무항생제' 명칭의 부적절함을 지적하고, 현행 인증기준을 보완하여 축산물 우수관리제로 전환할 것을 제안함.

○ 친환경축산물 차별화를 위한 소비자 구매행동 분석(석희진 2015)

- 소비자들이 친환경축산물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구매 행동으로는 어떤 특징을 보이고 있는지를 분석하여 친환경축산물의 차별화 방안을 제시함. 차별화 방안으로는 제품차별화(환경보호, 안전, 인증마크), 가격차별화(고가격 차별화 시도 및 할인 판매), 유통차별화(전문 매장, 전용 온라인 쇼핑몰, 대형마트의 전용 코너), 촉진차별화(TV 프로그램 활용, 인터넷을 통한 정확한 정보 전달) 등을 제시함.

○ 계란의 속성가격 분석을 이용한 인증 축산물의 가치 평가(김현중 외 2015)

- 축산농가의 제품 차별화 전략이나 유통업자의 판매 전략 수립, 정부의 축산물 인증제도 운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인증축산물에 대한 가격 프리미엄을 계측함. 계측 결과, 유기 계란은 일반 계란에 비해 67.6% 높고, 동물복지 인증 계란은 17.2%, 무항생제 계란은 12.0%, 환경친화축산농장 인증은 5.2% 높은 것으로 추정됨. 또한 복수의 인증을 받을 경우 추가적인 가격 프리미엄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됨.

○ 축산업 선진화 방안 연구(정민국 등 2011)

- 축산업 선진화 방안 연구의 한 부분인 축산 관련 인증제 현황과 개선 방향에서 축산 부문 인증제도 운영 현황과 축산물 인증제에 대한 생산자 및 소비자 인식 조사 분석을 토대로 인증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함. 인증제 개선의 기본 방향으로 인증의 단순화, 소비자와 생산자 이해 제고 및 신뢰 확보 등을 제안함.

○ 친환경축산물 관련제도의 개선방안(유환진 2010)

- 친환경축산물(유기, 무항생제) 인증제도, 축산물 HACCP,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 등 축산관련 인증 제도를 검토한 후 농가 및 소비자 조사를 통해 인증 제도의 개선 방안을 도출함. 소비자의 혼란을 줄이고 인증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인증 및 감독 기관의 역할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함. 인증제도의 개선 대책으로 국제기준과의 조화, 홍보 및 교육 강화, 간소화, 인증 농가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함.

○ 동물복지형 축산의 동향과 과제(우병준 외 2010)

- 국내외 농장 동물복지 관련 동향을 조사하고, 농장 동물복지 도입 의향, 동물복지형 축산물을 포함한 인증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가치 평가를 토대로 동물복지형 축산 도입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함.
- 특히 소비자 가치 평가에서는 소비자의 지불의향을 조사하여 인증 축산물(쇠고기, 우유, 돼지고기, 계란, 닭고기)에 대한 가격 프리미엄을 계측하여 제시함. 동물복지형 축산물의 가격 프리미엄은 유기축산물에 비해서는 낮지만 일반 축산물과 무항생제축산물보다는 높게 추정됨.

○ 외국의 유기축산 관련 연구로는 OECD(2004), Hermansen(2003), Lohr and Salonmonsson(2000) 등임. 이러한 연구들은 유기 축산에 대한 직불금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함.

○ 외국의 유기 및 동물복지와 관련된 가격 프리미엄 계측 연구로는 Jae Bong Chang et al.(2010), Thasanee Satimanon et al.(2010), Changhee Kim et al.(2011) 등이 있으며, 계란의 속성가격 분석을 통해 유기 및 동물복지 인증 계란의 가격 프리미엄이 존재한다는 것을 밝힘.

○ 친환경농식품의 생산·소비실태와 시장전망(김창길 외 2012)

- 친환경농식품의 생산과 소비 실태를 파악한 후 시장 전망을 실시함. 친환경농식품의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폐지가 예정된 저농약 인증이 유기와 무농약 인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정책 개발의 필요성을 언급함. 이 외에 지자체의 적극적인 친환경농업 육성 정책, 직불금 연차별 차등 지급 및 지급기한 연장 조정,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 건립, 철저한 인증 시스템 구축, 학교 급식을 통한 판로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개선방안(신용광 외 2007)

-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운영 실태를 정리하고 전문가 및 농가 조사 분석,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해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의 중장기 개선 방안을 제시함. 인증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후관리가 강화되어야 하고, 생산부터 판매까지 일관된 인증제도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3.2. 친환경축산 및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관련 연구

○ 친환경안전축산물 직불제 개편방안 연구(한성일 외 2013)

- 친환경축산물 생산 농가의 수익성 분석, 일본, 미국, 유럽 등 외국의 친환경 축산 지원 사례 등을 토대로 직불제의 지급단가, 지급기한, 지급한도 등의 조정(안)과 직불금 지급 축종 확대 방안, 법·제도적 측면의 개선 사항을 제시함.

- 친환경축산물 인증 농가의 수익성 분석을 근거로 축종별 직불금 지급 단가를 무항생제축산물의 경우 10.0(계란)~106.6%(토종닭) 상향 조정하고 유기축산물은 7.0~101.1% 상향 조정할 것을 제안함. 또한 사슴, 메추리알, 산양, 산양유에 대한 무항생제축산물 직불금 지급단가를 새롭게 산정하였으며, 메추리알, 산양, 산양유는 연구 결과가 반영되어 2014년부터 직불금 수혜대상에 포함됨.

○ 유기, 무항생제축산물 직불제 도입방안 연구(김창길 외 2008)

- 유기, 무항생제축산물에 대한 직불제 도입을 위하여 인증 농가의 수익성 분석, 주요국의 친환경축산 직불제 사례 분석을 통해 직불금 지원단가 산정, 소요 예산 추정 등 직불제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제시함. 본 연구 결과는 친환경안전축산물 직불제 도입에 직접적으로 활용됨.
- 친환경축산물을 생산하는 한우, 젖소, 돼지, 산란계, 육계 사육 농가의 관행 대비 생산비 상승, 수량감소에 따른 소득 감소분을 이용하여 직불금 지급단가를 산정함.

○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개편방안 연구(정학균 외 2014)

- 친환경농업의 환경보전 가치를 분석하고 주요 품목의 친환경 농산물 생산비와 소득분석을 통하여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 기간조정 및 품목별 차등 지원 등의 개편방안을 제시함.
- 친환경 농업 생산비와 소득을 관행 농업과 비교 분석한 결과, 친환경 농업의 생산비는 관행농업에 비해 높고, 소득은 낮은 것으로 분석됨. 또한 유기농업이 무농약농업에 비해 소득 감소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됨.
- 친환경농업 직불금은 품목별 소득차이를 고려하여 차등 지급해야하며 지급단가를 상향 조정할 것을 제안함. 또한 환경보전적 가치를 고려하여 유기농산물에 대한 직불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할 것을 제안함.

○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개편 및 환경기준 준수조건 지원정책 도입방안 연구(김창길 외 2009)

- 저농약 신규인증 폐지와 직불제 단가조정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친환경 농산물 수익성 분석을 통해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지원단가와 지원 방법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아울러 외국의 사례 분석을 토대로 환경기준 준수요건(ECC)의 국내 도입 방안을 마련함.

○ 친환경축산 직불제 관련한 과거 연구로는 박동규 외(2004)의 「중장기 직접지불제 확충 방안 연구」, 허덕 외(2005)의 「친환경 축산 직불제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등이 있음.

3.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개선 방안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에 대한 명칭을 변경하는 데 중점을 둠. 본 연구에서는 무항생제축산물의 동물용의약품 사용 기준에 대해 생산자·소비자·전문가 조사 분석, 외국의 인증 축산물에 대한 동물용의약품의 사용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무항생제축산물 명칭에 맞도록 인증 기준 개선에 초점을 맞춤.

- 부실인증 방지를 위한 친환경축산물 인증의 전문성 제고 방안 마련, 축산부문 인증제간 공통 인증 기준 비교 분석을 통한 인증제의 효율적 운영 방안 제시, 동물복지축산농장 저조 원인 분석 등은 내용면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화됨.

○ 친환경안전축산물 직불제와 관련된 연구는 직불금 지급 단가 산정에 초점을 맞추고, 외국 사례 등을 검토하여 직불금을 축산물이 아닌 친환경 축산 행위 또는 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음.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방향성에 대한 세부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차별화 함.

제2장

축산 인증제도 현황

○ 정부에 운영 중인 축산부문 인증에는 친환경축산물(유기, 무항생제) 인증, HACCP 인증,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등이 있음. 또한 산지생태축산의 육성을 위하여 산지생태축산 시범농장[9] 선정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본 장에서는 친환경축산물 인증제도를 비롯한 축산 부문에 도입된 인증제도와 산지생태축산에 대한 현황을 정리함.

1. 친환경축산물 인증제도

1.1. 친환경축산물(유기, 무항생제) 인증제도의 개요

○ 친환경축산물은 환경을 보전하고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항생제, 합성항균제, 호르몬제 등 화학자재를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최소량만을 사용하여 생산한 축산물을 의미함. 인증제도는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친환경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전문인증기관이 엄격한 기준으로 선별·검사하여 정부가 그 안전성을 인증해주는 제도임.[10]

9 농림축산식품부(www.mafra.go.kr)-산지생태축산농장 시범조성사업 지침서.

○ 친환경축산물은 유기와 무항생제로 구분됨. 유기축산물은 유기농산물의 재배·생산 기준에 맞게 생산된 유기사료 급여 등의 인증기준을 지켜 생산한 축산물을 의미함. 무항생제축산물은 항생제, 합성항균제, 호르몬제가 첨가되지 않은 일반사료 급여 등의 인증 기준을 지켜 생산한 축산물을 의미함.[11]

○ 친환경축산물 중 유기축산물은 2001년에 도입되었고, 무항생제축산물은 2007년에 도입되었음. 유기축산물의 경우 유기사료의 이용, 자급사료 확보 등 현실적으로 도입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경종부분의 무농약농산물에 대응하는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이 도입됨(김창길 외 2008).

-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이 도입된 2007년 당시만 하더라도 사료 내에 항생제 및 항균제 16종에 대해 혼합할 수 있었지만, 정부의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2009년 사료 내 혼합 가능한 항생 물질을 9종으로 줄이고 2011년 7월에는 모든 항생 물질의 사료 혼합을 금지함.[12]

1.2. 친환경축산물 인증 기준

○ 친환경축산물에 대한 인증 기준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에 제시되어 있음.

○ 친환경축산물 인증 기준에는 주요 심사 사항과 각 심사 사항에 대한 구비요건이 기술되어 있음. 주요 심사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유기축산물 인증의 경우 자급사료 기반을 확보하여야 하고, 사료 및 영양관리, 사육장 및 사육조건 등에서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기준보다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됨.

---

10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www.ihaccp.or.kr)-친환경인증-친환경축산물인증제도 소개.
1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인증관리정보시스템(www.enviagro.go.kr).
12 농림수산식품부 2010. 4. 9. 보도자료 “사료용 항생제 없이 축산 가능합니다” 참조.

표 2-1. 친환경축산물 인증 기준의 심사 사항

유기축산물	세부내용의 유사성	무항생제축산물
일반원칙 및 단체관리	동일	경영관리 및 단체관리
사육장 및 사육조건 (무항생제보다 더 넓은 조건, 유기 조건은 별도)	차이	축사 및 사육조건
자급사료 기반 (축종별 마리당 목초지 면적 등 확보)	유기만 해당	-
가축의 입식 및 번식 방법 (유기 인증 기준 적용)	유사	가축의 입식 및 번식방법 (무항생제 인증 기준 적용)
전환기간	동일	전환기간
사료 및 영양관리 (유기 사료 급여, 반추가축 조사료 급여, 유전자변형농산물 기준 등)	차이	사료 및 영양관리 (무항생제 사료 급여 등)
동물복지 및 질병관리 - 가축의 신체변형 금지	차이	동물복지 및 질병관리
운송·도축·가공과정의 품질관리 - 도축과정 고통최소화	차이	운송·도축·가공과정의 품질관리
가축분뇨의 처리	동일	가축분뇨의 처리
기타	동일	기타

자료: 허덕 등(2014) 수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www.naqs.go.kr) 고시 제2014-38호.

○ 친환경축산물 인증기준(유기와 무항생제 공통) 중 동물용의약품과 관련한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약초 및 천연물질을 이용한 치료가 가능하고, 구충제와 예방백신 사용 가능함.
- 법정전염병의 발생이 우려되거나 긴급한 방역조치가 필요한 경우 질병 예방 조치 가능함.
- 질병이 발생한 경우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동물용의약품 사용이 가능하나, 이 경우 해당 약품 휴약기간의 2배가 지나야 유기(또는 무항생제)축산물로 인정됨.
- 성장촉진제 및 호르몬제 사용이 금지되지만 치료목적의 호르몬 사용(수

의사처방)은 가능함.

-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해당 축산물의 출하 시에 해당 약품 휴약기간의 2배가 지났음을 확인하여야 하며, 최초 출하 시 인증기관에 잔류물질 검사(출하 전 생체잔류검사 또는 도축 후 식육잔류검사 등)를 의뢰하고 그 검사성적서를 비치하여야 함.

1.3. 친환경축산물 인증 절차

○ 친환경축산물 인증 대상은 인증 기준에 따라 생산 계획 중이거나 사육중인 축산물임. 최초인증, 갱신(연장), 생산계획변경을 원하는 신청인(개인 또는 단체)은 신청 유형에 맞는 인증신청서류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함. 사무소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신청서류를 접수하고 서류심사, 현장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인증서를 발급함.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의 인증업무는 향후(2017년 예정) 민간인증기관으로 완전 이양될 계획임. 당초 2014년에 인증업무를 민간으로 이양할 계획이었으나 연기됨(농림축산식품부 2013. 10. 24. 보도자료).

○ 친환경축산물 인증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인증품을 출하할 때에는 해당 인증 마크와 더불어 생산자, 품목, 생산지, 포장장소, 인증번호, 인증기관명 등을 표시함.

-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의 유효기간이 2013년 6월 관련 법령 개정으로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됨.

○ 인증품의 사후관리를 위해 생산과정조사와 유통과정조사를 실시함.[13]

- 생산과정조사의 경우 사무소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인증 건별로 농장 소재지를 방문하여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조사 내용은 경영관련 자

13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별표 5 참조.

료 기록 여부, 인증품의 출하내역, 인증품 표시의 적정성 여부, 금지물질의 구입, 보관 및 사용 여부, 인증기준 준수 여부 등임.

- 유통과정조사는 사무소장이 인증품 판매장, 취급작업장을 방문하여 조사하며, 조사 필요성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자체 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함. 조사 사항은 인증품의 표시사항 적정성 여부, 인증품의 구매내역 및 판매내역 일치 여부, 부정 인증품의 유통 여부 등임.

그림 2-1.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의 친환경축산물 인증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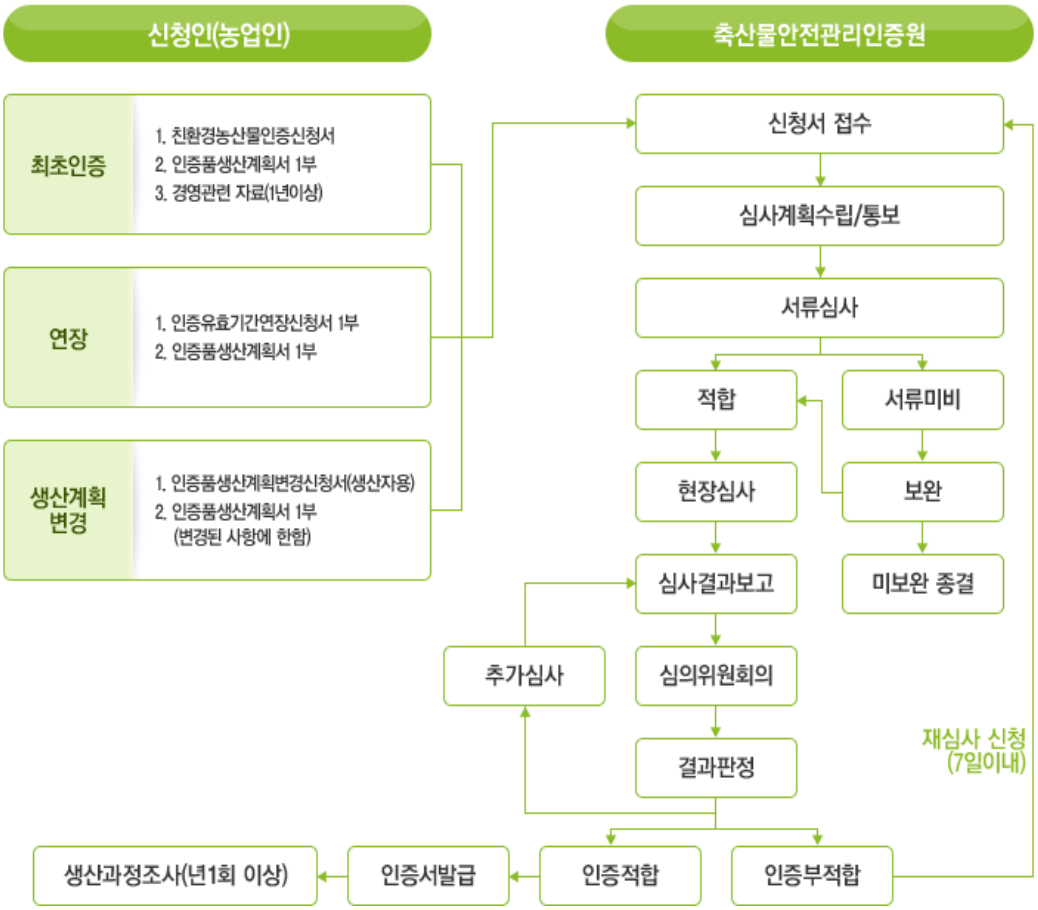

주: 심사결과 판정은 인증심의관이 결정하는데, 2016년부터 인정심의관 지정 요건이 업무경력 5년 이상이거나 상근심사원 경력 3년 이상으로 강화됨.

자료: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www.ihaccp.or.kr)-친환경인증-절차안내.

표 2-2. 친환경축산물 인증 마크와 표시 사항

인증품의 표시사항 - 유기		인증품의 표시사항 - 무항생제	
유기농 (ORGANIC) 농림축산식품부	• 생산자 : • 품목 : • 생산지 : • 포장장소 : • 전화번호 :	무항생제 (NON ANTIBIOTIC) 농림축산식품부	• 생산자 : • 품목 : • 생산지 : • 포장장소 : • 전화번호 :
인증기관명 : 인증번호 :		인증기관명 : 인증번호 :	

자료: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별표 4.

1.4. 친환경축산물 인증 현황

○ 친환경축산물 인증 실적은 2007년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도입과 함께 빠르게 증가하였다가 최근 들어 감소세로 전환됨. 친환경축산물 인증 건수는 2009년 4,477농가에서 2014년에는 8,492농가로 2013년보다 24.4% 감소하였고, 2015년에도 8,158농가로 3.9% 감소하였음.

○ 2014년 이후 인증농가 수가 급격히 줄어든 것은 2013년에 관련 법령 개정이 이루어지고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가 강화되었기 때문임.

- 친환경농업육성법이 2013년 3월에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로 바뀌면서 조문의 일부가 소비자 신뢰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음. 특히 법 개정으로 친환경축산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의 유효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바뀜에 따라 인증 농가의 인증 유지를 위한 비용과 시간이 늘어나게 됨.
- 또한 농식품부는 2013년 10월 부실인증 발생 방지와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위해 인증기관 형사처벌, 인증심사원 자격기준 및 인증기관 지정기준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전면개편”을 발표함.

표 2-3. 친환경축산물의 인증 농가 현황

단위: 농가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유기	한육우	45	43	36	39	34	34	35
	돼지	4	5	5	5	5	6	5
	닭	6	4	5	6	2	3	2
	오리	1	1	1	1	1	1	1
	젖소	24	35	41	38	47	46	48
	산란계	18	17	14	17	14	16	15
	오리(알)	-	-	-	-	-	-	-
	기타	3	2	1	2	-	-	4
	소계(A)	101	107	103	108	103	106	110
무항생제	한육우	3,222	4,458	4,728	6,902	7,880	5,446	4,889
	돼지	117	240	253	472	752	763	790
	닭	276	365	416	587	722	644	671
	오리	134	212	285	424	502	460	506
	젖소	73	204	177	229	282	214	222
	산란계	525	675	737	799	816	745	749
	오리(알)	8	11	6	15	14	8	11
	기타	21	73	82	165	156	106	210
	소계(B)	4,376	6,238	6,684	9,593	11,124	8,386	8,048
전체(A+B)		4,477	6,345	6,787	9,701	11,227	8,492	8,158

주: 기타에는 산양, 메추리가 포함됨.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내부자료.

○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농가는 2009년 4,376농가에서 2013년 11,124농가로 증가하였다가 2014년 8,386농가로 전년에 비해 24.6% 감소하였음. 2015년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농가 수는 8,048농가로 전년대비 4.0% 감소하였음.

- 특이할 만한 변화는 2011년 7월 사료에 항생제 첨가가 금지된 이듬해인 2012년에 들어 이전 연도에 비해 43.5%나 증가하였고,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유효 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변경된 이후 2014년 인증 농가수가 크게 감소하였다는 점임.

그림 2-2.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농가 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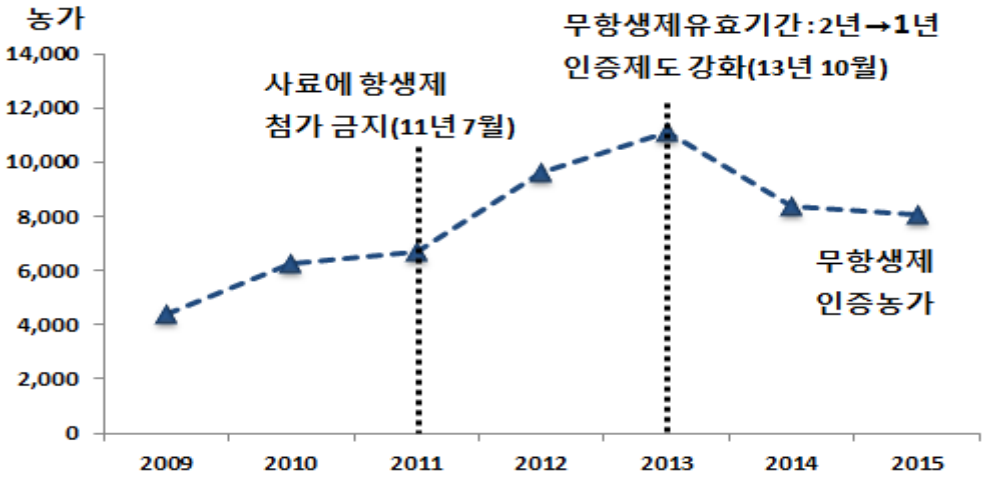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내부자료.

○ 유기축산물 인증 농가 수가 전체 친환경축산물 인증 농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2015년 기준)로 매우 낮은 수준임. 2009년 인증 농가 수는 101농가에서 2014년 106농가로, 2015년에는 110농가로 증가하였음. 유기축산물 인증 농가는 큰 변동 없이 유지되거나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그림 2-3. 유기축산물 인증 농가 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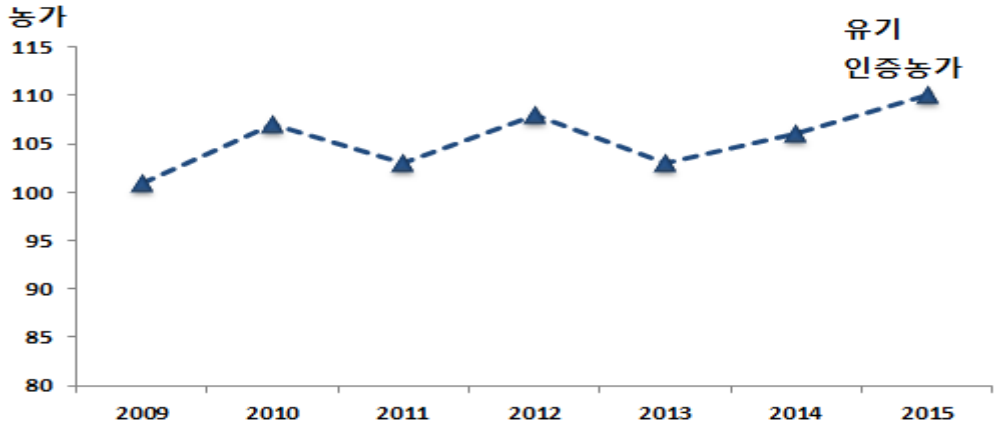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내부자료.

○ 축종별로 친환경축산물 인증 농가 비중을 보면(2015년 기준), 한육우 인증 농가의 비중이 60.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돼지가 9.7%, 산란계가 9.4%, 닭(토종닭 포함)이 8.2%, 젖소가 6.2%, 오리가 3.3%를 차지하고 있음.

그림 2-4. 축산물 종류별 인증 농가 비중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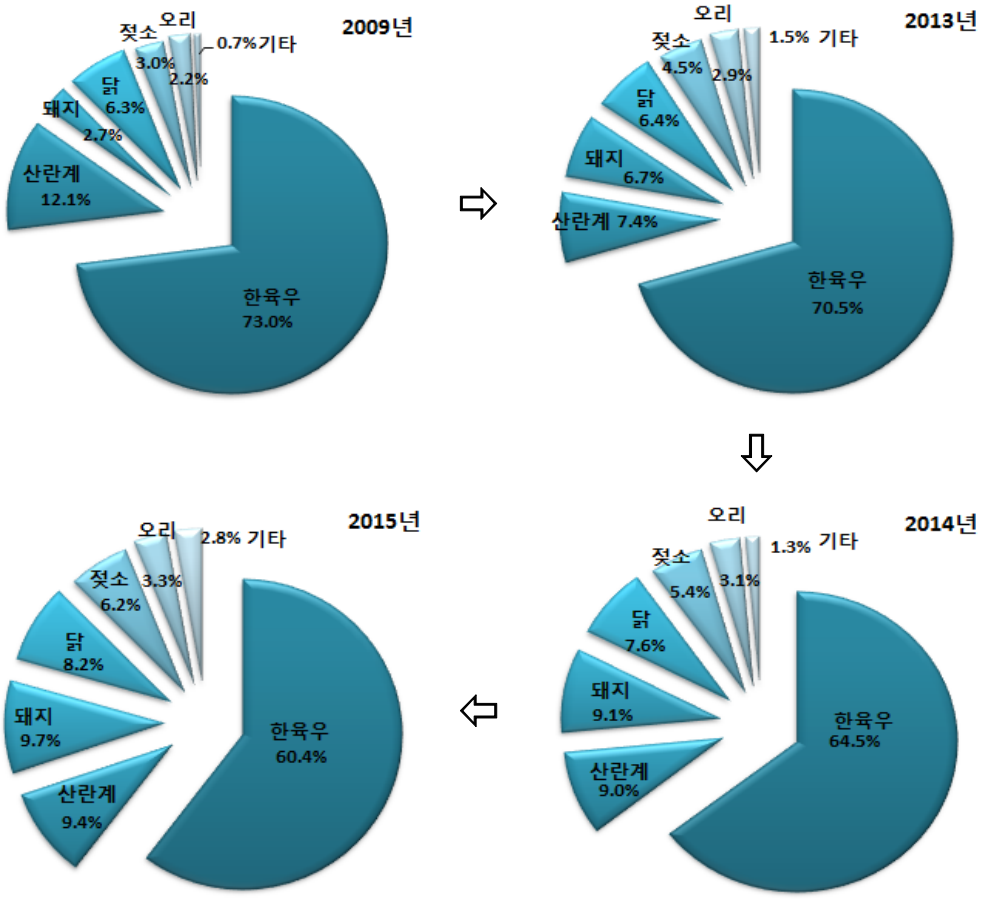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내부자료.

- 한육우의 경우, 2009년 전체 친환경축산물 인증 농가의 73.0%를 차지하였지만 점차 그 비중이 감소함. 특히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유효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변경된 이후부터 비중이 크게 줄어드는 양상을 나타냄.

- 돼지의 경우 2009년 이후 인증 농가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으며, 친환경축산물 인증 농가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9년 2.7%에서 2015년 9.7%로 증가함.
- 육계의 경우 2009년 6.3%에서 2015년 8.2%로, 젖소는 3.0%에서 6.2%로, 오리는 2.2%에서 3.3%로 증가하였지만, 산란계는 같은 기간 12.1%에서 9.4%로 감소하였음.

○ 축종별 전체 사육농가 수에서 친환경축산물 인증 농가 비중을 보면(2015년 기준), 오리가 70.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산란계가 66.5%, 육계가 43.2%, 돼지가 16.2%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한육우의 경우 친환경축산물 인증 농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 이상으로 높지만 사육농가수 대비 비중은 5.2%에 불과함. 젖소 인증 농가의 비중도 4.9%로 낮은 수준임.

표 2-4. 전체 사육농가에서 친환경축산물 인증 농가 비중

단위: 농가,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한육우	인증농가	3,267	4,501	4,764	6,941	7,914	5,480	4,924
	비중(%)	1.9	2.6	2.9	4.7	6.4	5.3	5.2
산란계	인증농가	543	692	751	816	830	761	764
	비중(%)	32.2	45.1	52.1	63.0	68.0	65.0	66.5
돼지	인증농가	121	245	258	477	757	769	795
	비중(%)	1.5	3.3	4.1	7.9	13.4	14.9	16.2
육계	인증농가	282	369	421	593	724	647	673
	비중(%)	18.1	20.9	25.6	37.7	46.3	42.6	43.2
오리	인증농가	135	213	286	425	503	461	507
	비중(%)	-	-	29.2	49.9	58.1	76.2	70.2
젖소	인증농가	97	239	218	267	329	260	270
	비중(%)	1.4	3.8	3.6	4.4	5.6	4.6	4.9
기타 인증 농가		32	86	89	182	170	114	225
전체 인증농가		4,477	6,345	6,787	9,701	11,227	8,492	8,158

주: 비중=축종별 인증농가/축종별 사육농가(육계 인증농가에는 토종닭 포함).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내부자료, 통계청-가축동향조사.

○ 지역별로는 경기도의 친환경축산물 인증 농가수가 전체의 21.6%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전남이 19.8%, 경북이 13.4%, 전북이 10.6%, 경남이 10.3%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그림 2-5. 지역별 친환경축산물 인증 농가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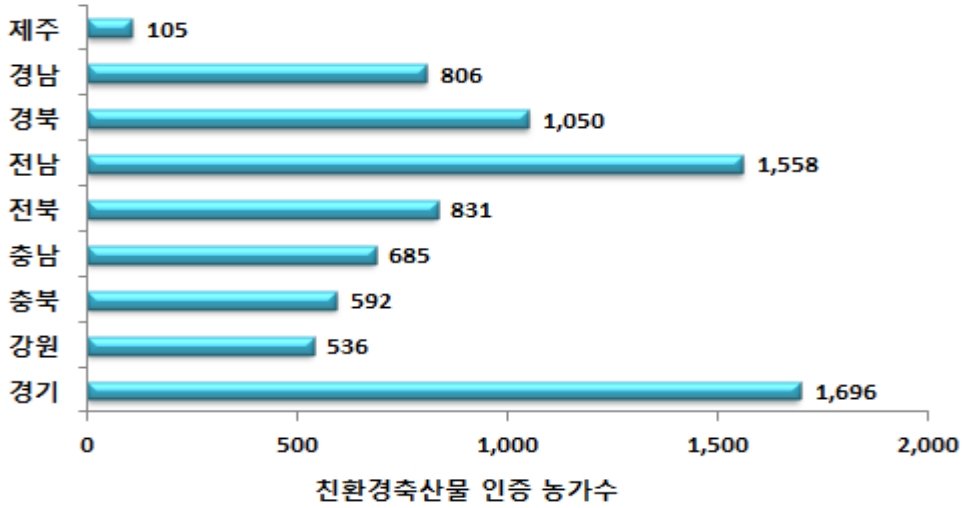

주: 2015년 11월 30일자 기준임(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는 인근 도에 포함).
자료: 월간 친환경축산 종합정보 12월호(원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인증농가의 가구당 사육 마릿수는 전국의 가구당 사육 마릿수보다 높은 수준임. 한육우 인증농가의 가구당 사육 마릿수는 2015년 기준 전국 평균보다 4배 많으며, 나머지 축종도 1.2~1.5배 많음.

표 2-5. 인증농가의 가구당 사육마릿수

단위: 마리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한육우	인증농가	78	84	95	86	93	113	114
	전체농가	15	17	18	21	23	27	28
산란계	인증농가	58,041	57,571	62,168	65,250	67,200	108,162	77,486
	전체농가	37,325	40,190	43,320	47,370	53,091	57,841	62,556
돼지	인증농가	2,264	2,269	2,389	2,450	3,040	3,096	3,150
	전체농가	1,204	1,345	1,287	1,642	1,759	1,949	2,075
육계	인증농가	84,468	90,962	73,046	72,618	74,148	73,947	75,899
	전체농가	43,018	44,169	46,465	48,459	48,874	51,250	52,536
오리	인증농가	32,585	32,761	26,492	22,698	24,663	21,290	20,756
	전체농가	-	-	12,982	13,100	12,585	12,462	13,534
젖소	인증농가	93	88	98	92	95	109	111
	전체농가	66	68	67	70	73	76	75

주: 전체농가의 가구당 사육 마릿수는 연말 사육농가 수와 사육 마릿수를 기준으로 계산함. 2015년도 인증농가의 가구당 사육 마릿수는 11월 기준임.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내부자료, 통계청-가축동향조사.

1.5.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현황

○ 현재 설립된 인증기관은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전문인증기관(민간인증기관) 68개임. 이 중 축산 전문 인증기관은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2011년 설립)' 1개이며 그 외 인증기관은 인증범위에 농산물과 축산물 모두가 포함됨.

- 2002년 4개소를 시작으로 2009년 57개, 2013년 78개까지 늘었으나 현재는 68개로 축소됨.

1.5.1. 인증기관 지정 기준 개정

○ 2013년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산물 민간인증기관과 인증심사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개편방안」을 발표함.

○ 주요 내용은 규정 위반 인증기관에 대해 인증기관 지정취소 및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 인증업무 민간이양 연기, 인증기관 지정 기준 개정, 인증심사원 자격기준 마련, 인증수수료 등 지원방식 개선임.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인증기관 지정취소, 형사처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승인하거나 인증업무와 관련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기관 지정 취소, 고의적으로 인증기준에 미달하는 농가를 인증한 경우 또는 인증관련 금품수수가 있는 경우 형사처벌
- (인증업무 민간이양 연기) 당초 2014년으로 계획되었던 인증업무 민간이양을 연기하며 인증기관의 역량 및 책임확보 후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민간이양 추진여부·시기 재검토
- (인증기관 지정기준) 공공성 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가 인증업무를 수행하도록 민간인증기관 지정기준 개정(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 → 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 민간인증기관에 대한 특별조사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강화
  • 인증기준, 절차 등을 위반한 민간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 (인증심사원 자격기준 마련) 자격요건을 법률에 규정하여 전문성 확보
  • 농식품 관련 자격증 등을 갖추고 교육 이수시 증서 발급
  • 기존 인증심사원도 보수교육시 시험을 거쳐 자격 재부여
  • 고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시 심사원 자격 취소
- (인증수수료 등 지원방식 개선) 지자체의 친환경 인증수수료, 농자재비 등 지원방식을 개선토록 하여 인증신청 농가의 책임의식 강화

○ 인증심사원의 자격 기준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농업·임업·축산, 식품 분야의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농업·임업·축산, 식품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인증심사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표와 같음.

○ 자격 기준을 갖추고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부여 받으려면 3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교육 내용은 '인증심사원의 역할과 자세, 친환경농산물 및 인증 관련 법령, 심사기준, 심사실무 및 평가방법'등임.

표 2-6. 인증심사원의 자격 기준

자격	경력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농업·임업·축산, 식품 분야의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농업·임업·축산, 식품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친환경인증 심사 또는 친환경 농산물 관련 분야에서 2년(산업기사가 되기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3. 법 제20조 제3항에 따른 인증심사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2016년 3월 24일까지 경력 5년 이상이 되는 사람에 한정한다)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증기관에서 근무하는 인증심사원의 경우 위 표의 자격기준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자료: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9의 2].

○ 이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기관지정운영 요령」이 2015년 11월을 기준으로 개정됨.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음.

- 인증기관의 6개월간 운영자금 상시 보유기준을 3개월 현실화
- 인증심사원 1인당 관리 사업자 기준을 400명으로 축소
- 심의관 자격 범위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로 기준 개선
- 인증 심의관 1인의 1일 심의량을 15건 등으로 제한

1.5.2. 인증기관 지정 요령[14]

○ 인증기관 지정 기준의 개정으로 2015년 11월 30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발표한 인증기관 지정 요령은 다음과 같음.

○ (조직) 인증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표준회의(IEC)가 정한 제품인증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을 위한 요구사항(ISO/IEC 17065)의 기준에 적합해야 함.

- 최소 3개월 이상 인증기관 운영에 필요한 자금(인증심사원 등의 임금, 사무실 운영경비, 사후관리 등)을 법인통장에 보유하고 이를 항상 유지하거나, 인증심사 부실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관련 보험에 가입, 인증기관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였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보유 및 제시해야 함.

○ (인력) 인증기관은 상근 인증심사원 5명 이상(인증심사원 1명 이상 추가 확보)을 갖추어야 하며, 심사원 1명당 심사 및 관리 농가수는 연간 400사업자 이하를 심사하여야 함. 단, 비상근 인증심사원은 상근 인증심사원 관리 농가수 기준의 1/2을 적용함.

○ (검정실) 인증기관이 인증품의 계측 및 분석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 검정실을 설치해야하고 농촌진흥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등 시험 연구기관의 공인시험연구기관 지정을 받아야 함.

○ (인증 기준 및 업무 범위)인증대상 지역범위 및 인증업무의 범위를 정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국내 인증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증업

1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2015.11.30.)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등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 일부개정고시.

무 수행 지역을 규정하여야 하며 인증 업무의 범위는 유기농림산물, 유기축산물, 유기가공식품, 비식용유기가공품,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축산물 중 인증업무를 정해야 함.

○ (인증심의관 운영)공정한 인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인증심의관을 운영함. 인증심의관은 농업·임업·축산, 식품 분야의 기사 이상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고,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이거나 상근 심사원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 지정함.(2016년 10월 8일부터 시행 예정)
  - 인증심의관은 1인 1일 13건 또는 150사업자를 초과하여 심의하지 않아야 함. 단 1건이 150사업자를 초과하는 경우는 가능함.

○ (사후관리) 인증심사원은 인증 받은 농장 또는 작업장을 방문하여 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사후관리 조사를 하여야 함. 사후관리의 조사방법, 조사주기는 원장이 정한대로 하면 되나, 인증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 (인증심사원 준수사항) 인증심사원은 인증기준으로 설정된 모든 항목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누락 없이 사실대로 기재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인증기관은 소속 인증심사원에 대해 연 1회 4시간 이상 자체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함.

2. HACCP 인증

○ 축산 부문의 HACCP(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은 가축의 사육·도축·가공·포장·유통의 전 과정에서 축산식품의 안전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해요소를 분석하고, 이러한 위해요소를 방지·제거하거나 안

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에 중요관리점을 설정하여 과학적·체계적으로 중점관리 하는 사전위해관리 기법임(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 축산 부문에 HACCP은 1998년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고시를 통해 도입되었으며, 2003년 7월 도축장 HACCP 의무 적용 이후 2004년 운반, 보관, 집유, 판매 단계, 2006년 사육단계에 적용하는 등 대상이 가축 사육부터 유통 판매에 이르는 유통 전반으로 확대되었음(한성일 외 2013).

○ 가축사육업(농장)의 HACCP은 사육단계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2006년 돼지 부문에 처음 도입된 이후, 현재에는 소(젖소, 비육우), 닭(육계, 산란계), 메추리, 오리, 산양으로 확대됨.

표 2-7. 축산 부문 HACCP 적용 대상

적용 업종		적용 품목(2015년 3월 31일 기준)
가축사육업(농장)		• 돼지, 소(젖소·비육우), 닭(산란계, 육계), 메추리, 오리, 산양
도축업		• 소, 돼지, 닭, 오리
축산물 가공업	유가공업	• 우유류, 저지방우유류, 가공유류, 발효유류, 버터류, 자연치즈, 가공치즈, 유크림류, 농축유류, 아이스크림, 분유류, 조제유류
	식육가공업	• 햄류, 소시지류, 양념육류, 분쇄가공육제품, 건조 저장육류, 갈비가공품, 베이컨류
	알가공업	• 전란액, 난황액, 난백액, 알가열성형제품, 염지란
식육포장처리업		• 포장육
축산물판매업		• 식육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사료제조업		• 배합사료, TMR 사료공장
집유업		• 원유

주: 이 외에 부화업, 축산업 보관업, 축산물 운반업이 있음.
자료: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www.ihaccp.or.kr).

○ 작업장(업소·농장)에서 HACCP 적용을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따름.

표 2-8. HACCP 적용 절차

1. HACCP 추진 팀 구성 및 역할 분담 - 품질관리, 생산, 공무, 연구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직원으로 구성 - 팀장 및 팀원별로 각각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역할 분담
2. 현장 점검 및 현장 개·보수 - 축산 식품을 위생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기본적인 위생시설·설비 및 위생관리 현황 점검 - 기본적인 GMP, SSOP 구축·운영에 필요한 문제점 개선·보완
3. 선행요건프로그램 기준서 작성(단, 기 적용·준수 업체는 제외) - 영업장, 위생, 제조시설·설비, 냉장·냉동설비, 용수, 보관·운반, 검사, 회수프로그램 관리를 포함하는 선행요건프로그램 기준서 작성, 현장 적용 후 실행상의 문제점, 개선점을 파악, 기준서 개정
4. 제품설명서(축산물설명서, 원유설명서, 가축설명서, 알설명서), 공정흐름도면(생산공정도, 사육시설, 분뇨처리장) 등 작성 - 제품 성분, 규격, 유통기한, 사용용도 등을 포함하는 제품설명서 작성 - 제조공정도, 작업장(농장) 평면도, 공조시설 계통도, 용수 및 배수처리 계통도 등 작성 - 상기 자료는 위해분석의 기초 자료로 활용
5. 위해요소 분석 및 HACCP 관리계획 수립 - 원료별 제조공정별 발생 가능한 위해요소들에 대한 위해평가 실시 - 중요관리점, 한계기준, 모니터링 방법, 기준이탈시 개선조치 방법 등을 포함하는 HACCP 관리계획 수립
6. HACCP 관리기준서 작성 - HACCP팀 구성, 제품설명서, 공정흐름도, 위해요소분석, 중요관리점 결정, 한계기준설정, 모니터링 방법의 설정, 개선조치, 검증, 교육훈련, 기록유지 및 문서화 등을 포함하는 HACCP 관리 기준서 작성
7. HACCP 교육·훈련 및 유효성 평가 - 현장 종업원, 관리자, HACCP 팀원 등을 대상으로 수립된 HACCP 계획에 대한 교육·훈련 후 현장에 적용 - 실제 수립된 계획이 현장에 적용하였을 경우 효과적으로 적용·운영되는지 반드시 확인(유효성 평가 실시)
8. HACCP 본격적인 운용 - 유효성 평가 결과를 HACCP관리계획에 반영하고 문제점을 개선하여 HACCP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운영 - 1개월간의 운영실적을 첨부하여 축산물 HACCP기준원 HACCP 적용업소 지정 신청

자료: 축산물관리인증원(www.ihaccp.or.kr).

○ 축산물의 생산에서부터 판매까지 전 유통 과정의 통합된 안전관리의 중요성

이 부각되면서 2014년에는 안전관리통합인증제가 새롭게 도입됨. 안전관리통합인증제는 가축의 사육, 축산물의 처리, 가공, 유통 및 판매 등에 참여하는 작업장 및 업소 또는 농장에 대해 HACCP을 준수하고 있음을 인증하는 제도로써, 농장에서 판매까지 HACCP 체계를 구축한 경영체에 인증함(김현중 외 2015;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재인용).

○ 가축사육업의 HACCP 인증 농가 수는 2009년 656농가에서 2015년 6,299농가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음.

- 한우 농가의 인증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돼지, 산란계, 육계, 젖소 순임. 축종별 사육농가 수 대비 인증 농가 비중을 보면(2015년 기준), 산란계가 61.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육계가 42.0%, 돼지가 28.1%, 오리가 22.6% 순임. 한우의 경우 인증 농가 수 비중은 2.9%로 미미한 수준임.

표 2-9. 가축사육업 HACCP 인증 현황

단위: 농가,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돼지	인증농가	299	525	657	917	1,175	1,347	1,396
	비중(%)	3.8	7.1	10.4	15.2	20.8	26.0	28.1
한우	인증농가	155	815	1,216	1,867	2,445	2,726	2,820
	비중(%)	0.1	0.5	0.7	1.3	2.0	2.6	2.9
젖소	인증농가	88	310	323	314	375	437	451
	비중(%)	1.3	4.9	5.3	5.2	6.4	7.7	8.0
산란계	인증농가	74	250	334	492	596	655	718
	비중(%)	4.4	16.3	23.2	38.0	48.8	56.0	61.5
육계	인증농가	39	185	261	390	551	619	701
	비중(%)	2.5	10.5	15.9	24.8	35.2	40.8	42.0
오리	인증농가	1	17	53	85	146	161	174
	비중(%)	-	-	5.4	10.0	16.9	26.6	22.6
기타 인증 농가		-	-	2	14	22	32	39
전체 인증농가		656	2,102	2,846	4,079	5,310	5,977	6,299

주: 비중=인증농가/사육농가(연말 사육농가 수 기준이며, 2015년은 9월 1일자). 2015년도 인증농가는 8월 19일 기준이며 기타에는 메추리, 산양, 부화업이 포함됨.

자료: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인증 현황, 통계청-가축동향조사.

3.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도

3.1.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도의 개요

○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도는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인도적으로 동물을 사육하는 소·돼지·닭·오리농장 등에 대해 국가에서 인증하고 인증농장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에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마크를 표시하는 제도임(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 동물복지 축산농장의 인증은 2012년 산란계(계란) 농장에서 최초로 도입된 이후, 2013년 돼지, 2014년 육계에 도입되었고, 2015년에는 한육우, 젖소, 염소로 인증 대상이 확대됨(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 2014년 육계가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대상 축종으로 포함되어 동물복지 육계농장 인증기준 및 평가기준을 신설함.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음.[15]

- (인증사육규모) 최소 인증 사육 마릿수가 육계 10,000수(토종닭 6,000, 삼계 17,000) 이상 농가
- (급이) 지름 33cm 이상 원형 또는 타원형 급이기를 육계·토종닭 65수, 삼계 110수당 1대 이상 설치
- (방역 및 위생) 계사 전실설치, 올인-올아웃 적용
- (사육밀도) 육계·토종닭 ㎡ 당 19수 및 30kg, 삼계 ㎡ 당 35수 및 30kg
- (홰) 육계 1,000수(토종닭 800수, 삼계 1,700수)당 횃대 2m 제공
- (깔짚) 방역·소독관리 기준 제시 할 경우 재사용 인정
- (조명도) 계사내부 최소 20lux 이상
- (공기오염도) 암모니아 25ppm, CO2 5,000ppm 이하
- (방목장기준) 방목장면적 3마리당 3.3㎡ 이상

15 농림축산검역본부 공고 제2014-305호 참조.

3.2.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기준

○ 산란계, 돼지와 더불어 육계에 대해서도 2014년 인증 기준이 마련되어 운영되고 있음. 육계가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대상 축종으로 포함되면서 기존의 산란계 및 양돈농장의 인증 기준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짐(농림축산검역본부 공고 제2014-305호).

표 2-10.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산란계, 육계농장)

	산란계농장	육계농장
사육 규모	• 최소 4,000수 이상 (자유방목 추가인증 신청 사육규모는 최소 2,000수 이상)	• 최소 육계 10,000마리, 토종닭 6,000마리, 삼계 17,000마리 이상
관리자 의무	• 동물의 입식·출하현황, 폐사체 관리현황 청소 및 소독내용, 질병예방프로그램, 약품·백신구입 및 사용 등의 기록내용을 2년 이상 기록·보관	
건강 관리	• 수의사의 자문 통한 닭의 질병 및 부상 예방 • 발에 나타나는 상처나 증상, 복막염, 카니발리즘, 심각한 깃털 손실 등의 피해 주의	
급이	• 각 개체는 품종, 연령 등에 따라 영양 균형이 맞는 사료를 매일 1회 이상 부당한 경쟁 없이 충분히 섭취(수의사 처방 시 제외)	
	• 선형 급이기는 닭 1마리당 최소 10cm 이상, 원형 급이기는 최소 4cm 이상의 급이 공간이 할당되도록 설치	• 급이기는 육계·토종닭은 65수당, 삼계는 110수당 지름이 33cm 내외의 원형 또는 타원형태의 급이기를 1대 이상 제공
급수	• 수의사의 별도 지시를 제외하고 신선하고 깨끗한 물 제공(일반세균은 1mL 중 1,000CFU를 초과해선 안 됨.) • 물은 최소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 검사(상수도 급수 시 면제)	
준수 사항	• 농장 내에서 부리다듬기 원칙적 금지 (카니발리즘 등에 예상되는 경우에만 허용) • 산란 연장 등을 위한 강제 환우 금지 • 일반농장에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받으려는 경우 입식 후 2개월 이상 동물복지 인증기준에 따라 사육	• 일반농장에서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의 전환 또는 동물복지 축산물 생산·판매하려는 경우 입식 후 4주 이상 동물복지 인증기준에 따라 사육
사육 시설	• 계사형태의 경우 폐쇄형 케이지 등에서 지속적인 사육 금지	
	• 산란계 7마리당 1개 이상의 개별 산란상 또는 산란계 120마리당 1㎡이상의 산란 장소 제공	• 사육 시설 재료와 구조는 닭에게 스트레스를 주거나 해를 끼치지 않는 것
사육 밀도	• 모든 닭이 편안하게 일어서고, 돌아서고, 날개를 뻗을 수 있는 공간 제공	
	• 최소 사육밀도는 성계는 1㎡당 9수 이하이어야 함	• 최소 사육밀도는 육계·토종닭 경우 1㎡당 19수 이하 및 30kg이하 이어야 함

	산란계농장	육계농장
사육 환경	• 매일 최소 8시간 이상 연속된 명기와 6시간 이상 연속된 암기 준수	
	• 조명시설의 조명도는 내부 조명은 균일하고 10lux이상 되어야 함	• 조명시설의 조명도는 최소 20lux 이상이 되어야 함
기타	• 사육장에 별도의 방목장을 확보하여 방목하고자 하는 경우, 1마리당 1.1㎡이상 방목장 공간 제공	
	• 계사와 방목장 간 출입구는 높이 35cm이상 너비 40cm이상으로 하는 출입구의 적정 설치	• 계사와 방목장 간 출입구는 높이 45cm이상 너비 50cm이상으로 하는 출입구의 적정 설치

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http://www.animal.go.kr) 고시 제2014-25호.

표 2-11.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양돈농장)

	양돈농장
사육 규모	• 최소 300마리 이상 또는 모돈 30마리 이상 (식육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자 운영 농장은 최소 돼지 100마리 이상)
관리자 의무	• 동물의 입식·출하현황, 폐사체 관리현황 청소 및 소독내용, 질병예방프로그램, 약품·백신구입 및 사용 등의 기록내용을 2년 이상 기록·보관
건강 관리	• 질병이나 상처가 있는 돼지는 격리시설에 격리하여 치료
급이	• 각 개체는 품종, 연령 등에 따라 영양 균형이 맞는 사료를 매일 1회 이상 부당한 경쟁 없이 충분히 섭취(수의사 처방 시 제외) • 제한 급여를 할 경우, 모든 돼지가 동시에 먹을 수 있는 급이 공간 확보(어깨너비 1.1배 이상)
급수	• 돼지 10마리당 1개의 급수공간(1마리가 물을 먹을 때 필요한 공간) 제공 • 급수기가 같이 있는 급이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별도로 급수기 설치 필요
준수 사항	• 좁은 공간에 개별적으로 가두어 기르지 않고 무리지어 사육 • 다만 임신돈의 안정과 유산 방지를 위하여 교미 또는 인공수정 후부터 4주까지 스톨 사육 가능
사육 시설	• 돈사: 가능한 충분한 자연환기와 햇빛이 제공되도록 설치. 포식동물 및 쥐 등 설치류가 침입할 수 없도록 축사의 설계 및 관리 • 분만실: 자돈이 압사되지 않는 구조 또는 보호시설 설치
사육 밀도	• 후보돈, 임신돈, 웅돈의 최소 소요면적은 각각 2.3, 3.0, 6.8m^2. 최소 휴식공간 면적은 후보돈과 임신돈의 경우 각각 0.92, 1.3m^2이며 웅돈은 해당되지 않음
사육 환경	• 매일 최소 8시간 이상 연속된 명기와 6시간 이상 연속된 암기 준수 • 조명시설의 조명도는 최소 40lux 이상 되어야 함
기타	• 돼지 사육에 이용하는 기계 및 자동화 설비는 1일 1회 이상 점검하여 결함이 없도록 관리해야 함

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http://www.animal.go.kr) 고시 제2014-25호.

3.3.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절차

○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인증신청서, 축산업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 농장 운영현황서 등 인증 신청 서류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제출함.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서류심사, 현장심사를 거쳐 인증기준에 적합할 경우 인증서를 교부하고 사후관리를 실시함.

그림 2-6.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절차

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 인증을 받은 농장의 축산물(식육, 포장육, 우유류, 식용란)의 포장 또는 용기 등에 인증 마크와 함께 생산자, 인증번호, 품목, 농장소재지, 무게 또는 개수 등을 표시할 수 있음. 동물복지 자유방목으로 추가 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동물복지 자유방목” 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제품명 등과 함께 표시할 수 있음(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4-25호 별표 4).

표 2-12. 동물복지 축산농장 표시사항

동물복지 (ANIMAL WELFARE) 농림축산식품부	생산자	홍 길 동
	인증번호	동물복지-10-01-1-*
	품목(축종, 추가인증사항)	계란(산란계, 동물복지 자유방목)
	농장소재지	경기도 수원시
	무게 또는 개수	10개

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4-25호: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별표 4.

○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농가는 형식에 맞춰 표시간판을 설치할 수 있으며, 실외 방목장 기준을 준수하는 농장은 동물복지 자유방목 농장이라는 표시를 추가할 수 있음.

○ 동물복지 인증 농장의 사후관리를 위해 검역본부장은 농장 현장 조사와 표시사항 조사를 실시함.[16]

- 인증 건별로 농장 소재지를 방문하여 연 1회 이상 농장 현장 조사를 실시하며, 조사 내용은 경영관련 자료 기록 여부, 농장의 출하내역, 표시사항의 적합 여부, 금지물질의 구입, 보관 및 사용여부, 인증기준 준수 여부, 축산농장 운영현황서의 사실 여부, 동물이 건강상태 등임. 필요한 경우 유해 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함.
- 동물복지 축산농장 표시 축산물의 판매장, 취급 작업장을 방문하여 시군별로 연 1회 이상 표시사항 조사를 실시함. 조사 사항은 표시사항의 적합 여부, 동물복지 인증 축산농장에서 실제로 출하되었는지 여부, 일반 축산물의 혼입 여부 등이며, 필요한 경우 유해 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함.

3.4.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현황

○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은 2012년 산란계 농장에서 최초로 시행된 이후 인증 대상 축종이 확대되면서 돼지 농장과 육계 농장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음. 2015년 기준 동물복지 인증 농장은 77개이며, 이 중 산란계 농장이 69개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돼지 농장이 6개, 육계 농장이 2개임.

○ 지역별로는 충북의 인증 농가가 23농가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전남이 13농가, 경기가 12농가, 전북이 10농가, 강원이 6농가 순으로 많음.

16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별표 5 참조.

표 2-13.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누계 현황

단위: 농가

연도	계	산란계(자유방목)	돼지	육계
2012	34	34 (9)	-	-
2013	45	45 (10)	-	-
2014	60	58 (11)	2	-
2015	77	69 (12)	6	2
비중(%)	100.0	89.6 (15.6)	7.8	2.6

주: 산란계 인증 농가 중 1개 농장은 2번 인증을 받은 경우가 있음.
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그림 2-7. 지역별 동물복지 인증 현황(2015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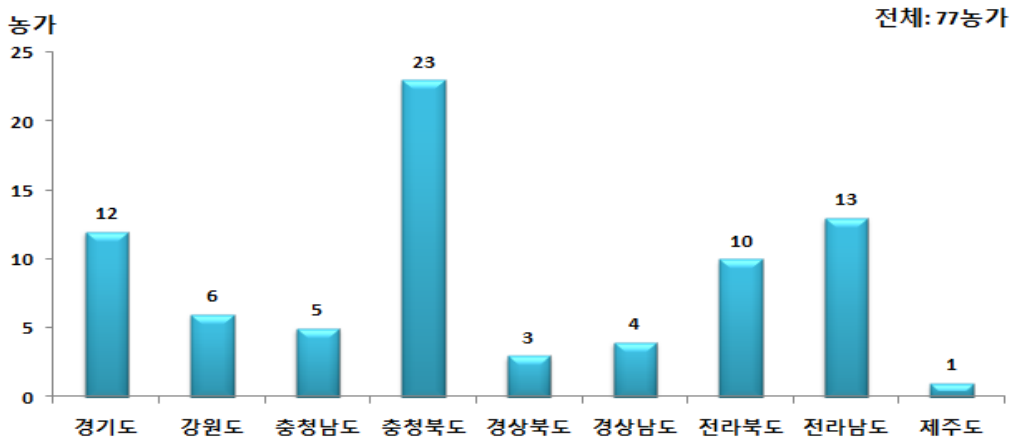

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3.5.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저조 원인 분석

3.5.1. 동물복지 축산농장 도입할 경제적 유인 부족

○ 축산농가가 동물복지를 고려한 가축사육으로 전환할 경우 일반 관행 사육보다 비용이 추가되지만, 시장에서 상승한 비용을 회수할 만큼의 가격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산란계는 동물복지 인증을 적용할 경우 사육규모를 대폭 축소해야 함. 전남 나주의 산란계 동물복지 인증농가 조사에 의하면, 동물복지 도입 이전 3만수 규모로 산란계 농장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이후 1만 7,000수로 크게 감소함.

○ 최근 연구[17]에서는,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이 도입된 산란계, 돼지, 육계 농장의 생산비와 소비자 지불의향을 비교 분석한 후, 동물복지 축산의 비용 보상 직접지불금을 검토하였음. 연구 결과에 의하면, 동물복지 축산을 도입할 경우 비용이 추가되고 조수입이 감소하기 때문에 동물복지 축산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동물복지 축산 실천 농가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것을 제안함.

- 동 연구의 닭고기, 돼지고기, 계란에 대한 소비자의 평균 지불의사 금액은 일반 축산물에 비해 닭고기는 19.53%, 돼지고기는 19.57%, 계란은 28.97%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소비자 지불의사 금액은 동물복지 도입에 따른 추가 비용보다 낮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함.

3.5.2. 동물복지 인증 기준 충족의 어려움

○ 그동안 우리나라 축산업이 규모화 또는 전업화 되면서 정착된 사육 방식이 있기 때문에 동물복지 인증 기준을 맞추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전환하기 쉽지 않은 인증 기준은 다음과 같음.

- 산란계: 부리다듬기 금지, 폐쇄형 케이지 등에서의 지속적인 사육 금지, 사육밀도 기준 준수에 따른 사육 마릿수 축소 등
- 돼지: 돼지의 보정 또는 감금 원칙적 금지, 생후 28일 이전 이유 금지, 신생자돈의 송곳니 발치 또는 절치 금지, 단미(꼬리 절단) 금지(수의사 처방시 가능), 휴식 공간 제공 등
- 육계: 폐쇄형 케이지 등에서의 지속적인 사육 금지, 사육밀도 기준 준수

17 박종수 등(2014. 12)『동물복지 축산 직불제 도입방안』농림축산식품부.

에 따른 사육 마릿수 축소 등

○ 동물복지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 가축을 사육해야 하기 때문에 동물복지 인증을 받기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소규모 농가는 인증 대상에서 제외됨. 인증을 받기 위한 축종별 최소 인증 규모[18]는 다음과 같음.

- 육계: 10,000마리 이상(삼계: 17,000마리 이상)
- 토종닭: 6,000마리 이상
- 돼지: 300마리 또는 모돈 30마리 이상
- 산란계: 4,000수 이상(자유 방목 추가인증 신청인 경우 2,000마리 이상)

4. 산지생태축산 시범농장 지정

4.1. 산지생태축산의 개념[19]

○ 산지생태축산이란 자연 그대로의 산지를 최대로 활용, 동물복지를 고려한 가축사육과 환경친화적 축산물 생산을 추구하는 축산으로 친환경, 동물복지를 토대로 관광, 체험 등을 접목함으로써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6차 산업형 축산을 추구하는 새로운 모델임.

○ 산지생태축산이 태어나게 된 배경은 현 축산업의 위기극복과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업 구현을 위한 질적 성장체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된 것에서 비롯됨.

- 그동안 국내 축산업은 규모화, 전업화 등 생산성 위주의 양적 성장 추구

18 규제심사 결과 소규모 농가 제외 기준 삭제됨.

19 농림축산식품부·(사)한국초지조사료학회(2014. 12).『산지생태축산 운영 매뉴얼』을 참고하여 작성함.

로 환경 및 질병문제가 유발되어 왔음. 특히,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 악취발생, 구제역 등 가축질병 피해 등으로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급속히 증가함.

- 안전한 식품, 동물복지 등 웰빙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증가하고 가축분뇨 등 축산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음.

표 2-14. 산지생태축산과 일반 관행축산의 비교

	산지생태축산	축사중심 축산
개념	•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업 구현 • 자연 산지를 최대 활용, 환경친화적 축산물 생산을 추구	• 가축생산 위주와 소득 중심의 축산 • 밀식사육, 대부분 수입사료와 볏짚에 의존
공간/지형	• 넓은 면적/산지경사지	• 좁은 면적/평지
경영형태	• 복합경영	• 단순경영
농법	• 토지-풀-가축의 지역 내 물질순환의 생물학적 농법	• 사료-가축의 기계적 농법
에너지의존도	• 화석에너지 탈피형(저감형)	• 에너지 의존형
사료자원	• 초지(다년생 목초, 야초)	• 농후사료/조사료
토지이용방식	• 임업과 축산업의 공존	• 축산업 단일
초지조성법	• 불경운초지(임간초지) • 경운초지: 산지내의 평지에 제한	• 초지없이 가능 • 경운초지/사료작물포
가축이용방법	• 방목	• feedlot/운동장
방목강도	• 적정 방목강도 유지	• 과방목이 대부분
가축의 활동영역	• 조방형/활동형	• 집약형/밀식형
분뇨처리	• 토양 환원	• 분뇨처리시설 이용
생산물	• 친환경 및 기능성 축산물	• 일반 축산물
6차 산업화 여부	• 초지기반 축산물 가공, 판매 및 각종 체험/관광 등이 가능	• 매우 어려움
지역 활성화 기여도	• 6차산업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간접으로 기여	• 민원발생 소지로 인한 지역 활성화 저하위험
생산자와 소비자 교류	• 직접교류에 의한 활성화/극대화	• 유통시스템 이용
소득	• 1차 생산 소득 외 6차 산업화를 통한 농외소득 증가	• 축산물 생산 위주의 소득

자료: 농림축산식품부·(사)한국초지조사료학회(2014).『산지생태축산 운영 매뉴얼』2쪽.

○ 산지를 활용한 목장은 방목형, 초지형, 체험 및 관광형 등 다양하게 운영 중이며, 일부는 임간초지를 병행 운영하고 있음. 산지활용 축산농가는 2013년 102개소이며, 이러한 농가의 대부분은 친환경, 동물복지 축산보다는 대부분 조사료 비용 절감을 추구하고 있음.

4.2. 산지생태축산농장 시범조성사업[20]

○ 시범조성사업은 새로운 단백질 공급 및 사육방식 개선 등을 위해 부존자원인 산지를 활용한 조사료 생산, 생산비 절감, 친환경축산물 생산, 동물복지 등과 연계하여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 구축을 위해 2014년부터 시행 중임.

표 2-15. 산지생태축산농장 시범조성사업 내용

사업 항목	자금 용도	지원한도액 기준 및 지원 형태
초지조성	• 초지조성(경운·불경운·임간초지) 및 초지관리에 소요되는 인건비, 자재대, 측량수수료 등	• 30ha 기준 - 신규조성: 602만 원/1ha 한도 - 보완조성: 172만 원/1ha 한도 • 보조 50%, 융자 50%(연리 2%, 3년 거치 7년 균분 상환)
컨설팅	• 초지 조성·관리·이용, 축종별 시설·분뇨처리, 생태보전 등 분야별 컨설팅	• 개소당 1,500만 원 한도 • 보조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기계·장비	• 가축 사육목장 및 초지 등에 필요한 모우어, 반전 집초기, 결속기, 랩피복기, 그래플, 트랙터 등 산지 초지에 필요한 기계·장비	• 30ha 기준: 1억 5,000만 원 한도 • 보조 10%, 지방비 30%, 융자 30% (연리 2%,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 축종별 특성 감안하여 초지면적에 따라 차등 지원
기반시설	• 용수개발, 전기시설, 진입도로 및 목장내 도로 개설, 초지 및 사료작물재배부지 정지, 초지용 울타리 설치 등	• 건당 1,300만 원 한도 • 융자 80%(연리 2%, 3년 거치 7년 균분 상환), 자부담 2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5년 산지생태축산농장 시범조성사업 지침 내용 요약 정리

20 농림축산식품부 2015년도 산지생태축산농장 시범조성사업 지침 참조.

○ 2015년 시범사업에서는 산지생태축산농장 20개소를 지정하고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을 통해 초지조성, 컨설팅, 기계 및 장비, 기반시설 등의 사업 내용으로 50억 원을 직접 지원할 계획임.

- 사업대상은 산지생태축산농가, 농업경영체, 생산자 단체, 시·군이며, 대상축종은 한·육우, 낙농, 말, 닭, 오리, 염소·산양·면양, 사슴, 토끼 등임.

○ 직접 지원 사업 이외에 기타 사업(사일리지제조비, 종자구입비, 시·도 가축방역사업, 축사시설 현대화, 축산물 HACCP 컨설팅지원 사업, 농촌융복합산업활성화지원사업 등)은 개별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반영함.

○ 사업 수혜자들은 축산업 허가제와 연계하여 분뇨처리, 질병 및 위생관리를 통해서 산지생태 축산농장을 운영하여야 하고, 친환경·동물복지 등을 통한 고품질 친환경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산지생태축산 시범농장 선정은 2014년 5월부터 시작되었으며, 2015년 7월 현재 18개 농장이 선정됨. 지역별로는 경상도 5농가, 충청도와 강원도 각각 4농가, 전라도 3농가, 경기도와 제주도가 각각 1농가임. 산지생태축산농장에서 사육하는 가축은 주로 한우, 젖소, 산양, 사슴 등 반추동물임.

4.3. 산지생태축산농장 활성화의 제약 요인

○ 산지생태축산은 산지의 생산력 이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초지 조성은 산지생태축산 추진의 중요한 요소임. 따라서 초지 조성상의 제약 요인은 산지생태축산 활성화의 제약 요인이 되고 있음.

○ 초지의 조성은 초지법에 의하여 조성이 가능하지만 타법에 의하여 초지 조

성이 제약되고 있음. 해당 법률은 산지관리법과 환경영향평가법이 있음.

○ 산지관리법은 산지의 전용에 대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부과하고 있음. 다만, 초지법에 의한 초지조성에는 조성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하고 있음. 전용의 대상지가 준보전산지인 경우 조성비의 100%, 보전산지인 경우 50%를 감면함.

- 2016년 기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보전산지 4,860원/㎡, 준보전산지 3,740원/㎡임.
- 보전산지 1ha(10,000㎡)를 전용하여 초지를 조성하는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24,300,000원(4,860원×50%×10,000㎡)에 이름.

○ 환경영향평가법은 산지를 개발하는 초지조성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함. 환경영향평가는 3개 분야의 23개 항목으로 구성됨. 평가분야 및 항목은 다음과 같음.

- 자연환경: 기상, 지형·지질, 동식물, 해양환경, 수리·수문
- 생활환경: 토지이용, 대기질, 수질, 토양,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전파장애, 일조장애, 위락·경관, 위생·공중보건
- 사회·경제환경: 인구, 주거, 산업, 공공시설, 교육, 교통, 문화재

제 3 장

친환경안전축산물 직불제 운영 실태

1. 친환경안전축산물 직불제 도입 경과

○ 친환경안전축산물 직불제는「유기·무항생제축산물 직불제 도입 방안 연구」(2008년)를 통해 2009년에 도입되었음. 2004~06년까지 친환경축산직불제 시범사업이 추진되었지만, 사업 기간 중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본 사업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2007년 직불제 도입이 무산됨.

○ 친환경축산 직불제 시범사업은 축산업이 환경오염원이 아닌 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지속적이고 건실한 발전을 위하여 추진되었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로 인해 본 사업이 중단됨(한성일 외 2013).

- 감사원은 가축분뇨 적정처리와 사육밀도 준수 등의 프로그램 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렵고, 대부분 시범사업 참여농가가 기존 사육방식의 변화 없이 참여 가능 등을 지적함.
- 국회는 시범사업의 성과가 미흡하여 종합적인 평가없이 사업 연장을 추진하는 방안에 반대 의사를 표시하였고 2007년 사업 추진 예산을 삭감함.
- 친환경축산물 인증제도와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시범사업에 참여한 농가가 생산한 축산물이 친환경축산물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있었음.

○ 김창길 외(2008)는 유기축산물 인증농가와 HACCP 또는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을 받은 무항생제축산물 인증농가를 대상으로, 주요 축종(한육우, 젖소, 돼지, 닭)에 대해 지원단가와 지급한도 등을 산정하여 유기축산물과 무항생제축산물 직불제 도입 방안을 제시함.

○ 다음 표는 김창길 외(2008) 유기·무항생제축산물 직불제와 친환경안전축산물 직불제 도입 초기(2010년)의 내용을 비교한 것임.

표 3-1. 유기·무항생제축산물 직불제와 친환경안전축산물 직불제 비교

구분	유기·무항생제축산물 직불제	친환경안전축산물 직불제(2010년)
대상농가	유기축산물 인증 농가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농가(환경친화축산농장 또는 HACCP 지정 농가)	HACCP 농장 지정 농가 중 친환경축산물 인증 농업인 축산업등록자
대상축종	한우, 젖소, 돼지, 산란계, 육계	한우, 육우, 젖소(우유), 돼지, 산란계(계란), 육계, 토종닭
지원단가	한우(마리): 유기 25~35만원 무항생제 3~5만원 ※비육과 번식 구분 없이 지급 젖소(마리): 유기 50~60만원 무항생제 7~10만원 돼지(마리): 유기 3~5만원 무항생제 1~2만원 산란계(마리): 유기 1,000~2,000원 무항생제 100~200원 육계(마리): 유기 200~300원 무항생제 50~100원	한우(마리): 유기 170,000원 무항생제 65,000원 ※육우는 한우의 50% 감액 우유(리터): 유기 50원 무항생제 10원 돼지(마리): 유기 16,000원 무항생제 6,000원 계란(개): 유기 10원 무항생제 1원 육계(마리): 유기 200원 무항생제 60원 ※토종닭은 육계의 30% 증액
지원한도	농가당 1,800~2,000만원/1년	2,000만원/1년 ※환경친화축산농장은 지급받은 금액의 20% 인센티브 추가 지급
지급기간	최소 3~5년 지급	최초 지급연도부터 3년간(불연속인 경우 3회)

자료: 김창길 등(2008) 75쪽,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시행 지침(2010년).

○ 친환경안전축산물 직불제가 도입된 이후 대상 축종이 확대되고 지급기간이 변경되는 등 사업 시행 지침이 변경되어 왔음. 2014년까지의 사업시행 지침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음(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각 연도).

- 2011년: 오리 및 오리알 포함, 사업예산 과부족 발생시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 설정(친환경 인증 일자 우선, HACCP 인증 일자 우선, 규모 큰 농가 우선 등), 지급 방법 변경(6월, 12월 지급)
- 2012년: 친환경농업직불제의 유기축산물 인증의 경우 5년 또는 5회로 연장
- 2013년: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 변경(유기축산농가 우선, 친환경 인증 일자 우선, HACCP 인증 일자 우선, 규모 큰 농가 우선 등)
- 2014년: 메추리알·산양·산양유 포함, 지급 방법 변경(12월 지급)
- 2015년: 유기축산물 지급 기한 및 한도 조정(기급기한 5년으로 연장, 유기축산물 지급한도 3,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 산지생태축산농장 시범사업에 선정된 농장에 지급받은 금액의 20% 인센티브 추가 지급

2. 친환경안전축산직접지불 사업[21]

2.1. 사업 개요

○ 친환경안전축산물 직불제는 친환경축산 실천 축산농가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축산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음.

- 환경보전 및 소득유지 등을 동시에 추구하고, 환경오염 발생 등을 최소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축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함.
- 근거 법령은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국내지원 정책의 시행)임.

21 2015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친환경안전축산직접지불 내용 참고.

○ 사업 대상자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HACCP 농장 지정을 받은 자 중에서 친환경농업육성법[22] 제19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친환경축산물(유기 및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임.

- HACCP 농장 인증과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아 관리기관 등의 이행점검 결과 지정 또는 인증 취소 등의 처분을 받지 않아야 함.

2.2. 주요 내용

2.2.1. 지급기간, 지급한도 및 축종별 지급단가

○ 직불금의 지급기한은 친환경축산물을 계속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유기축산물은 5년, 무항생제축산물은 3년간임. 불연속인 경우에는 유기축산물은 5회, 무항생제축산물은 3회까지 지급함. 친환경농업직불제의 유기농업에 대한 지급기한이 2012년 5년으로 늘어남에 따라 유기축산물도 2015년부터는 기존 3년 또는 3회에서 5년 또는 5회로 늘어났음.

- 동일농장에서 친환경인증의 종류를 달리한 경우와 인증농가가 2개의 농장을 인증 받은 경우 합산하여 3~5년간만 지급함.
- 직불금을 3~5년간 지급받은 후 농장을 변경한 경우와 가족이 3~5년간 지급받은 경우는 지급하지 않음.

○ 직불금 지급한도는 유기축산물의 경우 3,000만 원, 무항생제축산물의 경우 2,000만 원임. 유기축산물의 지급한도는 2015년부터 연간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됨.

- 사업 대상자가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 받았거나 산지생태축산농장으로 지정 받은 경우에는 지급받는 보조금액의 20%가 추가로 지급됨.

---

2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을 줄여서 표기함.

○ 현재(2015년 기준) 직불금 지급 가능 축종은 한우, 육우, 젖소(우유), 돼지, 산란계(계란), 육계, 토종닭, 오리, 오리알, 메추리알, 산양, 산양유이며 축종별로 지급 단가는 다음과 같음.

표 3-2. 친환경안전축산물 직불금의 지급단가

축종	친환경축산물		
	유기축산물(A)	무항생제축산물(B)	배(A/B)
한우	170,000원/마리	65,000원/마리	2.6
- 육우	※ 한우의 50% 감액 지급		
젖소(우유)	50원/리터	10원/리터	5.0
돼지	16,000원/마리	6,000원/마리	2.7
산란계(계란)	10원/개	1원/개	10.0
육계	200원/마리	60원/마리	3.3
- 토종닭	※ 육계의 30% 증액 지급		
오리	400원/마리	120원/마리	3.3
오리알	20원/개	2원/개	10.0
메추리알	-	4원/10개 또는 4원/100g	
산양	-	4,584원/마리	
산양유	-	34원/리터	

주: 산란계(계란)와 메추리알에 한해서 출하량 입증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서식에 따라 지급함.
산출서식={(인증 마리수×20개×단가×개월 수)-(입증량×단가)}×0.5
자료: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2015): 친환경안전축산직접지불.

○ 2015년도 직불금의 지급대상 기간은 2014년 11월 1일부터 2015년 10월 31일까지임. 해당 기간 동안 HACCP 인증과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은 자가 친환경축산물을 생산하여 판매한 거래내역서(정산서, 판매내역서 등)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통해 출하량을 입증하여야 함.

- 토종닭의 경우 토종닭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농촌진흥청, 대한양계협회 등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종축, 종란(계란, 오리알, 메추리알)은 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됨.

○ 직불금은 지급 대상 기간의 출하 실적을 근거로 12월에 지급하며, 산란계의 경우에는 지급조건을 충족한 기간을 월단위로 산출하여 지급(1개월 미만은 제외)함.

- 신청기간 이후 인증종류가 변경된 경우 출하된 인증종류에 따라 지급함.
-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후 직불금 지급 신청 전에 친환경 및 HACCP 인증이 취소되거나 포기한 경우 또는 인증을 연장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당해 종료될 경우 당해연도 직불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직불금을 지급하지 않음. 표시정지를 받은 기간 중에 출하한 실적에 대해서는 직불금을 지급할 수 없음.

2.2.2. 사업 추진 체계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연초(1~2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사업 지침을 시달 받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홍보함. 농관원은 3~4월 중에 사업신청을 받고 사업대상자를 선정함. 연중 사후관리를 통해 인증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11~12월에 지급신청서 실적 자료의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직불금을 지급함.

- 사업 선정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 HACCP 인증서 사본, 친환경축산물 인증서 사본 등임.
- 지원 자금 신청은 세금계산서 등 생산 판매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농관원 관할 지원 및 사무소로 신청함.

○ 직불금 신청 금액의 합이 전체 예산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함. 사업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 농가는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기자로 선정·관리함.

① 유기축산농가

② 친환경 인증과 HACCP인증을 모두 받은 일자가 빠른 날짜(두 가지 모두 충족 되어야 함)

③ ‘②’에 따라 자격을 갖춘 일자가 같은 경우 친환경인증 일자가 빠른 농가

④ ‘②~③’이 모두 같은 경우 사육규모가 큰 농가

그림 3-1. 친환경안전축산물 직불제 사업 추진 체계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www.naqs.go.kr)-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지급선정신청.

○ 친환경 인증기관은 상반기 1회 사업신청자의 인증기준 준수 여부 등 사후관리 점검을 실시 후 그 점검결과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하반기 1회 사업신청자의 인증기준 준수 여부 등 사후관리 점검을 실시함.

○ 사업대상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제재조치가 취해짐.

- HACCP 인증이 취소되거나,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금 신청자가 친환경

육성법에 의해 인증이 취소되거나 인증을 자진 포기한 경우에는 취소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음.

- 사위(詐僞)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판명된 농업인에게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그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이미 지급한 보조금은 회수 조치하고, 향후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 참여가 제한됨.

3. 직불금 예산 및 지급 현황

○ 직불제 도입 이후 친환경안전축산직접지불 사업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음. 사업 예산은 2009년 10억 원에서 2015년 173억 원으로 17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예산집행률은 사업 시행 초기를 제외하고는 90% 이상을 보임. 유기축산물 출하량이 미미하여 대부분의 직불금은 무항생제축산물 생산 농가에게 지급되고 있음.

표 3-3. 친환경안전축산물 직불금 예산 및 지급 실적

연도	예산 (천원)	유기축산물		무항생제축산물		합 계		
		농가수 (호)	집행액 (천원)	농가수 (호)	집행액 (천원)	농가수 (호)	집행액 (천원)	농가당 수취액 (천원)
2009	1,000,000	1	24,000	57	719,048	58	743,048	12,811
2010	3,000,000	8	133,962	218	2,581,653	226	2,715,615	12,016
2011	3,000,000	6	87,779	301	2,910,901	307	2,998,680	9,768
2012	7,000,000	23	420,245	737	6,578,135	760	6,998,380	9,208
2013	10,025,000	25	385,481	1,289	9,609,304	1,314	9,994,785	7,606
2014	16,283,000	24	372,466	2,008	15,833,200	2,032	16,205,666	7,975
2015	17,257,000	-	-	-	-	-	-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내부 자료.

○ 직불금 집행액은 2009년 7억 4,305만 원에서 직불금 예산 증가에 따라 계속 증가하여 2014년에는 2009년보다 무려 22배 증가한 162억 567만 원 이었음.
- 무항생제축산물에 대한 집행액은 2009~14년 동안 연평균 85.6%씩 증가하였고, 유기축산물의 경우 같은 기간 연평균 73.1%씩 증가하였음.

○ 친환경축산물 인증 농가가 늘어나고 직불금 예산이 증가하면서 직불금을 받은 친환경축산물 인증 농가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3년만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는 인증 농가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임.
- 친환경축산물 인증 농가 중 직불금 받은 농가 비율이 2009년 1.3%에서 2014년 23.9%로 증가하였음.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농가의 경우 직불금 수령 농가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유기축산물 인증 농가는 2014년에 감소함.
-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HACCP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준전업농 이상은 HACCP 컨설팅지원 사업을 통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준전업농 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자부담으로 인증을 받아야 함. 소규모 농가들은 직불금 수령을 위해 HACCP 인증을 받을 만한 유인이 크지 않음. 이러한 부분도 직불금 수령농가 비율이 낮은 이유 중 하나임.

표 3-4. 친환경축산물 인증 농가 대비 직불금 수령 농가 비중

연도	직불금 수혜 농가			친환경축산물 인증 농가			직불금 수령 농가 비중(%)		
	전체 (a)	유기 (b)	무항생제 (c)	전체 (A)	유기 (B)	무항생제 (C)	전체 (a/A)	유기 (b/B)	무항생제 (c/C)
2009	58	1	57	4,477	101	4,376	1.3	1.0	1.3
2010	226	8	218	6,345	107	6,238	3.6	7.5	3.5
2011	307	6	301	6,787	103	6,684	4.5	5.8	4.5
2012	760	23	737	9,701	108	9,593	7.8	21.3	7.7
2013	1,314	25	1,289	11,227	103	11,124	11.7	24.3	11.6
2014	2,032	24	2,008	8,492	106	8,386	23.9	22.6	23.9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내부자료.

○ 친환경안전축산물 직불제가 시행되고 시간이 경과하면서 농가당 최대 지급기한인 3년 또는 3회 직불금을 받은 농가들이 생겨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2013년까지 직불금 3회 지급이 완료된 무항생제축산물 인증농가는 93농가로 조사되었음. 이 중에서 2015년 11월 말까지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는 65농가, 인증이 종료된 농가는 28농가로 나타남. 직불금 수령한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농가의 직불금 지급 기한 이후 인증 종료 비율은 약 30%에 이름.

○ 축종별로 직불금 지급액을 보면, 육계의 지급액은 2009년 2,856만 원에서 2014년에는 41억 8,792만 원으로 연평균 171%씩 증가함. 한육우의 경우 같은 기간 연평균 147%, 젖소는 연평균 78.0%, 돼지는 연평균 67.9%, 산란계는 53.2%씩 각각 증가하여 왔음.

- 축종별 직불금 지급액은 2014년 기준 육계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돼지가 40억 7,544만 원, 한육우가 35억 8,277만 원, 산란계가 27억 6,107만 원, 젖소는 7억 6,222만 원, 오리가 7억 3,332만 원 등의 순으로 많음.

표 3-5. 축종별 직불금 지급액

단위: 천 원

연도	계	한육우	젖소 (우유)	돼지	산란계 (계란)	육계·토종닭	오리	메추리알
2009	743,048	39,260	42,650	305,136	327,438	28,564	-	-
2010	2,715,615	154,895	304,516	648,940	955,730	651,534	-	-
2011	2,998,680	581,099	252,635	545,388	1,056,039	563,519	-	-
2012	6,998,380	1,520,122	641,914	905,257	2,006,135	1,739,220	185,732	-
2013	9,994,785	2,414,443	600,514	1,711,872	2,236,828	2,557,265	473,863	-
2014	16,205,666	3,582,769	762,216	4,075,444	2,761,070	4,187,920	733,315	102,932

주: 육우와 토종닭 지급실적은 1억 원 미만이며, 2011년부터 지급되고 있음.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내부 자료.

○ 축종별 직불금 지급액은 2014년 기준 육계(토종닭 포함)가 25.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돼지가 25.1%, 한육우가 22.1%, 산란계(계란)가 17.0%, 우유가 4.7%, 오리가 4.5% 순으로 비중이 높음.

그림 3-2. 축종별 직불금 지급액 비중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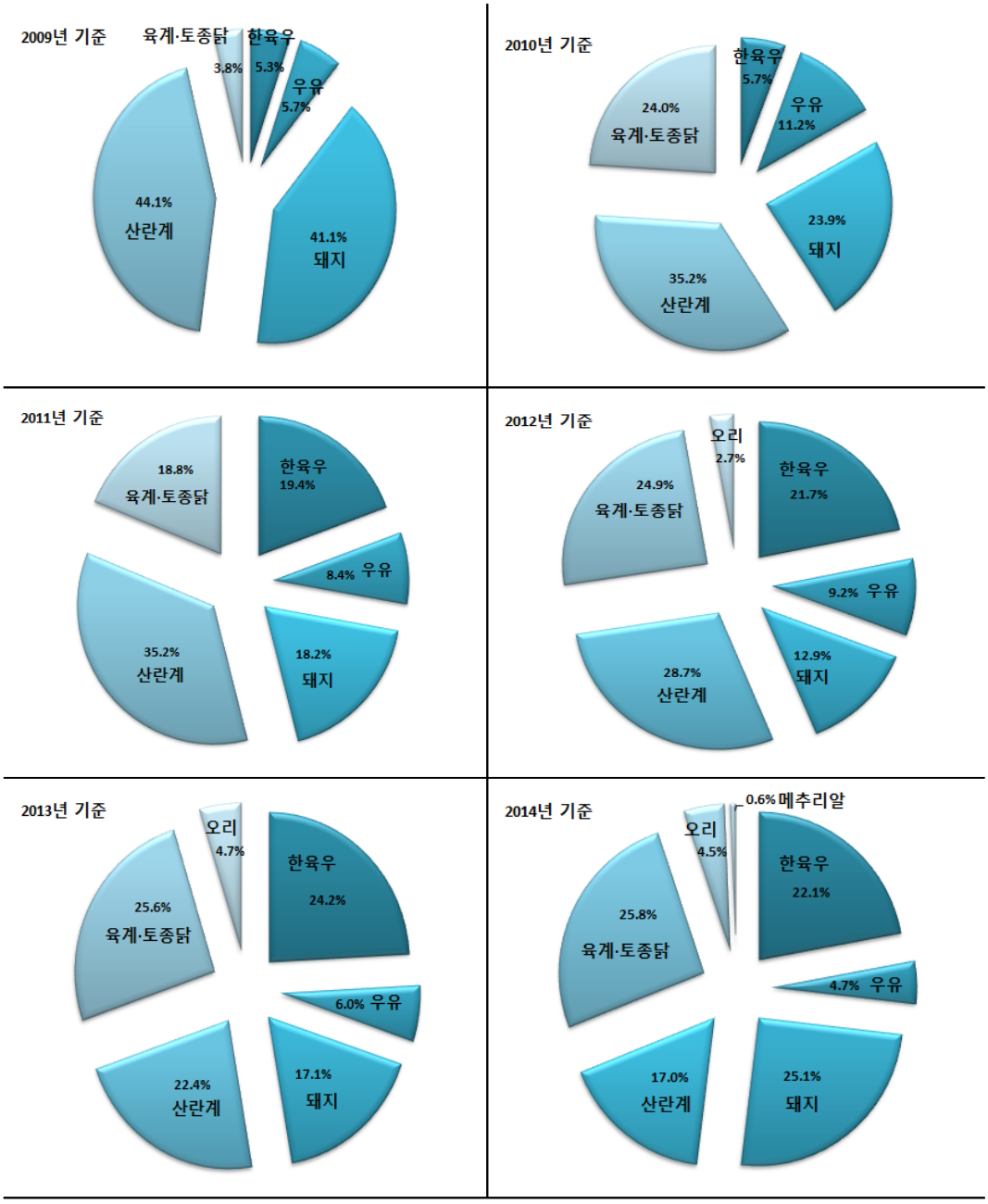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내부 자료.

○ 산란계 지급액 비중이 2009년 44.1%로 가장 많았지만 점차 감소하는 추세임. 돼지 지급액 비중은 2009년 41.1%에서 2012년 12.9%로 감소하였다가 이후 증가하는 추세이며, 육계 지급액 비중은 2009년 3.8%에서 2014년 25.8%로 증가하였음. 한육우의 경우 2009년 5.3%에서 2013년 24.2%로 증가하였다가 2014년 소폭 감소하였고 우유 지급액 비중은 감소 추세를 보임.

○ 농가당 직불금 수령액(2014년 기준)은 평균 약 800만 원으로 나타남. 축종별로 농가당 직불금 수령액을 보면 큰 차이를 보임. 한우의 경우 농가당 300만 원 수준으로 가장 낮은 반면, 돼지, 육계, 메추리알은 농가당 1,700만 원까지 직불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3-3. 축종별 농가당 평균 직불금 수령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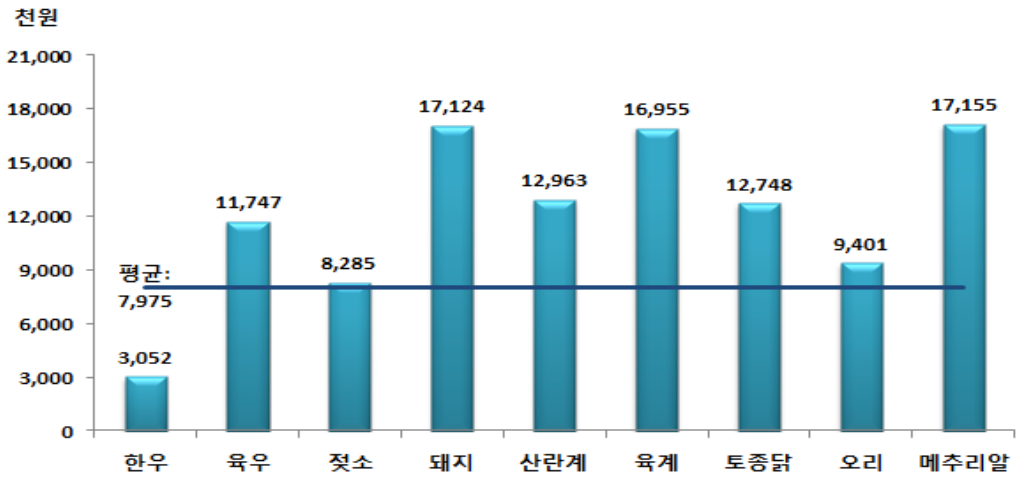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내부 자료.

제 4 장

설문 조사 분석

1. 생산자 조사 분석

1.1. 조사 개요

○ 축산 인증 현황과 지속적인 인증 및 도입 의향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축산 표본 농가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설문조사 응답자는 총 1,204명으로 2015년 11월 9~13일까지 일부 축종(젖소, 오리, 산란계)에 대하여 1차 조사를 실시함. 이후 문항의 수정·보완을 거쳐 한육우, 돼지, 육계 농가에 대해 12월 7~11일에 걸쳐 조사함.

○ 설문 응답자의 비중은 한육우 43.9%, 육계 13.9%, 젖소 12.2%, 돼지 12.1%, 오리 9.7%, 산란계 8.2%를 차지함.

표 4-1. 축종별 응답 현황

	한육우	육계	젖소	돼지	오리	산란계	합계
농가수(호)	528	167	147	146	117	99	1,204
비율(%)	43.9	13.9	12.2	12.1	9.7	8.2	100.0

1.2. 조사 내용

1.2.1. 표본농가 인증 현황 및 의향

○ 표본농가 조사 결과, 무항생제 인증 비율이 26.9%로 가장 많았고, HACCP 인증 비율이 24.4%를 차지하였음. 유기 인증과 동물복지 인증은 각각 2.4%, 0.5%를 차지함.

표 4-2. 표본농가의 축산 인증 현황

구분		응답수(명)	비율(%)
없음		678	45.9
HACCP		360	24.4
친환경축산물	무항생제	397	26.9
	유기	35	2.4
동물복지		7	0.5
전체		1,477	100.0

주: 복수 인증 농가의 경우 중복응답.

○ 인증 유지 및 신규 인증 의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앞으로 유지 또는 신규 인증 의향이 있는 농가는 총 704가구로 전체 응답자의 59.9%를 차지함. 이 중 인증을 받지 않은 농가는 221농가임.

○ 인증 의향이 없는 농가는 총 472가구로 전체 응답자의 40.1%를 차지함. 이 중 현재 인증을 받지 않은 농가는 454가구로 조사됨.

표 4-3. 인증 유무별 인증 유지 및 신규 인증 의향

		(향후) 유지 및 신규 인증 의향		전체
		의향 없음	의향 있음	
인증 유무	미인증농가	454	221	675
	인증농가	18	483	501
전체		472	704	1176

주: 전체농가 1,204농가 중 무응답 28농가.

- 인증을 받지 않은 농가의 72.1%는 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추후에도 인증을 받지 않겠다고 응답함.

○ 동물복지 인증을 받지 않으려는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추가 부지 및 자금 확보의 어려움'이 24.5%를 차지하였음. 그 외 '사육 마릿수 감소 등에 따른 소득 감소 우려로', '인증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순으로 나타났으며, 기타의 이유로 '필요치 않아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1.2.2. 축종별 인증 현황 및 의향

○ 축산 부문에 시행되고 있는 인증을 받지 않은 농가 비중이 가장 큰 축종은 젖소(72.8%)이고, 한육우 농가 55.4%, 육계 농가 52.2%, 오리 농가 36.1%, 돼지 농가 22.8%, 산란계 농가 11.9%가 인증이 없었음.

표 4-4. 축종별 인증 현황

축종		인증없음	HACCP	무항생제	유기	동물복지	전체
한육우	빈도(농가)	345	103	157	15	3	623
	비율(%)	55.4	16.5	25.2	2.4	0.5	100.0
젖소	빈도(농가)	115	23	17	3	0	158
	비율(%)	72.8	14.6	10.8	1.9	0.0	100.0
돼지	빈도(농가)	46	92	52	11	1	202
	비율(%)	22.8	45.5	25.7	5.4	0.5	100.0
육계	빈도(농가)	105	51	42	2	1	201
	비율(%)	52.2	25.4	20.9	1.0	0.5	100.0
산란계	빈도(농가)	19	67	69	3	2	160
	비율(%)	11.9	41.9	43.1	1.9	1.3	100.0
오리	빈도(농가)	48	24	60	1	0	133
	비율(%)	36.1	18.0	45.1	0.8	0.0	100.0

주: 중복응답.

○ 한육우, 산란계, 오리 농가는 무항생제 인증을 가장 많이 받았으며, 젖소, 돼지, 육계 농가는 HACCP 인증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조사됨.

○ 인증을 받은 축산농가의 52.4%는 2개 이상의 인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음. 주로 무항생제 인증과 HACCP 인증을 함께 받음.

- 산란계는 인증 받은 농가의 82.4%가 2개 이상의 인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축종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다음으로 육계가 55.0%, 돼지가 51.5%, 한육우가 47.2%, 젖소가 41.4%, 오리가 35.5% 순임.

표 4-5. 축종별 중복 인증 현황

축종		단독인증	복수 인증		합계
			2개	3개 이상	
한육우	빈도(농가)	95	73	12	180
	비율(%)	52.8	40.6	6.7	100.0
젖소	빈도(농가)	17	10	2	29
	비율(%)	58.6	34.5	6.9	100.0
돼지	빈도(농가)	47	42	8	97
	비율(%)	48.5	43.3	8.2	100.0
육계	빈도(농가)	27	31	2	60
	빈도(농가)	45.0	51.7	3.3	100.0
산란계	빈도(농가)	13	57	4	74
	비율(%)	17.6	77.0	5.4	100.0
오리	빈도(농가)	40	21	1	62
	비율(%)	64.5	33.9	1.6	100.0
전체	빈도(농가)	239	234	29	502
	비율(%)	47.6	46.6	5.8	100.0

○ 축종별 향후 인증 참여 의향 조사 결과, 젖소 농가는 전체 응답 농가(144가구)의 50% 이상이 향후 인증 참여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인증 참여 의향이 있는 농가는 전체 응답 농가의 43.1%인 62가구이며, 56.9%(82가구)는 앞으로도 인증 참여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한육우, 돼지와 육계 농가는 전체 응답 농가 중 50% 이상이 인증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육우 농가는 전체 응답 농가(528가구) 중 50%는 인증에 참여할 의향이 있으나 50%는 인증에 참여할 의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됨.
- 전체 돼지 응답 농가(146가구) 중 79.5%인 116가구는 인증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5%(30가구)는 앞으로도 인증 참여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인증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육계 농가는 전체 육계 응답 농가(167가구) 중 55.1%인 92가구이며, 44.9%(75가구)는 앞으로도 인증 참여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4-6. 축종별 인증 참여 의향

축종		참여의향 있음	참여의향 없음	전체
한육우	빈도(호)	264	264	528
	비율(%)	50.0	50.0	100.0
젖소	빈도(호)	62	82	144
	비율(%)	43.1	56.9	100.0
돼지	빈도(호)	116	30	146
	비율(%)	79.5	20.5	100.0
육계	빈도(호)	92	75	167
	비율(%)	55.1	44.9	100.0
산란계	빈도(호)	84	9	93
	비율(%)	90.3	9.7	100.0
오리	빈도(호)	87	20	107
	비율(%)	81.3	18.7	100.0

주: 전체 농가 1,204농가 중 무응답 19농가.

○ 산란계와 오리 농가는 전체 농가의 80% 이상이 인증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산란계 농가는 인증 농가의 비율이 타 축종에 비해 높은 편

이며 지속 참여 의향도 높음. 오리 농가는 추후에 인증을 받으려는 농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인증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산란계 농가는 전체 산란계 응답 농가(93가구) 중 90.3%를 차지하였으며, 9.7%(9가구)는 인증 참여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인증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오리 농가는 전체 오리 응답 농가(107가구) 중 81.3%를 차지하였으며, 18.7%(20가구)는 인증 참여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인증에 참여할 의향이 없는 농가들 중 80~90% 이상은 현재도 받고 있는 인증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2. 인증 농가 조사 분석[23]

2.1. 조사개요

○ 친환경축산물 인증 농가의 경영실태, 인증제도 도입 동기, 애로사항, 건의사항 등을 조사함. 설문조사 응답자는 총 100명임.

- 방문 조사 및 관련 기관 전문가를 통한 조사로 실시되었으며, 6개 축종(한우, 젖소, 한돈, 산란계, 육계, 오리)의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함.

○ 응답자 100농가 중 한우 27농가, 한돈 24농가, 오리 20농가, 산란계 12농가, 육계 10농가, 젖소 7농가가 응답함.

---

23 인증농가 설문조사는 친환경축산협회 김기현 이사에 의뢰함.

그림 4-1. 축종별 응답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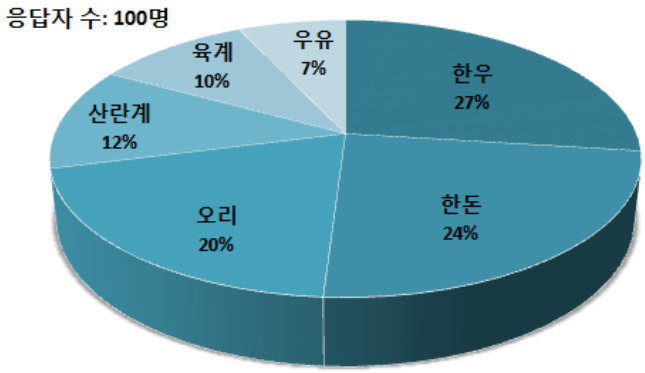

2.2. 조사내용

2.2.1. 전체 분석 결과

○ 표본농가 중 무항생제 인증을 받은 농가는 57.1%를 차지하였으며 HACCP 인증은 33.6%, 유기는 5.7%, 동물복지 3.6%를 차지함.

표 4-7. 표본농가 인증 현황

	무항생제	유기	동물복지	HACCP	전체
응답수(%)	80(57.1)	8(5.7)	5(3.6)	47(33.6)	140(100.0)

주: 복수 인증 농가의 경우 중복응답.

○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은 이유에 대해 1순위로 '환경과 축산물 안전에 대한 고려 없이 축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안정적인 출하처를 확보하기 위해', '높은 가격에 판매하기 위해' 순으로 높은 응답을 보임. 2순위로는 '안정적인 출하처를 확보하기 위해', '직불금 등 정부보조를 받기 위해' 순으로 나타남.

표 4-8.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은 이유

인증 받은 이유	1순위	2순위
안전에 대한 고려없이 축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27 (27.3)**	10 (10.3)
높은 가격에 판매하기 위해	**19 (19.2)**	**15 (15.5)**
직불금 등 정부보조를 받기 위해	10 (10.1)	**17 (17.5)**
안정적인 출하처를 확보하기 위해	**23 (23.2)**	**22 (22.7)**
가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8 (8.1)	15 (15.5)
지자체의 권유	3 (3.0)	7 (7.2)
출하처의 권유	9 (9.1)	11 (11.3)
전체	99 (100.0)	97 (100.0)

○ 친환경축산물 인증 준비단계의 애로 사항에 대해 1순위로 '시설 등 환경개선을 위한 추가자금 확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2순위로 '정부의 지원 부족', '소득 감소 우려', '관련 지식 부족' 순으로 응답이 많았음.

표 4-9. 친환경축산물 인증 준비시 애로사항

인증 준비시 애로사항	1순위	2순위
친환경 축산을 위해 필요한 추가 부지 확보	16 (16.5)	9 (9.4)
시설 등 환경개선을 위한 추가자금 확보	**43 (44.3)**	14 (14.6)
사양관리, 시설개선 방향에 대한 지식 부족	16 (16.5)	19 (19.8)
비용 추가 대비 판매가격이 낮아 소득 감소 우려	11 (11.3)	**24 (25.0)**
판매처 확보 곤란	4 (4.1)	3 (3.1)
정부의 지원 부족	6 (6.2)	**26 (27.1)**
기타	1 (1.0)	1 (1.0)
전체	97 (100.0)	96 (100.0)

○ 인증 후 운영 시 어려웠던 점에 대해 1순위로 '정부의 관심과 지원 부족'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2순위로 '친환경축산 사육 및 경영 관리 적응'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표 4-10. 친환경축산물 인증 후 운영시 어려웠던 점

운영시 어려웠던 점	1순위	2순위
정부의 관심과 지원 부족	**36 (36.7)**	21 (21.6)
친환경축산 사육 경영 관리 적응	34 (34.7)	**29 (29.9)**
생산비 증가	17 (17.3)	20 (20.6)
생산물 판매 어려움	7 (7.1)	10 (10.3)
관련 지식의 부족	3 (3.1)	17 (17.5)
기타	1 (1.0)	0 (0.0)
전체	98 (100.0)	97 (100.0)

○ 복수 인증 농가의 경우 중복 서류에 대한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음. 친환경축산물 인증 또는 HACCP 인증 둘 중 하나의 인증을 먼저 받은 농가의 경우 추후 나머지 인증을 받을 때 중복되는 부분에 대한 심사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이 외에 비슷한 항목의 심사임에도 불구하고 인증별로 비용이 각각 청구되어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있었음.

○ 인증 후 모든 축산물을 친환경으로 판매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72.3%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고, 27.7%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함.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농가는 젖소 사육 농가를 제외한 축종이었음. 인증 축산물로 판매하지 않은 비중은 평균 57.2%를 차지함.

그림 4-2. 모든 축산물에 대한 친환경축산물 판매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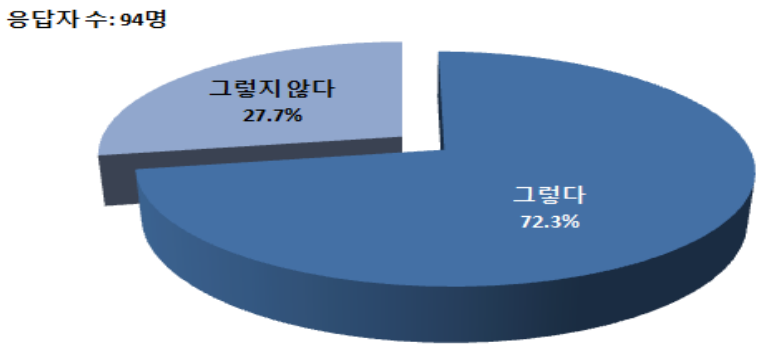

- 모든 축산물을 친환경축산물로 판매하지 않는 이유는 가금류의 경우 '전환기간이 충족되지 않아', '계열사가 인증 축산물을 취급하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한우와 한돈의 경우 '사육중인 가축의 일부만 인증을 받았으므로', '친환경축산물을 취급하는 출하처를 찾기 힘들어서'라고 응답함.

○ 모든 사육 마릿수에 대해 친환경 인증을 받은 비율은 83.5%이며, 일부만 인증 받은 농가는 16.5%로 나타남. 일부만 인증을 받은 경우 사육 마릿수의 73.4%정도가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4-3. 전체 사육 마릿수에 대한 친환경축산물 인증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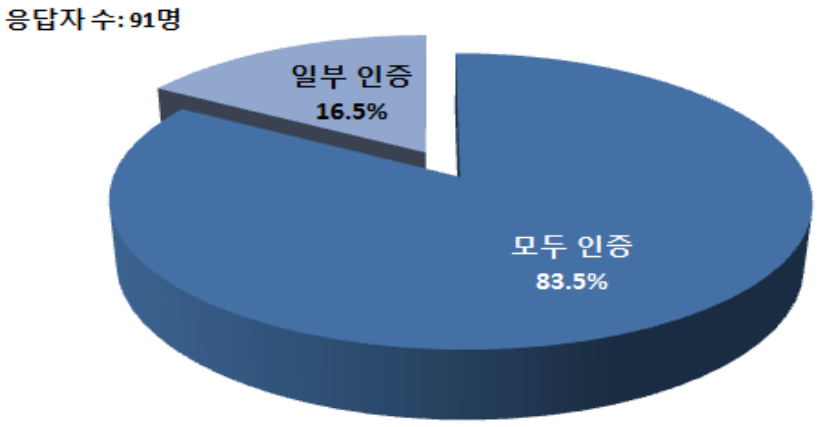

○ 친환경축산물 인증 이후 증가한 비목에 대해, 생약 등 약품 대체 물질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6.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그 외에는 동물용의약품과 생약 이외의 방역 치료비라는 응답률이 17.2%, 동물용의약품비라는 응답률이 15.6%로 나타남.

표 4-11. 친환경축산물 인증 후 증가한 비목

항목	응답수(명)	비율(%)
방역치료비 중 약품 대체 물질(생약 등)	67	36.0
동물용의약품 및 생약 외 방역 치료비	32	17.2
방역치료비 중 동물용 의약품비	29	15.6
고용노동비	23	12.4
사료	18	9.7
수도광열비	13	7.0
기타	4	2.2
전체	186	100.0

주: 중복응답.

○ 무항생제축산물의 명칭이 변경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는 응답과 명칭 변경이 필요 없다는 응답이 각각 50.0%로 동일하게 나타남.
- 새로운 명칭에 대해서는 유기농 인증을 별도로 표시하고 '친환경축산물'로 표기하자는 의견이 있었음.

그림 4-4. 무항생제 명칭 변경 필요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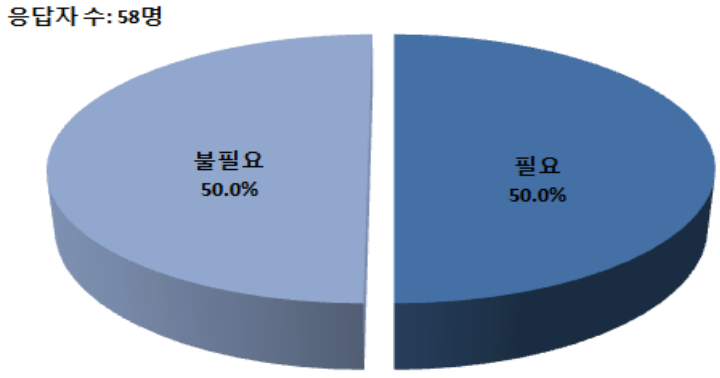

○ 가축의 입식 또는 출생부터 출하까지 전생애 동안 항생제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40.4%이며, 59.6%는 항생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사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응답함.

- 한우와 젖소 등 대가축 사육 농가는 과반수 이상이 전생애 무항생제가 불가능하다고 응답하였음.

그림 4-5. 가축의 전생애 무항생제 사육 가능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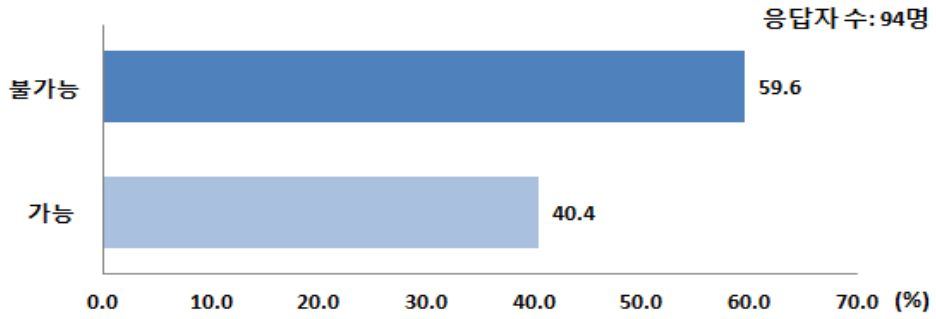

○ 소비자의 신뢰 구축을 위해 항생제 등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가축[24]에 대해 친환경축산물 인증 표시를 못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하는 응답비율이 각각 50.6%, 49.4%로 나타남.

○ 가축에게 항생제를 사용할 경우, 현재 기준인 '휴약기간 2배'를 '전환기간'으로 적용하여 약품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응답자의 53.7%가 찬성하였으며, 46.3%가 반대하였음.

○ 향후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을 받을 의향이 있는 농가는 38.6%로 인증 의향이 없는 농가(61.4%)보다 적었음.

- 인증을 받을 의향이 있는 농가는 그 이유에 대해, 1순위로 '축산물 안전에 대한 고려 없이 축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와 '안정적인 출하처를 확보하기 위해'라는 응답이 많았음. 인증 의향이 없는 농가의 경우 1순위로 '자금 확보의 어려움', '소득 감소 우려'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24 질병이 있는 경우 수의사 처방 또는 처방 매뉴얼에 따라 약품 사용이 허용됨. 단, 휴약기간의 2배를 준수해야 함.

표 4-12.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을 받으려는 이유

인증 의향 있는 이유	1순위	2순위
안전에 대한 고려없이 축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10 (26.3)**	4 (12.9)
높은 가격에 판매하기 위해	6 (15.8)	6 (19.4)
정부보조를 받기 위해	4 (10.5)	5 (16.1)
안정적인 출하처를 확보하기 위해	**8 (21.1)**	**7 (22.6)**
가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7 (18.4)	6 (19.4)
지자체의 권유	0 (0.0)	2 (6.5)
출하처의 권유	3 (7.9)	1 (3.2)
전체	38 (100.0)	31 (100.0)

표 4-13.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의향이 없는 이유

인증 의향 없는 이유	1순위	2순위
추가 부지 및 추가 자금 확보의 어려움	21 (41.2)	12 (23.5)
동물복지에 맞는 사양관리 관련 지식 부족	6 (11.8)	10 (19.6)
사육 마릿수 감소(등급저하) 등에 따른 소득 감소 우려	15 (29.4)	16 (31.4)
판매처 확보의 어려움	8 (15.7)	2 (3.9)
정부의 지원 미흡	1 (2.0)	11 (21.6)
전체	51 (100.0)	51 (100.0)

○ 조사 농가(100농가) 중, 친환경안전축산물 직불금을 수령한 농가는 27.0%를 차지함. 축종별 직불금 수령 농가의 비율을 보면, 육계의 경우 50.0%(5농가), 산란계는 41.7%(5농가), 오리는 30.0%(6농가), 한돈 12.5%(3농가), 한우 3.7%(1농가)로 나타남. 우유 농가는 모두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조사됨.

표 4-14. 친환경안전축산물 직불금 수령 농가 비율

축종	축종별 전체 응답수(명)	직불금 수령 농가 수(명)	직불금 수령 농가 비율(%)
한우	27	1	3.7
한돈	24	3	12.5
오리	20	6	30.0
산란계	12	5	41.7
육계	10	5	50.0
우유	7	7	100.0
전체	100	27	27.0

○ 직불금을 수령하지 않은 이유로 'HACCP 인증을 받지 않아'가 37.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직불금에 대해 몰라서'라는 응답이 20.0%를 차지함. 기타 응답으로 'AI 발생으로 입추 불가'와 '선정되지 못해서' 등이 있었음.

표 4-15. 직불금을 수령하지 않은 이유

구분	응답수(명)	비율(%)
HACCP인증을 받지 않아	15	37.5
직불금에 대해 몰라서	8	20.0
인증 축산물의 직불금 수령액을 늘리기 위해	3	7.5
다른 직불금 수령을 위해	1	2.5
기타	13	32.5
합계	40	100.0

○ 2015년 친환경안전축산물 직불제 사업 시행 기준에 따른 유기축산물 지급단가 및 무항생제축산물 지급단가에 대한 만족 여부와 유기축산물 직불금 지급기간 연장에 대해 만족 여부를 조사함. 유기축산물 지급단가와 무항생제축산물 직불금 단가에 대해서는 육계를 제외한 모든 축종에서 불만족 응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유기축산물 지급기간을 5년 또는 5회로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산란계를 제외한 대부분 축종이 불만족인 것으로 조사됨.

- 유기축산물에 대한 직불금의 지급 기간(5년)에 대해 불만족이라고 응답한 농가들의 평균 직불금 지급기간은 11.1년으로 나타남.

표 4-16. 친환경축산물 직불금 단가 및 지급기간 연장 관련 만족 여부

축종	무항생제축산물 지급단가		유기축산물 지급단가		유기축산물 지급기간 연장(5년)	
	만족	불만족	만족	불만족	만족	불만족
전체	13(18.3)	58(81.7)	14(29.8)	33(70.2)	11(35.5)	20(64.5)
한우	5(33.3)	10(66.7)	5(41.7)	7(58.3)	5(41.7)	7(58.3)
한돈	1(4.8)	20(95.2)	2(16.7)	10(83.3)	0(0.0)	2(100.0)
육계	3(50.0)	3(50.0)	4(100.0)	0(0.0)	1(50.0)	1(50.0)
우유	0(0.0)	7(100.0)	0(0.0)	7(100.0)	0(0.0)	7(100.0)
산란계	3(42.9)	4(57.1)	2(33.3)	4(66.7)	4(80.0)	1(20.0)
오리	1(6.7)	14(93.3)	1(16.7)	5(83.3)	1(33.3)	2(66.7)

2.2.2. 축종별 분석 결과

가. 한우

○ 한우 농가(총 27농가)는 주로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을 받았으며, 무항생제 인증과 더불어 HACCP 인증을 받은 농가는 4농가로 조사됨. 유기 인증 농가는 없었으며, 동물복지 인증은 조사 당시 인증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음.

표 4-17. 한우 표본농가 인증 현황

단위: 농가

	무항생제	HACCP	무항생제+HACCP	무항생제만 인증
농가 수	15	4	4	11

주: 무응답 12농가

○ 인증 이후 모든 한우를 친환경축산물로 판매하는지에 대해서는 80.0%의 농가가 '그렇다'라고 응답함. 모든 한우를 인증 축산물로 판매하지 않는 경우, 평균적으로 출하두수의 약 56.3%를 일반축산물로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 이유에 대해 '거세우만 친환경축산물로 판매', '추가 소득이 없어서' 라고 응답함.

○ 조사된 한우 농가는 사육 마릿수 전체에 대해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인증 후 변화된 사항으로 '축사가 청결해졌다'(5농가)는 의견이 가장 많았음. 반면, '생산비 증가에 따른 전체 수익이 감소했다'(2농가)는 의견도 있었음.

- 인증 이후 소득이 감소한 경우, 지속적으로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로 '친환경축산물이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사항이므로', '소비자들이 원하는 축산물 생산을 위해'라는 응답이 있었음.

○ 인증 전·후 사육기간 동안 항생제가 사용되는 시기를 비교해 본 결과, 큰소 비육 전기 이후 항생제 사용이 줄어들었음. 포유우에서 중송아지까지 항생제 사용은 인증 전·후가 크게 차이나지 않음.

표 4-18. 사육기간별 항생제 사용 비중(한우)

단위: 농가

	응답수	포유우	비육용 어린송아지	비육용 중송아지	큰소 비육전기	큰소 비육중기	큰소 비육후기
인증 전	12	7	6	4	2	3	2
인증 후	10	5	5	5	1	0	0

○ 전체 사육 마릿수 중 동물용 의약품을 사용한 한우 마릿수는 평균 12.8마리로 인증 후 평균 사육 마릿수(194.3마리)의 6.6%를 차지함.

○ 소비자의 신뢰 구축을 위해 항생제 등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가축에 대해 친환경축산물 인증 표시를 못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 57.1%로 반대하는 입장(42.9%)보다 많았음.

○ 가축에 항생제를 사용할 경우, 현재 기준인 '휴약기간 2배'를 '전환기간'으로 연장 하는 방안에 대해 한우 농가의 73.7%가 찬성하였으며, 26.3%가 반대하였음.

표 4-19.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개선에 대한 의견(한우)

단위: 농가(%)

개선(안)	찬성	반대	전체
항생제 등 동물용의약품 사용 가축에 대해 친환경축산물 인증 표시 못하게 하는 방안	**12(57.1)**	9(42.9)	21(100.0)
가축에게 항생제 사용할 경우 전환기간을 준수한 가축에게만 친환경축산물 인증 표시	**14(73.7)**	5(26.3)	19(100.0)

○ 한우에 대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기준이 신설되면 향후에 인증을 받을 의향이 있는 농가는 58.3%로 인증 의향이 없는 농가(41.7%)보다 많았음.

나. 한돈

○ 한돈농가(총 24농가)는 주로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을 받았으며, 무항생제 인증과 HACCP 인증을 동시에 받은 농가는 10농가로 조사됨. 유기와 동물복지 인증 농가는 없었음.

표 4-20. 한돈 표본농가 인증 현황

단위: 농가

	무항생제	HACCP	무항생제+HACCP	무항생제만 인증
농가 수	23	10	10	13

주: 무응답 1농가

○ 인증 이후 모든 비육돈을 친환경축산물로 판매하는지에 대해서는 71.4%의 표본농가가 '그렇다'라고 응답함. 모든 비육돈을 인증 축산물로 판매하지 않는 경우, 평균적으로 출하두수의 약 44.6%를 일반축산물로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 이유로 '출하처 확보가 어려움'이라는 응답이 많았음.

○ 조사에 응답한 한돈 농가의 47.4%는 사육 마릿수 전부에 대해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됨. 그 외 사육 마릿수 중 일부만 인증을 받은 농가(52.6%)들은 전체 사육 마릿수의 평균 78.5%만 인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 친환경 인증 이후 변화된 사항으로 ‘축사가 청결해졌다’ ‘기록할 사항들이 많아졌다’, ‘판매처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응답이 있었음.

○ 인증 전·후 사육기간 동안 항생제가 사용되는 시기를 비교해 본 결과, 전체적으로 인증 이후 항생제 사용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특히 비육돈 이후에는 항생제 사용은 없는 것으로 조사됨.

표 4-21. 사육기간별 항생제 사용 비중(한돈)

단위: 농가

	응답수	젖먹이 돼지	젖뗀 돼지	육성돈 전기	육성돈 후기	비육돈	비육돈 출하
인증 전	23	15	20	15	13	5	1
인증 후	16	8	11	9	2	0	0

○ 전체 사육 마릿수 중 동물용 의약품을 사용한 한돈 마릿수는 평균 121.1마리로 인증 후 평균 사육 마릿수(3,233마리)의 3.8%를 차지함.

○ 소비자의 신뢰 구축을 위해 항생제 등 동물용 의약품을 사용한 가축에 대해 친환경축산물 인증 표시를 못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 62.5%로 반대하는 입장(37.5%)보다 많았음.

○ 가축에게 항생제를 사용할 경우, 현재 ‘휴약기간 2배’를 ‘전환기간’으로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한돈 농가의 80.0%가 반대하였으며, 20.0%가 찬성하였음.

표 4-22.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개선에 대한 의견(한돈)

단위: 농가(%)

개선(안)	찬성	반대	전체
항생제 등 동물용의약품 사용 가축에 대해 친환경축산물 인증 표시 못하게 하는 방안	**10(62.5)**	6(37.5)	16(100.0)
가축에게 항생제 사용할 경우 전환기간을 준수한 가축에게만 친환경축산물 인증 표시	3(20.0)	**12(80.0)**	15(100.0)

○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을 받을 의향이 있는 농가는 4.3%에 불과하여 돼지의 경우 동물복지 인증에 대한 농가 수요가 매우 저조한 것을 알 수 있음.

다. 우유

○ 젖소농가(총 7농가)는 모두 무항생제 인증과 HACCP 인증을 받았으며, 5농가는 추가적으로 유기 인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됨.

표 4-23. 우유 표본농가 인증 현황

단위: 농가

	무항생제	유기	HACCP	유기 +HACCP	무항생제+HACCP +유기
농가 수	7	5	7	2	5

○ 인증 이후 모든 우유를 친환경 인증 축산물로 판매하는지에 대해서는 7농가 모두 '그렇다'라고 응답함.

○ 조사된 젖소 농가는 사육 마릿수 전부를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친환경 인증 이후 변화된 사항으로 '우유 가공 판매시 좋은 반응을 받음' 의견이 있었음. 반면, '저능력우 도태로 인해 육성우 비율이 증가하여 소득이 감소'한다는 의견도 있었음.

○ 인증 전·후 사육기간 동안 항생제가 사용되는 시기를 비교해 본 결과, 임신우, 종모우에서 항생제 사용이 두드러지게 줄었으며, 비유초기~비유말기에는 항생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 그러나 어린송아지~큰송아지 기간과 건유기에는 인증 전·후 항생제 사용이 크게 변하지 않음.

표 4-24. 사육기간별 항생제 사용 비중(우유)

단위: 농가

	응답수	어린 송아지	중 송아지	큰 송아지	임신 우	종모우	비유 초기	비유 중기	비유 말기	건유기
인증 전	7	7	7	7	4	3	3	3	3	7
인증 후	6	6	6	6	1	0	0	0	0	6

○ 소비자의 신뢰 구축을 위해 항생제 등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가축에 대해 친환경축산물 인증 표시를 못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모든 농가가 반대하는 입장임. 그 이유에 대해 가축의 치료를 위한 항생제 사용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 가축에 항생제를 사용할 경우, 현재 '휴약기간 2배'를 '전환기간'으로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우유 농가 전체가 반대하였으며, 현행대로 휴약기간의 2배를 준수하면 된다는 입장을 보임.

○ 젖소에 대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기준이 신설되면 향후에 인증을 받을 의향이 있는 농가는 57.1%로 인증 의향이 없는 농가(42.9%)보다 많았음.

라. 오리

○ 오리농가(총 20농가) 중 무항생제 인증만 받은 농가 8농가 였으며, 무항생제 인증과 HACCP 인증을 함께 받은 농가는 8농가 였음. 유기 인증 농가는 본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음.

표 4-25. 오리 표본농가 인증 현황

단위: 농가

	무항생제	HACCP	무항생제+HACCP	무항생제만 인증
농가 수	16	8	8	8

주: 무응답 4농가

○ 인증 이후 모든 오리를 친환경으로 판매하는지에 대해서는 70.0%의 표본농가가 ‘그렇다’라고 응답함. 모든 오리를 인증 축산물로 판매하지 않는 경우, 평균적으로 출하두수의 약 52.5%를 일반축산물로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 이유는 ‘전환기간이 충족되지 않아’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 오리 표본 농가의 80.0%인 16농가는 사육 마릿수 전부를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됨. 친환경 인증 이후 변화된 사항으로 ‘폐사율 증가’, ‘소독시설 강화’ 등이라고 응답함.

- 인증 이후 소득이 감소한 경우, 지속적으로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로 ‘친환경 인증 축산물에 대한 자부심으로’, ‘출하처 확보를 위해’ 등의 의견이 있었음.

○ 인증 전·후 사육기간 동안 항생제가 사용되는 시기를 비교해 본 결과, 모든 사육기간에서 인증 이후 항생제 사용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전히 어린 오리와 육성오리 시기에는 인증 이후에도 항생제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26. 사육기간별 항생제 사용 비중(오리)

단위: 농가

	응답수	어린오리	육성오리	큰오리
인증 전	12	10	8	1
인증 후	7	5	3	0

○ 소비자의 신뢰 구축을 위해 항생제 등 동물용 의약품을 사용한 가축에 대해 친환경축산물 인증 표시를 못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 60.0%로 찬성하는 입장(40.0%)보다 많았음.

○ 가축에게 항생제를 사용할 경우, 현재 ‘휴약기간 2배’를 ‘전환기간’으로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오리 농가의 64.3%가 찬성하였으며, 35.7%가 반대하였음.

표 4-27.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개선에 대한 의견(오리)

단위: 농가(%)

개선(안)	찬성	반대	전체
항생제 등 동물용의약품 사용 가축에 대해 친환경축산물 인증 표시 못하게 하는 방안	6(40.0)	**9(60.0)**	15(100.0)
가축에게 항생제 사용할 경우 전환기간을 준수한 가축에게만 친환경축산물 인증 표시	**9(64.3)**	5(35.7)	14(100.0)

○ 오리에 대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이 마련되면 향후에 인증을 받을 의향이 있는 농가는 43.8%로 인증 의향이 없는 농가(56.3%)보다 적었음.

마. 산란계

○ 산란계농가(총 12농가) 중 무항생제 인증을 받은 농가는 9농가 HACCP 인증을 받은 농가(10농가)가 많았음. 동물복지 인증 농가는 4농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유기 인증 2농가로 조사됨.

○ 인증 이후 모든 계란을 친환경 인증 축산물로 판매하는지에 대해서는 66.7%의 표본농가가 '그렇다'라고 응답함. 그 외 33.3%는 모든 계란을 친환경 인증 축산물로 판매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

- 모든 계란을 친환경 인증 축산물로 판매하지 않는 이유는 '전환기간이 충족되지 못하여', '유기계란 판매 부진으로', '정품 외 계란일 경우'라는 응답이 있었음.

○ 산란계 전체 표본 농가는 사육 마릿수 전부에 대해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됨. 친환경 인증 이후 변화된 사항으로 '생약 약품비 관련 비용 증가' 및 '인증 유지 비용 증가' 등의 의견이 있었음.

- 인증 이후 소득이 감소한 경우, 지속적으로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로 '시설유지를 위해', '일반계란과의 차별화를 위해' 등의 의견이 있었음.

표 4-28. 산란계 표본농가 인증 현황

단위: 농가

인증 명칭		농가수
무항생제		9
유기		2
동물복지축산농장		4
HACCP		10
복수 인증	무항생제+HACCP	5
	무항생제+HACCP+동물복지축산농장	2
	무항생제+HACCP+동물복지축산농장+유기	1
	유기+HACCP+동물복지축산농장	1
	무항생제만 인증	1
	HACCP만 인증	1

주: 무응답 1농가

○ 인증 전·후 사육기간 동안 항생제가 사용되는 시기를 비교해 본 결과, 전체적으로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는 편이었음. 특히 산란초기부터는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표 4-29. 사육기간별 항생제 사용 비중(산란계)

단위: 농가

	응답수	산란전	산란초기	산란중기	산란말기
인증 전	3	2	1	0	0
인증 후	1	1	0	0	0

○ 소비자의 신뢰 구축을 위해 항생제 등 동물용 의약품을 사용한 가축에 대해 친환경축산물 인증 표시를 못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 81.8%로 반대하는 입장(18.2%)보다 많았음.

○ 가축에게 항생제를 사용할 경우, 현재 '휴약기간 2배'를 '전환기간'으로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응답자 전체가 찬성하였음.

표 4-30.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개선에 대한 의견(산란계)

단위: 농가(%)

개선(안)	찬성	반대	전체
항생제 등 동물용의약품 사용 가축에 대해 친환경축산물 인증 표시 못하게 하는 방안	**9(81.8)**	2(18.2)	11(100.0)
가축에게 항생제 사용할 경우 전환기간을 준수한 가축에게만 친환경축산물 인증 표시	**7(100.0)**	0(0.0)	7(100.0)

○ 향후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을 받을 의향이 있는 농가는 66.7%로 인증 의향이 없는 농가(33.3%) 보다 많았음.

바. 육계

○ 육계 농가(총 10농가) 중 무항생제와 HACCP 인증을 동시에 받은 농가는 7농가 였으며, 2농가는 무항생제 인증만, 나머지 농가는 무항생제, 유기, 동물복지, HACCP 인증을 모두 받았음.

표 4-31. 육계 표본농가 인증 현황

단위: 농가

인증 명칭		농가수
무항생제		10
유기		1
동물복지축산농장		1
HACCP		8
복수 인증	무항생제+HACCP	7
	무항생제+HACCP+동물복지축산농장+유기	1
	무항생제만 인증	2

○ 육계 조사 농가의 88.9%는 모든 사육 마릿수에 대해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됨. 그 외 11.1%는 약 70%의 사육 마릿수만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친환경 인증 이후 변화된 사항으로 '소독을 철저히 함', '안전한 먹거리 생산에 대한 자부심', '생약 약품비 관련 비용 증가' 등의 의견이 있었음.

- 인증 이후 소득이 감소한 경우, 지속적으로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로 '직불금을 받기 위해', '소비자에게 무항생제 닭고기를 제공하고 싶어서' 등의 의견이 있었음.

○ 인증 전·후 사육기간 동안 항생제가 사용되는지를 비교한 결과, 인증 전에는 90.0%의 농가가 항생제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음. 반면, 인증 후에는 22.2%만 항생제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남.

○ 소비자의 신뢰 구축을 위해 항생제 등 동물용 의약품을 사용한 가축에 대해 친환경축산물 인증 표시를 못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 71.4%로 찬성하는 입장(28.6%)보다 많았음.

- 반대 이유로 '휴약기간 2배를 준수한다면 친환경축산물 인증이 가능하다'라는 의견임.

○ 가축에 항생제를 사용할 경우, 현재 '휴약기간 2배'를 '전환기간'으로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60.0%가 찬성하였음. 반대 이유로 '전환기간이 현실적이지 않아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표 4-32.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개선에 대한 의견(육계)

단위: 농가(%)

개선(안)	찬성	반대	전체
항생제 등 동물용의약품 사용 가축에 대해 친환경축산물 인증 표시 못하게 하는 방안	2(28.6)	**5(71.4)**	7(100.0)
가축에게 항생제 사용할 경우 전환기간을 준수한 가축에게만 친환경축산물 인증 표시	**3(60.0)**	2(40.0)	5(100.0)

○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을 받을 의향이 있는 농가는 28.6%로 인증 의향이 없는 농가(71.4%) 보다 적었음.

3. 소비자 조사 분석[25]

3.1. 조사 개요

○ 미래 축산업 정책 개선을 위해 축산업에 대한 국민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함. 설문조사 응답자는 총 908명으로 2015년 11월 3~13일에 걸쳐 조사함.
- 응답자 중 432명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홈페이지 회원이며, 474명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에서 운영하는 소비자패널임.

○ 설문 응답자 중 남자는 37.1%, 여자는 62.9%이며 직업은 주부(34.7%), 사무직(32.0%), 기타(10.0%), 서비스직(7.5%), 농업(7.5%), 자영업(5.8%), 학생(1.2%)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3.2. 조사 결과

○ 축산물 인증제도에 대한 인식과 관련해서 HACCP, 무항생제, 유기 인증제도에 대해서는 대부분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답했으나, 동물복지의 경우에는 '잘 모른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음.

○ 축산물 구매 시 인증표시가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해 74.7%가 영향이 있다고 답했고 25.3%는 영향이 없다고 응답함. 축산물 구매 시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인증표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51.5%가 있다고 응답함.

---

25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수행 중인 "국민경제를 고려한 미래 축산정책 개선방안 연구(2016년 3월 말 완료 예정)"와 공동으로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본 과제와 관련된 내용(무항생제축산물 인증 부분 등)과 조사 개요 등의 내용은 서로 중복됨.

표 4-33. 시행 중인 인증제도에 대한 인지도

단위: 명(%)

구분	HACCP	무항생제	유기	동물복지
전혀 들어보지 못함	5(0.6)	14(1.6)	34(3.8)	109(12.3)
잘 모르는 편임	87(9.8)	110(12.4)	**233(26.2)**	**341(38.4)**
어느 정도 아는 편임	**505(56.6)**	**520(58.8)**	**420(47.3)**	**289(32.5)**
매우 잘 알고 있음	**295(33.1)**	**240(27.1)**	201(22.6)	149(16.8)
합계	892(100.0)	884(100.0)	888(100.0)	888(100.0)

표 4-34. 인증표시가 축산물 구매에 미치는 영향

구분	응답수(명)	비율(%)
영향 없음	226	25.3
영향 있음	669	74.7
합계	895	100.0

○ 인증 축산물에 대한 구매 경험이 없거나, 구매하였지만 앞으로 더 이상의 구매의사가 없는 경우 그 이유에 대해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일반 축산물과 별다른 차이를 느낄 수 없어서'라고 응답함. 다만 동물복지 축산물의 경우에는 '인증축산물을 구입하기 쉽지 않아서'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음.

표 4-35. 인증 축산물 구매 경험 및 구매의사 없는 이유

단위: 명(%)

구분	HACCP 인증 축산물	무항생제 축산물	유기 축산물	동물복지 축산물
인증 축산물의 가격이 너무 비싸서	151(29.1)	127(23.2)	131(22.6)	84(14.1)
일반 축산물과 별다른 차이를 못 느껴서	**201(38.7)**	**185(33.8)**	**166(28.6)**	139(23.8)
인증축산물을 구입하기 쉽지 않아서	31(6.0)	74(13.5)	119(20.5)	**163(27.9)**
인증 제도를 신뢰할 수 없어서	131(25.2)	152(27.7)	143(24.7)	156(26.7)
맛이 없어서	1(0.2)	2(0.4)	4(0.7)	10(1.7)
축산물을 구입하지 않음	4(0.8)	8(1.5)	17(2.9)	32(5.5)
합계	519(100.0)	404(100.0)	426(100.0)	428(100.0)

○ 일반 축산물과 인증 축산물이 각종 기준을 잘 준수하고 투명한 유통과정을 거치는지에 대한 신뢰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 ‘HACCP’, ‘무항생제’, ‘유기’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신뢰한다고 응답함.

- 반면 ‘일반 축산물’과 ‘동물복지 축산물’에 대해서 신뢰한다는 답변은 절반에 못 미침.

그림 4-6. 일반 축산물 및 인증 축산물에 대한 신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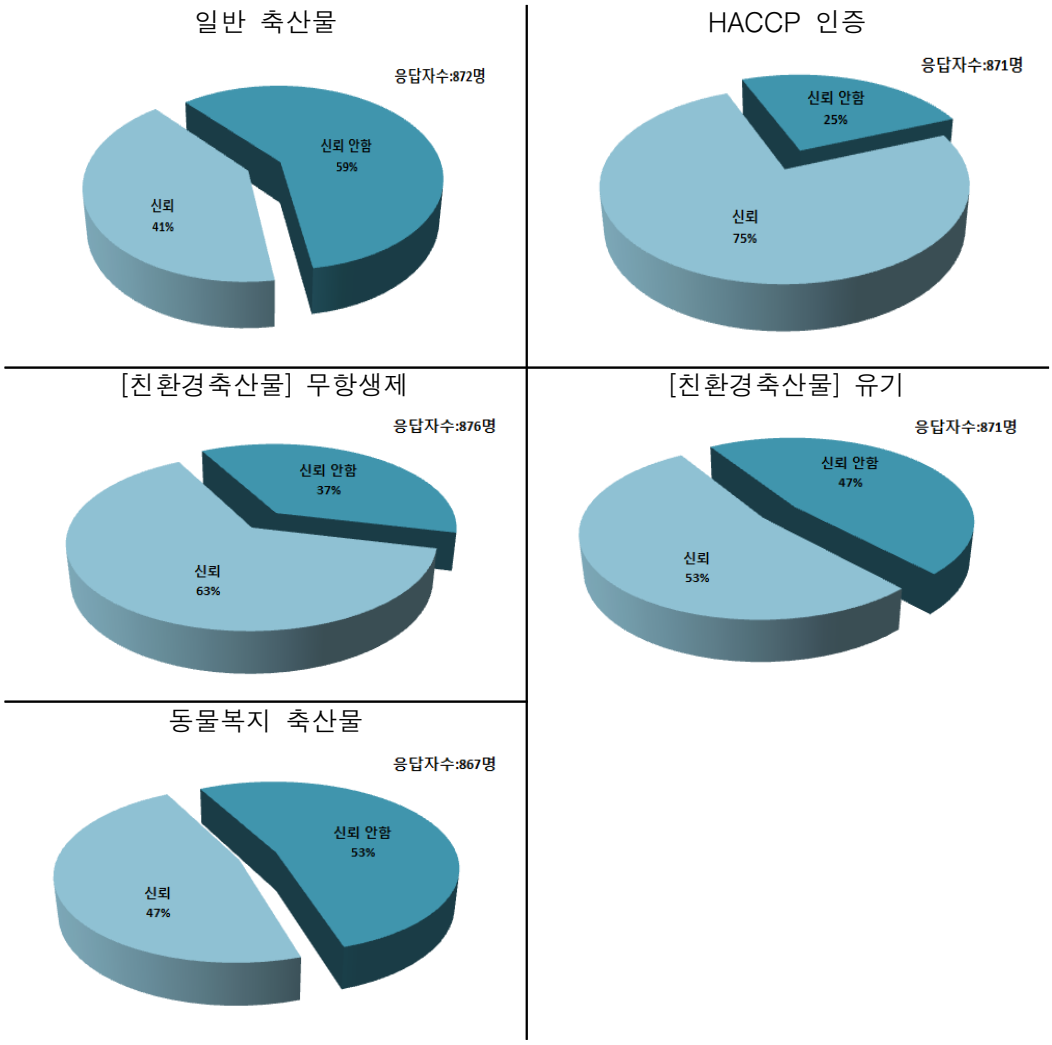

○ 일반 축산물과 인증 축산물의 식품 안전성 수준에 대해서는 일반 축산물의 ‘식품 안전성이 낮다’는 비율이 73.7%에 달함. 반면 인증 축산물의 ‘식품 안전성 높다’라는 답변은 모두 50% 이상임.

표 4-36. 일반 축산물과 인증 축산물의 식품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인식

구분		낮음	높음	합계
일반축산물	응답수(명)	645	230	875
	비율(%)	73.7	26.3	100.0
HACCP 인증	응답수(명)	172	702	874
	비율(%)	19.7	80.3	100.0
무항생제	응답수(명)	228	642	870
	비율(%)	26.2	73.8	100.0
유기	응답수(명)	292	567	859
	비율(%)	34.0	66.0	100.0
동물복지 축산물	응답수(명)	376	474	850
	비율(%)	44.3	55.8	100.0

○ 축산 인증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응답자들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특히, HACCP 인증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92.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무항생제가 88.2%, 유기가 84.2%, 동물복지가 82.7%로 나타남.

표 4-37. 축산 인증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

구분		필요없음	필요	합계
HACCP 인증	응답수(명)	65	789	854
	비율(%)	7.7	92.4	100.0
무항생제	응답수(명)	100	746	846
	비율(%)	11.8	88.2	100.0
유기	응답수(명)	133	711	844
	비율(%)	15.7	84.2	100.0
동물복지	응답수(명)	145	694	839
	비율(%)	17.2	82.7	100.0

○ 동물복지 축산 활성화 필요성과 정부 예산 지원 필요성에 대해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긍정적인 답변을 함.

- 동물복지 축산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85.0%, 정부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답변은 77.9%로 나타남.

그림 4-7. 동물복지 축산 활성화 및 예산 지원 필요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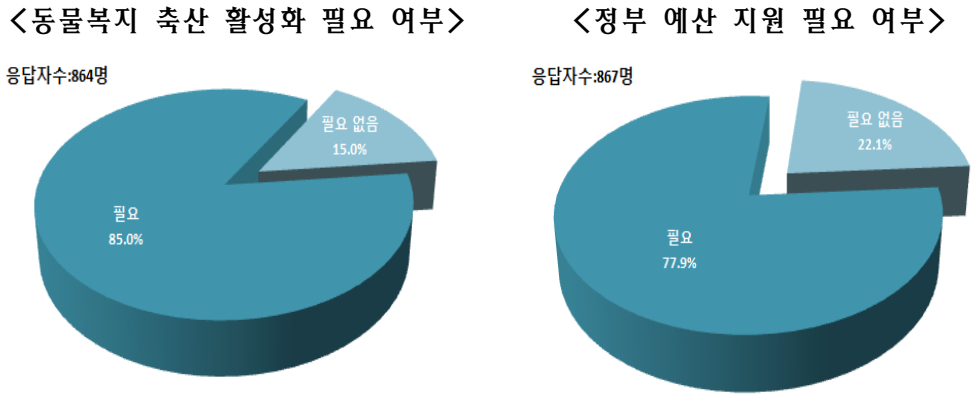

○ '무항생제축산물'이 직관적으로 어떠한 축산물로 인식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65.3%의 응답자들은 '사육하는 가축에게 항생제 미사용'이라고 응답함.

그림 4-8. 무항생제 축산물의 직관적 의미에 대한 국민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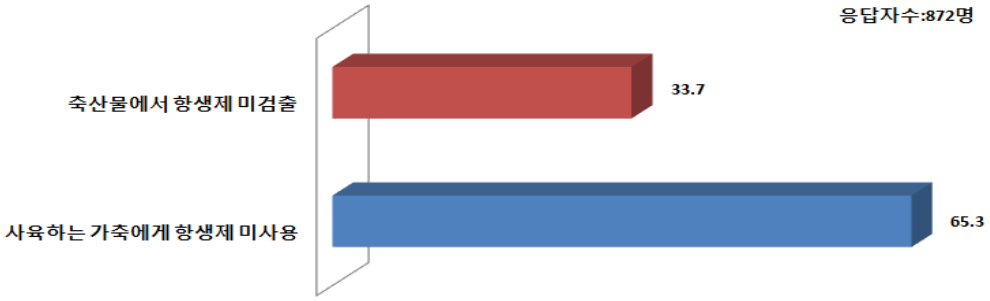

주: 기타 응답은 9명으로 1.0%를 차지함.

○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과 관련해서 57.4%의 응답자들은 '현재와 같은 인증기준'을 통해 판매되는 것은 괜찮다고 답한 반면 42.6%는 '동물약품을 사용해서 생산된 축산물은 무조건 무항생제 축산물로 판매 불가'하다고 답함.

- 가축에게 항생제 사용에 대해 다소 긍정적인 응답을 보이긴 했지만 여전히 소비자들은 무항생제축산물에 항생제가 사용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4-38. 무항생제 인증 관련 동물용 의약품 사용에 대한 소비자 인식

구분	응답수(명)	비율(%)
현재와 같은 기준에 따라 무항생제축산물로 판매 가능	498	57.4
동물약품이 사용되어 생산된 축산물은 무조건 무항생제축산물로 판매 불가	369	42.6
합계	867	100.0

○ 무항생제 인증에 있어 철저한 잔류물질 검사를 통해 항생물질이 검출되지 않는다면,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농가가 가축에게 동물용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라도 무항생제 축산물로 판매해도 된다'라는 응답이 57.4%로 나타남.

○ 산지생태축산 활성화 필요성과 정부 예산 지원 필요성에 대해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긍정적인 답변을 함.

그림 4-9. 산지생태축산 활성화 및 예산 지원 필요 여부

<산지생태축산 활성화 필요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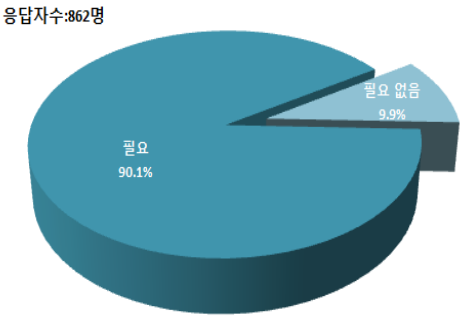

<정부 예산 지원 필요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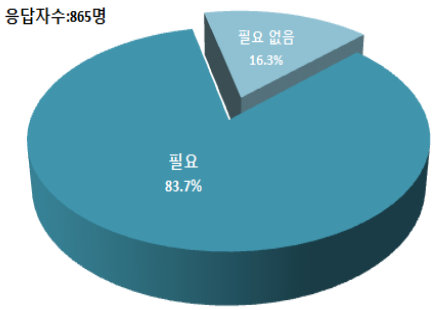

4. 전문가 조사 분석[26]

4.1. 조사 개요

○ 한국동물자원과학회 주관으로 한국축산분야학회협의회가 공동 주최하는 「축산과 건강 심포지엄」과 농경제 관련 4개 학회가 주관하는 「농경제 공동학술대회」에 참석한 교수, 연구원, 협회 및 업계 관계자, 소비자단체 소속 등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됨.

- 조사는 2015년 11월 5일 심포지엄과 12월 16일 농경제 공동학술대회 현장에서 설문지를 배포하여 회수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주요 내용은 무항생제 인증제 개편에 대한 의견, 미래 축산 정책 추진 방향 등임.

○ 설문조사에 응답한 전문가들은 전체 70명으로, 연구자 및 대학 교수가 응답자의 52.9%를 차지하고 있고, 축산관련 협회 및 업계 관계자가 25.7%, 소비자 단체가 11.4%를 차지하고 있음.

표 4-39. 전문가의 유형 구분

소속 기관	빈도(명)	비율(%)
연구기관 및 대학	37	52.9
축산 업계 및 관련 협회	18	25.7
소비자 단체	8	11.4
기타(무응답 포함)	7	10.0
총계	70	100.0

26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수행 중인 “국민경제를 고려한 미래 축산정책 개선방안 연구(2016년 3월 말 완료 예정)”와 공동으로 조사를 진행함.

4.2. 조사 결과

4.2.1.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에 관한 의견

○ 현재의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기준은 가축이 질병에 걸릴 경우 수의사의 처방전이나 처방매뉴얼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동물약품을 사용하면 축산물의 출하 시 해당 약품의 휴약 기간의 2배가 지났음을 확인해야 하고, 최초 출하 시 인증기관에 잔류물질 검사를 의뢰하고 그 검사 성적서를 비치해야 함.

○ 위와 같은 무항생제 인증 기준의 동물용 의약품 사용과 관련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현재와 같은 기준에 따라 무항생제 축산물로 판매해도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70.1%로 나타났고, 응답자의 29.9%는 동물약품이 사용되어 생산된 축산물은 무조건 무항생제 축산물로 판매할 수 없다고 답변함.
- 그룹별로 응답의 차이를 보이는데, 연구원과 대학교수들의 경우, 현행 기준대로 무항생제로 판매해도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85.3%이었고, 협회 및 업계 종사자는 61.1%,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50.0%이었음.

표 4-40. 무항생제 축산물의 동물용의약품 사용에 대한 의견

소속		현행기준에 따라 무항생제로 판매가능	무항생제로 판매불가	합계
연구기관 및 대학	응답수(명)	29	5	34
	비율(%)	85.3	14.7	100.0
소비자단체	응답수(명)	4	4	8
	비율(%)	50.0	50.0	100.0
업계 및 협회	응답수(명)	11	7	18
	비율(%)	61.1	38.9	100.0
기타	응답수(명)	3	4	7
	비율(%)	42.9	57.1	100.0
합계	응답수(명)	47	20	67
	비율(%)	70.1	29.9	100.0

○ 추가로 무항생제 인증 농가가 가축에게 동물용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라도 철저한 잔류물질 검사를 통해 인증 축산물에 항생물질이 검출되지 않는다면 무항생제 축산물로 판매해도 되는지 질문한 결과, 판매해도 된다는 응답 비율이 73.9%로 나타났음.

- 그룹별로 응답의 차이를 보이는데, 연구원과 대학교수들의 경우, 항생물질 검출되지 않는다면 무항생제 축산물로 판매해도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86.1%이었고, 협회 및 업계 종사자는 72.2%,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37.5%이었음.

표 4-41. 항생물질 잔류 없을 경우 무항생제축산물로 판매 가능 여부

소속		판매 가능	판매 불가	합계
연구기관 및 대학	응답수(명)	31	5	36
	비율(%)	86.1	13.9	100.0
소비자단체	응답수(명)	3	5	8
	비율(%)	37.5	62.5	100.0
업계 및 협회	응답수(명)	13	5	18
	비율(%)	72.2	27.8	100.0
기타	응답수(명)	4	3	7
	비율(%)	57.1	42.9	100.0
합계	응답수(명)	51	18	69
	비율(%)	73.9	26.1	100.0

○ 무항생제 인증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 항생제 투여 여부와 투여 후 안전성에 대한 공식적인 검증이 필요함.
- 무항생제 인증 후 농가에서 항생제 사용이 빈번하므로 농가 교육을 강화하고 벌칙을 강화해야 함.
- 인증제도를 개선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해야 함.
- 항생제 의약품 사용 여부와 잔류물질 검출 수치 표시하도록 해야 함.
- 가축에 질병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물복지 차원에서 항생제 치료를 하고 항생제 잔류물질이 검출되지 않을 경우에만 출하하도록 개선해야 함.

- 무항생제축산물은 장기적으로 폐지해야 함.
- 무항생제축산물은 항생제 없이 사육하여야만 의미가 있음.
- 무항생제축산물은 친환경적으로(청정하게) 사육할 경우 인증해야 함.

4.2.2. 미래 축산 정책 추진 방향

○ 미래에 축산업이 국민들에게 긍정적인 산업으로 인식되면서 지속될 수 있기 위해 추진해야할 정책 사업에 대한 중요도를 조사한 결과, 설문에서 사전적으로 제시된 모든 정책 사업들의 중요도 점수가 5점(중간 점수 4점)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음.

- “국민들에게 안전한 축산물 지속 공급”, “축산물 유통과정의 투명화”, “친환경 축산업의 확대 및 보급”, “가축 방역체계 강화”, “국내 축산업의 가격 및 품질 경쟁력 제고” 사업들은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남.

표 4-42. 미래 축산 정책의 중요도

축산 정책 사업	응답수	중요도 점수		
		평균	표준편차	순위
국민들에게 안전한 축산물 지속 공급	70	6.13	1.154	**1위**
축산물 유통과정 투명화	70	6.01	1.136	**2위**
친환경 축산업의 확대 및 보급	70	5.97	1.285	**3위**
가축 방역체계 강화를 통한 가축질병 차단	70	5.94	1.295	**4위**
국내 축산업의 가격 및 품질 경쟁력 제고	70	5.71	1.218	**5위**
축산기술 보급 및 향상을 통한 생산성 향상	70	5.63	1.144	6위
동물복지 등을 통한 가축 사육환경 개선	70	5.54	1.293	7위
축산농가 소득 안정	69	5.22	1.434	8위
축산업의 6차산업화 등을 통한 산업 다각화	70	5.14	1.231	9위
축산물의 수급 안정	70	5.14	1.207	10위

주: 중요도 점수는 1~7점을 부여하되, 중요도가 높을수록 높은 점수를 기입하도록 함.

5. 분석 결과의 시사점

5.1. 생산자 조사 결과의 시사점

○ 축산 인증에 대한 참여 의향은 향후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무항생제와 HACCP 인증에 대한 수요가 많은 것으로 조사됨. 기존 인증농가에서 인증을 포기하려는 농가 수보다 신규 인증을 받으려는 농가 수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됨.

- 인증 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참여를 꺼리는 경우도 있어 축산농가의 인증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인증 절차 상 문제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함.

○ 인증을 받은 농가들은 단독으로 인증을 받는 농가들도 있지만, 절반 이상의 인증 농가들이 HACCP, 무항생제, 유기,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을 함께 받는 경우가 많음. 주로 무항생제 인증과 HACCP 인증을 함께 받는 것으로 나타났음.

- 친환경축산물 인증과 더불어 다른 인증을 받은 농가들은 인증기준이 다르고 인증하는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인증별로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함. 축산 인증 간 서로 중복되는 서류가 있거나 인증 기준에 유사한 내용이 있어 번거로움을 초래한 경우에는 개선을 통해 복수 인증 농가의 편의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5.2. 인증 농가 조사 결과의 시사점

○ 가축의 입식 또는 출생부터 출하까지 전생애동안 항생제 사용을 하지 않고 사육이 가능한지에 대해 약 60%의 농가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보였음. 생애주기가 짧은 육계, 오리 등은 전생애 무항생제가 가능하다는 응답이 높은

반면, 상대적으로 생애주기가 긴 한우, 젖소, 돼지의 경우는 전생애 무항생제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았음. 또한 친환경축산물 인증의 경우 항생제 등 동물용의약품의 사용이 인증전과 비교하여 현저히 줄어들었지만, 가축의 분만, 어린 시기에는 항생제를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됨.

- 무항생제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에 맞추기 위해서는 항생제 등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가축 사육 과정에서 거세, 분만, 꼬리자르기 등 항생제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서는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개선 시 예외적으로 두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소비자의 신뢰 구축을 위해 항생제 등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가축으로부터 생산된 축산물을 친환경축산물로 표시를 못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인증농가의 50.6%가 찬성하였음. 또한 가축에게 항생제를 사용할 경우 전환기간을 준수한 가축에게만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표시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인증농가의 53.7%가 찬성하여 찬성률이 다소 높아짐.

- 인증 농가들이 동물용의약품 사용 기준 강화에 대해 찬성 의견이 높게 나옴. 무항생제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인증농가의 가축 사육 여건, 국제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무항생제축산물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사용 기준 강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오리의 경우 전환기간이 42일로 설정되어 있어 친환경축산물로 출하하기 위해서는 전환기간을 준수해야 함. 오리의 출하가 사육기술 발달과 품종 개량 등으로 42일 전에도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 전환기간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 42일 이전에 오리 출하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전환기간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사육일수를 늘려야 한다면, 인증 농가의 비용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오리의 경우 전환기간의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친환경안전축산물 직불제와 연계될 수 있는 정책사업의 홍보가 필요해 보임. 친환경축산물 인증 농가 조사 결과, 직불금을 수령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HACCP 인증을 받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37.5%로 가장 많았고, '직불제에 대해 몰라서'라는 응답은 20%를 차지하고 있음.

- 정책 사업 중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 사업은 HACCP 적용을 희망하는 축산농가와 영업자를 대상으로 HACCP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자부담 30%)하는 사업임. 2015년까지는 신청자격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제한되었지만 2016년부터는 규모 제한이 없어질 예정임.
- 다수의 인증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인증 심사 또는 재심사 시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 사업과 친환경안전축산물 직불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 친환경안전축산물 직불금의 지급단가를 축산업 여건 변화를 감안해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인증 농가 조사 결과 직불금 지급단가에 대한 불만(유기 불만족 70.2%, 무항생제 불만족 81.7%)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대부분 축종의 직불금 지급단가는 직불제 도입 당시인 2009년에 산정된 이후 조정되지 않음.

○ 유기축산물에 대한 직불금 지급기간에 대한 연장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인증 농가 조사 결과, 유기 직불금을 5년 지급하는 것에 대해 불만족인 농가가 64.5%로 나타났으며, 평균 10년 이상의 직불금 지급을 희망하고 있음. 한편 유기농 직불금의 지급기간은 2015년에 5년에서 8년으로 조정된 바 있음.

5.3. 국민인식 조사 결과의 시사점

○ 동물복지 인증의 경우 응답자의 절반이 잘 모른다고 응답하였고, 구입하기 쉽지 않아서 구매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많았음. 유기 인증의 경우 HACCP

이나 무항생제 인증보다 잘 모른다는 응답률이 높았음. 이러한 인증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 대다수의 국민들이 축산 인증제도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인증 축산물에 대해서는 안전성이 일반 축산물보다 높다고 판단하고 있음. 인증축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유지 또는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축산 인증제도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임.

○ 동물복지축산과 산지생태축산 활성화의 필요성에 대해 대부분의 국민들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동물복지와 산지생태축산에 대한 정부 지원에 대해서도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됨.
- 동물복지축산과 산지생태축산 활성화를 위해 직불제나 정책 사업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국민들은 무항생제축산물을 가축에게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65.3%)하고 있고, 잔류물질 검사를 통해 항생물질이 검출되지 않더라도 무항생제 축산물로 판매해서는 안된다는 응답이 많은(43.0%) 것으로 조사됨.
- 국민들의 대부분이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또한 국민들의 65.3%가 무항생제축산물에 대해서 가축에게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무항생제축산물 명칭에 맞게 항생제 등 동물용의약품 사용 기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5.4. 전문가 조사 결과의 시사점

○ 무항생제 인증 기준에 제시된 동물용의약품 사용과 관련된 현행 기준에 따라 무항생제축산물로 판매가 가능하다는 응답 비율이 70.1%로, 국민 인식조사의 응답 비율인 57.4%보다 높게 나타남. 또한 동물용의약품 사용할 경우

항생물질이 검출되지 않는다면 무항생제축산물로 판매해도 된다는 응답 비율이 73.9%로, 국민 인식조사의 응답 비율인 57.0%보다 높게 나타남.

- 전문가들은 축산물에 항생제가 잔류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지 않고 가축을 사육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겠지만, 불가피하게 항생제 등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축산물에 항생물질이 검출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안전한 축산물 공급과 친환경 축산의 확산은 전문가들로부터 중요도가 높은 정책으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미래 축산 정책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함. 이러한 의미에서 친환경축산물 인증제도,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산지생태축산농장 지정 등 친환경축산을 위해 도입된 제도들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제도 운영 상 문제점들은 개선하고 보완해 나가야 할 것임.

제 5 장

외국 사례[27]

1. 유기축산물 인증제도

1.1. 국제기준

○ 유기 농산물에 대한 각 국의 기준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유기식품 규정을 기반으로 제정·운영되고 있음.

- 국제식품규격위원회는 1962년 국제농업기구(FAO)와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해 설립된 정부 간 협의기구로서, 소비자 건강 보호 및 식품의 공정한 무역을 보장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음. 국제식품규격위원회 기준(CODEX)은 WTO체제에서 통용되는데 국가별 제정 시에도 지침(guideline)으로 활용되고 있음.

○ 가축 및 축산제품 분야에 대해서는 2001년 제24차 총회에서 채택되어 유기축산에 대한 기준이 운영되고 있음. 기준안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으며,

27 이 부분은 전남대학교 강혜정 교수의 위탁 원고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일부 내용은 연구진이 수정 및 보완함.

양봉 기준은 별도로(종별 특이 요구사항) 다루고 있음.

① 일반원칙	② 가축의 출처 및 산지
③ 전환기	④ 영양관리
⑤ 건강관리	⑥ 가축 사육, 운송 및 도축
⑦ 축사 및 방목장 조건	⑧ 퇴구비 관리
⑨ 기록 유지 및 확인	⑩ 종별 특이 요구사항

1.2. 주요국의 유기축산물 인증제도

1.2.1. 유럽연합

가. 유기축산물 인증

○ 유럽연합은 2007년 6월 제정된 Council Regulation (EC) No. 834/2007를 통해 유기농산물의 생산, 유통, 규제, 표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이 규정은 1991년 도입된 Regulation (EEC) No. 2092/91을 대체함.

○ 유기 생산물에 관한 규정은 (1) 지속가능한 경작 시스템, (2) 다양한 고품질 생산물, (3) 환경 보호, (4) 생물다양성, (5) 동물복지, (6) 소비자 신뢰, (7) 소비자 이익 보호의 목적이 있음.

○ 유기 생산물은 자연 시스템과 사이클을 존중하고 지속가능성을 달성해야 함. 또한 유전자변형 농산물(GMOs)에 의존해서는 안됨. 유기 농장은 외부로부터 자원을 공급받기 보다는 농장 내부의 자원을 활용한 닫힌 순환계를 목표로 함. 다만,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경우 화학합성 물질 사용이 허용되는데 이는 Commission Regulation (EC) 889/208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그림 5-1. EU의 유기농제품 인증마크

자료: http://ec.europa.eu/agriculture/organic/downloads/logo/index_en.htm

1.2.2. 미국

가. 유기 축산물 인증

○ 미국 농무성(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의 유기농제품 인증 프로그램(USDA-NOP,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Notional Organic Program)은 미국의 유기농 식품 및 제품에 대한 인증제도이며, 해당 제품에는 친환경축산물도 포함되어 있음.

- 관련법규는 Organic Foods Production Act(1990)

○ 미국 유기제품 인증은 자원의 순환을 촉진하고, 생태학적 균형을 장려하며, 생물학적 다양성을 보존하는 문화적, 생물학적, 기계적 관행을 통합함으로써 지역별 여건에 대응할 수 있도록 1990년도 유기식품생산법(OFPA) 및 연방규정집 제205부 제7조 규정에 따라 관리되는 시스템임. 미국 유기제품 인증 프로그램 (NOP)을 통해 전국적인 생산, 취급과 라벨링에 관한 표준을 개발, 이행, 감독하고 있음. NOP인증은 강제 인증으로서 미국에서 판매되는

수입 유기농산물은 반드시 NOP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인증서 신청접수 및 발행은 미국농무부(USDA) 지정 인증기관에서 수행함.

- 미국 농무성 AMS(Agricultural Marketing Service, 미 농무성 산하기관)가 관리 및 감독하며, 미국 농무성 지정 인증기관들이 신청부터 인증서 발행까지 모든 해당 인증업무를 수행함.

○ 미농무성은 2000년 유기육류 판매를 승인, 유기식품 인증과 표시[28] 등을 규정하는 법령안을 제정 공포하였고, 이후 OFPA 등 친환경상품 유통관련 기준을 정립하였음.

그림 5-2. 미국의 유기농제품 인증마크

자료: 미국 농무성(http://www.usda.gov).

나. Never Ever 3

○ NE3(Never Ever 3)는 미농무성의 인증 프로그램으로 사육과정에서 3가지를 사용하지 않은 가축으로부터 생산된 축산물에 적용되는 표시제도임. 사용금지 물질은 (1) 항생제, (2) 성장촉진제, (3) 동물 부산물임.

---

28 100% organic, organic, Made with organic, Less than 50% organic

○ NE3는 미농무성 산하 Livestock and Seed Program의 검증 및 사후모니터링을 받기 위하여 마케팅 계획서를 제출하는 가축 및 가공육류제품 회사에 적용됨. 해당 회사들은 허가된 미국농무성의 과정 검증 프로그램(USDA Process Verified Program)을 통해 NE3의 요구조건을 충족시켜야 함. 농무성 검증 프로그램의 요구조건들은 동 프로그램의 ARC 1001 Procedure문서에 정의되어 있음. 미농무성 검증 프로그램은 NE3의 요구조건들이 문서화된 품질 관리 체계를 통해 관리되고 있음을 보증함.

1.2.3. 일본[29]

○ 일본에서는 동물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나, 유기축산인증기준에 동물복지 기준들이 포함되었으며, 일본농업규격(JAS, Japanese Agricultural Standard)에서 유기축산을 다루고 있음. 이외 방목축산기준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일본에서 친환경축산 관련 정책은 '강한 농업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환경과 조화된 축산경영 확립 사업', '낙농 환경부담 경감 지원 사업', 산지활성화 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가축배설물 이용 및 활용 등에 의한 산지 수익력 향상 사업', 사료자급률 향상대책 중 '친환경축산 관련 사업' 등이 있음.

가. 유기축산 인증정책(JAS 인증)

○ 2001년 유기농산물 인증제도가 만들어진 후 2005년 '유기축산물 JAS규격'이 제정되었음. 주로 유기사료를 급여할 것, 야외에서 방목을 하며, 청결하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축사에서 사육될 것 등의 기준이 정해져 있음. 또한 축사에서 나온 퇴비로 생산된 유기사료를 이용하는 자연순환형 축산을

29 허덕(2014)「일본의 동물복지정책과 사례」, 세계농업 제163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통해 환경에도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도 동시에 가지고 있음.

- 일본의 유기축산 인증 기준에는 대부분의 동물복지와 관련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동물복지 인증 대신에 유기축산 인증(JAS)으로 대체하고 있음.

○ 일본 유기축산물 JAS 인증은 JAS 마크에 인증기관명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음.

그림 5-3. 일본 유기축산 JAS 인증마크

자료: 일본농림수산성(www.maff.go.jp).

○ 유기축산 인증기준에 의하면, 유기축산물의 생산공정은 관리자가 반드시 필요하며, 생산공정 관리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농림자재의 생산공정을 관리하거나 또는 파악하는 사람으로서, JAS법 시행규칙 제27조에 의해 ① 유기축산물 생산업자, ② 유기축산물 생산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인격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으로 정한 자를 포함), ③ 유기축산물 판매업자로 정해져 있음.

○ 유기축산물 인증을 받은 생산공정 관리자가 유기축산용 자가 생산 사료의 생산과 배합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유기사료 생산공정 관리자의 인증을 받을 필요는 없음. 다만, 생산한 사료를 유기사료로 출하할 경우에는 유기사료 인증 생산관리공정 관리자가 해당사료에 대해 등급판정을 받아 유기사료 JAS 마크를 붙여야 함.

○ 가축과 가금이 ‘사료 및 신선한 물을 자유로이 섭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조항에 대해서는 ‘사육 마릿수에 맞는 충분한 수의 급수기를 배치하고 있는지?’, ‘물을 마실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고 있는지?’ 또는 ‘사료의 무제한 급여나 빈번한 급여를 실시하는 등 축종과 사양형태에 대응한 방법은 어떤지?’를 고려할 수 있음.

○ 기준규정에서 가축 및 가금에게 상처를 입히는데 대해 허용되는 경우는 ① 가축과 가금의 안전, 건강을 위한 처치, ② 가축 개체식별을 위한 처치, ③ 외과적 거세의 경우에 한함. 이러한 처치를 할 때는 가장 적절한 시기에 가능한 한 고통을 주지 않는 최소한의 방법에 의해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축종과 품종차를 배려하여 해당 처치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이유를 명확히 하여 실시함.

나. 방목축산기준인증제도

○ 방목축산기준인증제도는 2011년 5월에 제정되었으며, 이 제도의 목적은 ① 자원순환형 축산, ② 식량자급률 향상, ③ 국토의 유효이용, ④ 환경보전, ⑤ 녹색경관 제공, ⑥ 동물복지 향상 등임.

○ 일본초지축산종자협회에서는 이러한 방목을 도입한 축산(방목가축)을 보급·추진하기 위해 방목축산 기준을 제정하고, 그 인증제도를 창설하였음. 인증제도의 목적은 소비자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얻고, 방목축산에 의해 생산되는 축산물 생산을 보다 확대하고, 더 나아가 방목축산의 보급 추진으로 이어지는 것임.

○ 방목축산을 실천하는 생산자가 준수해야 할 ‘방목축산기준’을 설정하면서, 이 기준을 충족한 방목을 실천하는 축산경영을 ‘방목축산실천목장’으로 인증함. 대상은 낙농경영과 육용우경영임.

○ 방목축산에 의해 생산되는 생산물에 인증표시를 하기 위한 추가적인 기준으로서 다음의 개별적 기준을 설정하여 각 인증절차를 실시함. 즉, 방목축산 실천 목장 중 낙농경영에서 생산되는 것은 원유임. 이 원유를 원재료로 만드는 우유를 '방목낙농우유'로 표시하여 판매하려는 경우 '방목낙농우유 생산기준'을 적용함. 각각을 표시하려면 각각의 기준에 따라 생산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등 인증절차를 거쳐야 함.

○ 또한, 방목축산 실천목장의 낙농경영에서 방목기간 중에 생산된 원유를 원재료로 만든 우유에 대해서는 '방목우유 생산기준'을, 유제품에 대해서는 '방목유제품 생산기준'을 적용하고, 각각의 기준에 따라 생산되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인증절차를 거쳐야 함.

○ 방목축산 실천목장 중 육용우 번식경영에서 직접 생산되는 것은 송아지임. 이 송아지를 '방목송아지'로 표시하고 판매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방목송아지 생산기준'을 적용하면서, 이 기준에 따라 생산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등 인증절차를 거쳐야 함. 또한 이 방목 송아지(비육 밑소)는 비육경영에서 비육되므로, 생체 출하할 때까지의 비육단계는 '방목비육우 생산기준'을 적용함. 최종적으로 비육된 방목 비육우는 도축, 보관, 유통되면서 쇠고기로 소비자에게 판매되기까지의 과정은 '방목 쇠고기 생산기준'을 적용하여 모든 사업자의 확인이 필요함.

○ 방목축산 기준은 ① 방목축산 기준, ② 방목낙농 우유생산 기준, ③ 방목낙농 유제품 생산기준, ④ 방목우유 생산기준, ⑤ 방목 유제품 생산기준, ⑥ 방목 송아지 생산기준, ⑦ 방목비육우 생산기준, ⑧ 방목쇠고기 생산기준 등 8가지 기준으로 구성됨.[30]

30 각 기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허덕(2014. 3) p.15를 참조.

1.2.4. 유기축산물의 항생제 관련 기준

○ 유기 농산물 인증에 대한 규정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지침을 기반으로 하고 개별 국가의 사정에 따라 변형하여 사용하고 있음. 특히, 유기 축산물의 항생제 사용에 관한 부분은 국가별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음.

○ 유기 가축에 대한 항생제의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음. 가축에 질병이 발생한 경우 대안치료, 천연물질 등을 이용한 치료가 우선되어야 하고, 이것으로 효과가 없을 경우 수의사의 관리 하에 항생제 사용이 허용됨. 단, 항생제 사용 후 유기인증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는 국가별 차이가 있음.

가. 휴약기간의 연장

○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지침은 항생제 사용 후 법적 휴약기간의 2배 또는 최소한 48시간의 휴약기간을 준수해야 함.

○ EU의 유기 축산물 인증 규정은 항생제 사용 후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기준을 준수하도록 함. 그러나 항생제 처방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CODEX 기준보다 엄격한 규정을 적용함.

- 사육기간이 1년 이상인 가축이 1년 동안 3회 초과, 사육기간이 1년 미만인 가축이 1회 초과 항생제 처방을 받은 경우 유기 가축으로써의 자격을 상실함. 따라서 이 가축은 일반 축산물로 판매되거나, 전환기간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유기축산물 인증 규정은 항생제 사용 후 휴약기간의 2배를 준수하도록 되어 있음.

나. 유기축산물로 판매 금지

○ 미국의 유기 축산물 인증 기준은 유기 가축이 항생제 처방을 받은 경우 유기

축산물로 판매되지 못하도록 함. 따라서 이 경우 일반 축산물로 판매됨.

○ 항생제 사용을 금지한 미국의 NE3의 경우에도 유기 축산물과 같은 규정을 적용하여 항생제 사용 축산물이 NE3로 판매되는 것을 금지함.

○ 미국과 같은 항생제 관련 규정이 있는 나라에는 호주가 있음. 호주의 규정은 항생제 처방 가축의 새끼에게도 관리기간을 적용하고 있음.

1.3. 주요국의 동물복지 인증제도

○ 반려동물의 역사가 오래된 해외에서의 동물복지제도는 국내보다 긴 역사를 가지고 있음. 동물복지는 주로 동물사육기준과 동물학대금지, 동물의 자유 등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이 기준은 유기축산 기준에도 대부분 반영되어 있음.

○ 일본의 산업동물복지정책은 동물복지인증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유기축산 인증제도에 대부분 흡수되어 있음. 이외에 동물복지와 밀접하게 관련된 제도로 소(육우 및 젖소)에 한정하는 방목축산기준인증제를 운영하고 있음.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EU 주요국과 미국의 동물복지 인증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임.

1.3.1. EU의 동물복지 인증제도[31]

○ EU의 동물복지는 영국에서부터 진행된 현대적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이 유럽전역으로 확산되면서 지금은 이미 일반화된 개념임. 전 세계적으로 동물

31 이종인 외(2014)의 제3장 내용을 발췌·요약 정리하였음.

복지 관련 입법과 정책도입은 EU에서 가장 먼저 진행됨.

○ EU의 동물복지축산 관련 법률은 1978년에 채택된 “농업목적으로 사육된 동물의 보호를 위한 유럽협정의 체결에 관한 이사회 결정”에서부터 시작됨. 구체적인 동물복지 기준 제시는 1999년 암스테르담조약(Treaty of Amsterdam)에서 EU집행위원회가 동물복지 관련 정책을 결정한다는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시작됨.

○ EU의 축산업과 관련된 동물복지 규칙은 1998년에 제정된 “농업 목적으로 사용되는 동물보호”지침을 근거로 함.

- 1999년에 산란계의 보호를 위한 최소 기준을 마련함. 특히 2012년부터는 battery cage 사용을 전면 금지하였으며 위반 시 달걀 판매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
- 1998년에는 송아지 보호를 위한 최소기준 마련. 특히 2007년부터는 모든 축사에서 폐쇄된 개별 축사 사용을 금지함.
- 2001년 돼지 보호를 위한 최소기준을 마련함. 2013년부터는 모든 사육장에서 모돈에 대한 스톨사육을 전면 금지함.

○ 2004년에는 운송중인 동물의 보호에 관한 규칙을 채택함. 2009년에는 도축과정에서의 동물보호에 관한 규칙을 채택함. EU의 경우 동물복지에 앞장서 나가는 나라들은 영국, 독일, 네덜란드로 들 수 있음.

○ 하지만 EU의 전체 회원국들이 모두 동참하고 있는 것은 아님. 그 이유는 생산방식 변경에 따른 투자비용 증가, 사육규모 감소에 따른 농가 소득 저하 등으로 알려져 있음.

○ EU 각국의 동물복지법과 구분하여 동물복지 인증제도의 시행은 정부가 아닌 민간단체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유럽 등 축산 선진국의 동물복지축산물 시장은 유기축산물보다 발전하지 못한 실정임.

○ 동물복지축산물은 농가직판 친환경농산물 판매점, 슈퍼마켓 등 대형판매점의 친환경식품코너, 동물복지 생산자 단체나 조직을 통한 온라인 등을 통해 판매됨.
- 소비홍보도 동물복지 생산자 단체나 조직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 동물복지축산물의 가격은 일반 축산물에 비해 10-20% 정도 비싸게 거래되고 있으나 품목에 따라 50%이상 비싼 경우도 있음.

○ EU 회원국 중 네덜란드의 농장동물복지 관련 인증제도로는 네덜란드동물보호협회 Dierenbescherming 에서 시행하는 Beter Leven 인증제도가 있음.
- 친동물 육류 마크인 Beter Leven 인증은 등급을 정하여 동물복지 환경(방사형 사육, 유기농 환경)을 구분하고 있음.
- 동물복지 축산물 또한 대형 슈퍼마켓을 통해 판매되고 있음.

가. 영국

○ 영국은 동물복지에 관한 조항의 제정 및 그와 연관된 목적을 위한 법률로 1911년에 동물보호법을 제정하였음. 1996년에는 동불보호 및 복지 관련 입법을 포함한 동물복지법을 제정하였고, 1999년부터는 모돈의 스톨 사육을 전면 금지하였음. 2005년에는 EU의 권고사항에 따라 운송 중 동물 복지(Welfare of Animals During Transport)지침을 제정하였음. 2006년부터는 실험동물 학대 방지를 추가한 새로운 동물복지법을 시행하고 있음.

○ 2007년에는 동물복지법을 기초로 2000년에 제정한 농장동물복지규약 (The Welfare of Farmed Animal Regulation)을 개정하였으며, 2010년에 2차 개정을 진행하고 있음. 상기 규정은 산란계, 육계, 돼지, 소 등 모든 농장 가축의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하여 EU의 지침을 구현하기 위한 농장동물 종합복지의 기본 틀을 마련하였음.

○ 영국은 환경식품농무부(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 Rural Affairs: DEFRA)가 FAWC의 자문을 받아 발표한 농장동물복지 정책을 실시하기 위한 권고규약을 제정하여 농장동물복지를 시행하고 있음.

○ 영국의 동물복지 등 각종 인증제도의 심사와 운영은 정부가 직접 실시하지 않고 정부의 위임을 받은 민간단체나 업체가 실시함.

○ 영국은 RSPCA(Royal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Animals)가 마련한 복지기준을 근거로 가축의 사육·취급·운송·도축·정책을 홍보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음. 1994년 이러한 기준을 시행하기 위해 자회사인 프리덤 푸드 주식회사(Freedom Food Ltd)를 설립함.

- RSPCA에서 동물의 5가지 자유를 중심으로 한 동물복지 기준에 알맞게 생산되는 축산물을 인증하는 “Freedom Food” 동물복지 인증제도를 실시함.
- (주)프리덤푸드의 해당 검사에 합격하면 생산자, 가공자, 유통업자 등은 본 제도에 가입하여 프리덤푸드 상표를 이용할 수 있음.
- 품질인증 후에도 검사관이 계속하여 점검을 진행하며, 유통 중의 매 단계를 추적 관리하고 있음.
- 동물복지농장은 맴버쉽 제도로 운영되며 회원은 회비를 지불함. 축산물에 따라 119~488파운드의 회비를 지불함.
- 영국 맥도날드, 버거킹과 같은 식품유통업체도 자체 규정을 수립하고 있음.

그림 5-4. 영국의 동물복지 인증마크

나. 독일

○ 동물복지 축산 인증제도는 민간기업 및 단체가 주도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 BMEL(Bundesmisterium für Ernährung und Landwirtschaft; 연방식품농업부)은 독립적인 동물복지 라벨의 도입을 지원하고 있음.

○ 공동(축산농가, 육가공업체, 소매업체)으로 선제적인 동물복지 기준 마련함.

- 선제적 동물복지는 소매업체들이 고기와 소시지 등을 판매할 때 1㎏당 4센트를 적립하여, 참여 농가들에게 보너스로 줌으로써 동물복지를 활성화하자는 것임.

○ 독일 농축식품업계는 2015년부터 돼지고기와 가금류를 시작으로 선제적 동물복지를 시행할 경우 연간 최대 6,500만 유로 정도가 동물복지를 위해 투입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독일의 동물복지 인증제도의 하나로 독일동물복지협회에서 시행하는 동물복지 라벨(Tierschutzlabel)을 들 수 있음.

- 동물복지라벨은 동물의 요구 및 주거 환경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게 설계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그림 5-5. 독일의 동물복지라벨 인증 마크

○ 동물복지라벨은 Entry(별 1개)와 Premium(별 2개) 단계로 구분할 수 있음. 두 단계는 사육방법, 운송, 도축 등의 요구사항에 근거함.

- Entry level : 법정 최저 기준 이상의 공간과 사육시설 등
- Premium : 보다 넓은 공간 및 적절한 수준의 사육시설 등

다. 네덜란드

○ 네덜란드의 농장동물복지 관련 인증제도로는 Dierenbescherming(네덜란드 동물보호협회, 1864년에 설립)에서 시행하는 Beter Leven 인증제도가 있음.

- 친동물 육류 마크인 Beter Leven 인증은 등급을 정하여 동물복지 환경(방사형 사육, 유기농 환경)을 구분하고 있으며, 별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동물복지 환경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함.

그림 5-6. Beter Leven의 단계와 친동물 육류 마크(Beter Leven)

1.3.2. 미국의 동물복지 인증제도

○ 1906년 연방 육류 검사법(Federal Meat Inspection Act)과 1957년 가금류 제품 검사법(Poultry Products Inspection Act)에 따라, 육류 및 가금류 제품이 상거래되기 전에 제품 인증은 USDA의 식품안전 및 검사서비스(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FSIS)에 이 권한을 위임한 농업의 미국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함.

- FSIS는 특정 물질 제외 제품뿐만 아니라 영양 또는 건강 관련 인증제를 검토
- FSIS는 '유기', '자유방목', '케이지 프리', 또는 '무항생제 사육' 등과 같은 축산물 관련 인증제를 검토

○ 미국은 1966년에 동물복지법(Animal Welfare Act)을 제정하였으나 농장동물에 대한 복지와 관련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반려동물과 실험동물에 대한 내용 중심이었음. 미국의 동물보호에 관한 연방법은 2010년 기준 93개이며, 농장동물의 복지향상과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연방법은 1873년에 제정된 “28시간법”과 1958년에 제정된 “인도적 도살법” 등임.

- 미국의 경우 농장동물보다 실험동물과 애완동물, 전시동물의 복지에 관한 규정들이 더 많음. 농장동물복지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내용은 주로 일부 주 단위에서 법률로 실행하고 있으며, 중앙정부 차원의 입법 추진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미국의 동물복지 축산 인증제는 주요하게 식품유통업체가 자체 농장동물복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음.

- 맥도날드, 버거킹 등 식품유통업체도 산란계와 소 등에 대한 자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기준에 부합되는 축산물만 취급함.

그림 5-7. 미국의 Free Farmed Program 인증마크

○ Free Farmed Program은 미국의 농장동물복지 인증제도의 하나임.

- Free Farmed Program은 AHA(American Human Association)가 2000년부터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동물복지 인증제도임.
- 영국의 “Freedom Food”를 벤치마킹한 인증제도로, 영국의 동물복지 5대 기본 원칙을 따르고 있으며, 생산자 및 가공업자가 자발적으로 비용을 지불하는 형태의 제도임.

2. 외국의 축산 직불제 운영 실태[32]

2.1. 유럽연합

가. 영국

○ 영국의 친환경축산직불제는 농경지의 양분수지 관리차원에서 최대양분투입량 상한을 설정하고 기본적인 준수요건으로 관리함.

○ 낙농분야의 유기축산 육성을 위해 3~5년간의 전환기간에 따라 직불금을 차등 지급하며, 유기축산이 정착된 경우에는 유지관리에 대한 지원금만을 지급함.
- 영국의 낙농 직불금은 3~5년간의 전환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초지를 기준으로 ha당 215~358유로를 지급하고, 유기낙농이 정착된 경우에는 유지관리에 대한 지원금으로 두당 48유로를 지급함.

○ 친환경 축산업 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가축생산 억제와 저사육 밀도 유지 등을 위해 조방화를 장려하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육우와 젖소 등을 대상으로 두 가지 유형 중 지역특성에 따라 선택하도록 하고 있음.
- 단순형의 경우 ha당 1.4LU(Livestock Unit, 가축단위)[33] 이하인 경우 두당 100유로를 지급하며, 표준형의 경우 ha당 1.4LU 이하인 경우 두당 80유로를, 1.4～1.8LU는 두당 40유로를 지급함.
- 직불제 준수요건으로 표준형의 경우 1년에 6번 비정기적으로 사육 마릿수를 점검하고, 단순형은 1년 동안 기준사육밀도를 유지해야 함. 초지 확보조건은 목초지를 50% 이상 확보해야 함.

---

32 허덕 외(2005)의 제7장 및 한성일 외(2013)의 제4장의 내용을 발췌·요약 정리함.

33 가축단위인 LU(Livestock Unit)는 육우성우·경산우 1.0, 미경산우 0.7, 암퇘지(50kg 이상) 0.5, 육계(100두) 0.7 단위 등으로 산정함.

○ 중산간지역 직불제(Hill Farm Allowance)는 조건불리지역(Less Favored Area, LFA)의 활성화와 농촌경관 유지를 위해 이 지역의 암소와 양 등의 사육농가에 지원되는 직불금 제도임. 지급대상은 조건불리지역에서 최소 10ha 이상의 초지(우유생산용 초지 제외)와 0.15LU/ha 이상의 가축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또한 우수양축방식(Good Farming Practice)[34]을 준수하고 직불금을 받은 후 최소 5년 이상 해당 축종을 사육해야 함.

- 중산간지역 직불금 지원단가는 지역여건의 불리도와 초지면적에 따라 25~68유로로 차등지급하며, 초지면적이 350ha 초과분은 50%, 700ha 초과분은 지급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음.
- 중산간지역 직불제 수혜대상 농가 중 유기농가로 주정부에 등록되어 있으나 보조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 기본 지급액의 10%를 추가로 지급하며, 사육밀도가 1.2LU/ha 이하일 경우 10%, 1.0LU/ha 이하일 경우는 20%를 추가로 지급함.

나. 스위스

○ 스위스는 축산직불제 대상농가의 경우 농경지의 양분수지 관리차원에서 단위면적당 질소와 인산의 살포량을 규정하여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고 가축분뇨처리를 포함하는 양분관리대장을 의무적으로 기록해야 함. 또한 친환경축산직불제 대상농가는 환경친화적 가축사양 방식 및 동물보호법 등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되고 있음. 친환경축산직불제가 상호준수 프로그램이므로 준수요건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정책의 신뢰성을 제고시키고 있음.

○ 스위스는 조건불리지역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1959년부터 초지이용의 계절성 및 동물복지, 동하절기 방목가축 제한 문제 등으로 인해 축산부문에서 일

34 우수양축방식(Good Farming Practice)은 목초지가 지나치게 방목되지 않도록 하며, 초지주변에 울타리(나무 또는 돌담 울타리)를 해야 하고, 토양과 물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하는 양축경영을 지칭함.

반직불제도(General Direct Payment)를 실시해오고 있음. 모든 직불제 수혜 대상 농가는 주별로 정한 친환경조건 및 동물보호법 등을 준수해야 함.

○ 동하절기 방목을 하지 못하는 가축을 대상으로 동절기의 경우 소·말·양 등 ha당 방목가축단위(RGVE)[35] 당 900 CHF(스위스 프랑) 지급, 하절기의 경우는 우유를 생산하는 소·양·염소 LU당 300 CHF 지급, 그 외 방목가축은 NST[36] 당 260 CHF를 지급함.

- 조건불리지역에서 소 사육을 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최소한 1ha 이상의 초지 또는 1 RGVE 이상의 가축을 보유하는 경우 농가당 최대 20 RGVE까지 지급 가능토록 하고 있음.

○ 유기축산 육성을 위한 낙농부문 직불제 추진과 관련 초지 ha당 750유로를 지급함. 또한 생태적 직불금(Ecological Payment)으로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축산경영 및 축사시설개선 등을 지원키 위해 LU당 소 90 CHF, 돼지 155 CHF, 닭 135 CHF를 지급함. 한편 방목사육(매월 26일 이상 방목사육, 동절기에는 13일 이상)의 경우 지급단가는 LU당 소 80 CHF, 돼지 155 CHF, 닭 180 CHF를 지급함.

다. 독일

○ 독일 친환경축산직불제의 기본적인 준수요건은 농경지의 양분관리 차원에서 가축분뇨살포의 최대한도를 정하여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음. 유기축산을 육성하기 위해 직불금은 이행 기간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고, 환경친화적 사료포 관리 및 유기초지를 관리·유지하는 경우 직불금을 지급함.

---

35 ha당 방목가축단위(Roughage Consuming Livestock Units, RGVE)는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되며, 산간지역 일수록 더 많은 초지가 요구됨.

36 NST(per standard pasture)란 1 가축단위가 100일간 방목가능한 면적의 초지를 지칭함.

○ 유기축산 농가의 이행 기간 동안의 소득 감소 보전을 위한 지원책으로 목초지 ha당 최초 210유로, 그 후 5년간 160유로를 지원하고 있음. 수혜대상농가는 95% 이상의 유기사료(EU는 70% 적용)를 사용해야 하며, 항생제·성장촉진제 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고, 동물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함.

○ 환경보전을 위한 화학비료와 농약을 투입하지 않는 초지경영과 ha당 1.4 가축단위 이하의 조방적 초지경영이 직불제 대상농가의 기본적 준수요건이며 보조금은 ha당 40～1,400DM임.

○ 조방적 농지경영 프로그램은 화학비료와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작물재배를 기초로 ha당 2.0 가축단위 이하의 농가가 정책수혜대상이 될 수 있으며, 보조금 지급액은 ha당 200～500DM임.

○ 유기농업 프로그램은 무비료와 무농약의 엄격한 재배기준과 ha당 1.0 가축단위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농지에 살포할 수 있음. 경종과 축산을 연계하여 유기농축산업으로 전환한 농가에 대해서는 농가당 10,000DM의 전환장려금을 지불하고, 유기농법 교육 및 훈련에 대해서 농가당 300DM이 추가로 지급되고 있음.

라. 프랑스

○ 프랑스 친환경축산직불제의 기본적인 준수요건은 양분수지 관리차원에서 단위면적당 가축분뇨 살포가 엄격히 규제되며, 친환경축산 시스템 구축을 위해 다양한 메뉴방식의 직불제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음. 농가별 단위경지면적당 질소성분을 규제수준 이하로 준수하거나, 유기축산으로 전환하는 경우 차등화된 직불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특히 경종과 축산의 복합농가가 전체를 유기농축산 농가로 전환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상당한 인센티브를 지급함으로써 경종-축산의 연계 강화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프랑스는 1999년에 제정된 농업기본법(Framework Agriculture Act)과 농촌개발계획(2000~06)에 따라 농촌경관 보전과 친환경 축산시스템 구축을 위해 다양한 직불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음.

○ 친환경 축산시스템 구축을 위해 농경지를 조방형 초지로 전환하는 경우 5년간 ha당 연간 374.87유로를 지급하고, 임시초지로 전환하는 경우는 ha당 259.16유로를 지급함. 이 경우 양분수지관리 차원에서 연간 ha당 질소투입량은 120kg을 초과할 수 없음. 이밖에도 악화된 생태환경복원을 위해 잡초지를 초지로 조성하여 활용하는 경우 5년간 매년 ha당 연간 76.22유로를 지급하며, 여기에 울타리를 조성하는 경우 미터 당 0.3유로를 추가적으로 지급함.

○ 친환경 축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경관보존과 조류와 식물군에 가치 있는 개방공간을 제공키 위해 1993년에 조방적 가축사육 직불금제도가 도입되어 ha당 30.49유로를 지급하였고, 1995년 이후부터 ha당 45.73 유로로 책정되어 지급되고 있음.

○ 환경친화적인 영농방식에 대한 직불금제도로 지역여건에 따라 5년간 직불금을 지급함. 풀베기나 방목에 의한 조방적 초지 관리의 경우 ha당 연간 91.47 유로, 강제적 방목에 의한 조방적 초지 관리의 경우에는 ha당 연간 106.71 유로를 지급함. 두 경우 모두 유기질 비료 사용을 완전 중단할 때는 ha당 연간 89.18 유로가 추가되고, 무기질 비료 사용을 완전 중단할 때는 103.67 유로가 추가됨.

○ 농가의 유기질소 발생량(전체 동물 배설물)을 살포면적 기준 ha당 140단위 이하로 제한하는 경우(가축 밀도를 살포 면적 ha당 1.75두로 줄이는 것과 같음) 살포면적 ha당 연간 137.20 유로를 지급하고, 살포면적 ha당 유기질소 140단위 이상을 생산하는 농가의 경우 살포면적 ha당 연간 274.41 유로를 지급함.

○ 유기축산으로의 전환과 관련 연차별 차등화된 직불금 제도는 초지를 기준으로 ha당 1~2년차에는 160유로, 3~4년차에는 80유로, 5년차에는 53유로를 지급함. 경종과 축산의 복합농가가 전체를 유기농축산 농가로 전환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20%의 직불금이 지급됨.

마. 덴마크

○ 덴마크는 1991년부터 추진되어온 '지속가능한 농업개발을 위한 행동계획'에 의거하여 친환경 축산육성책을 추진하여 왔으며, 유기축산 등 친환경 축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노력은 2001년부터 추진되어온 국가적인 '유기생산 행동계획 II'에 따라 직불제도 등 적극적인 육성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음.

○ 덴마크 친환경축산직불제는 양분수지 관리차원에서 농경지의 최대 살포량 한도와 살포시기 등을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함은 물론 영농장부도 작성해야 함.

○ 친환경농축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프로그램인 '녹색회계(Green Account)' 운용 차원에서 다양한 친환경직불제를 추진하고 있음. 환경친화적인 초지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 ha당 98~258유로를 지급함.

○ 특히 유기축산 육성을 위해 낙농부분의 직불금은 전환기간에는 두당 141유로를 지급하고, 유기낙농으로 정착되면 유지 지불금으로 두당 80유로가 지급됨.

2.2. 미국

○ 미국은 친환경 축산업 육성을 위해 직접적인 보조금 지원방식보다는 가축분뇨 처리 시설비와 기술자문 등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환경질개선장려프로그램(Environmental Quality Incentive Program, EQIP)을 운용하고 있음. EQIP

는 가축분뇨처리 시설에 대한 상당한 자금을 지원해주고 있어 실질적인 효과는 직불제와 유사함. 많은 양축농가가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있으며, 텍사스주의 경우 비육농가를 대상으로 점수제를 적용하여 투명하고 합리적인 정책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음.

○ 2002년 신농업법에서 환경 보전 및 개선 방법을 실행하려는 양축농가를 대상으로 2002~07년까지 개별 경영체당 최대 450,000달러를 지원함. 지급비율은 실제 소요비용(actual cost)의 75%까지 지원하되, 제한된 자원을 보유한 농가(저소득 농가), 신규농업인 또는 10년 미만 농업종사자에게는 90%까지 지원이 가능함.

○ 직불금 대상농가의 기본요건으로는 지난 3년간 농가의 평균수입이 25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지원농가는 EQIP 실행계획서와 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자연자원보전청(Natural Resources Conservation Services)에 제출해야 함. 특히 양축농가의 경우 계약서에 가축분뇨저장시설을 포함할 경우에는 분뇨처리방법과 분뇨살포지역 등이 포함된 종합적 양분관리계획(Comprehensive Nutriment Management Plan)을 제출해야 함.

○ 양축농가가 EQIP 신청시에 정책수혜 대상자의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기준으로 텍사스주의 경우 점수제를 적용하고 있음.

- 육용우의 주요 산지인 텍사스주에서는 대기오염이 주내의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음. 밀집축사(Feedlot)에서 발생한 먼지나 황사를 줄이기 위해 주정부와 업계는 학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지역단위(카운티 단위) 우선순위 결정함. EQIP에 참가하고자 하는 상업목적의 축우 비육경영의 점수 적용방식은 다양한 기준을 적용함.
  - • 최우선 지역 내에 위치 3500점
  - • 중간 정도 우선지역 내에 위치 2000점
  - • 낮은 정도 우선지역 내에 위치 500점

- 기존 피드롯의 계속 또는 확대 500점
- 완전히 신규 피드롯 개설 0점

○ AFO(토양검사에 의해 질소함유량이 50ppm을 넘은 비축산경영체) 및 CAFO(토양검사에 의해 질소함유량이 50ppm을 넘은 대규모 축산경영체)에 있어 환경문제의 개선은 텍사스 주내 양돈에 있어서 주요한 과제임. 이 때문에 기존의 양돈 AFO 및 CAFO는 EQIP 예산상 최우선이 되며, 모든 신청은 점수방식으로 평가됨.

- 분뇨저류시설 50점
- 분뇨처리용 라군 50점
- 방목지 또는 채초지에 식재 50점
- 분뇨의 수송 25점
- 펌프 5점
- 관개시설 15점
- 영양소 관리 15점
- 분뇨의 이용 25점

○ 미국의 경우 유기축산 육성을 위한 직불금제도는 도입되고 있지 않으나 기술적인 지원과 가축분뇨처리 시설비의 75%정도까지의 지원프로그램이 추진되고 있음.

2.3. 일본

○ 일본의 친환경축산직불제는 환경친화적 낙농경영을 위해 경산우 두당 사료작물 재배지의 면적기준에 따라 등급화하여 지원금 단가를 차등화하고 있음.

○ 경산우 1두당 사료작물 재배면적이 기준면적(북해도 40a/두, 도부현 10a/두) 이상의 생산자에 대해 실천사항을 이행하는 경우 사료작물 재배면적 ha당 15,000엔을 지원함[37].

○ 가축배설물의 이용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산지활성화대책사업 중 '산지 수익력향상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축배설물의 활용을 위해 시설정비에 지원함.

- 2004년에 가축배설물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일정규모 이상의 농가에 대해서는 가축배설물의 적정한 관리를 정한 동 법의 '관리기준' 준수를 의무화함.
- 축산경영환경조화추진자금을 이용하여 시설을 정비할 때 이자를 지원(500만엔 초과하는 융자에 한해 5년간 이자율 2% 융자)
- 정책적 금융지원을 이용하여 공동이용으로 시설정비를 할 경우 융자 잔여액의 이자율 차이를 보조

○ 일본의 사료자급률 향상 대책에는 경종과 축산을 연계하여 사료용 쌀의 조사료 이용, 논 방목, 자원 순환 등을 시행하는 농업인에게 추진 면적에 따라 13,000엔/10a 정책을 보조함.

- 기타 사료대책으로는 이모작 추진 시 13,000엔/10a 보조, 사료작물 재배 시 35,000엔/10a 등임.

37 구체적인 실천사항 목록 및 각 점수는 한성일 외(2013)의 64~65 페이지 참조.

3. 외국사례의 시사점

3.1. 친환경축산물 인증제도

○ 우리나라와 같이 축산업 환경이 동물복지를 실천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일괄적인 기준을 적용한 동물복지 인증마크를 부착하기 보다는 동물복지 인증 단계별 등급제 실시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네덜란드와 독일의 경우 동물복지의 수준에 따라 인증마크의 등급을 달리하여 판매하고 있음. 또한 판매되는 제품도 계란의 경우 동물복지 계란, Free range 계란, 유기 계란 등 동물복지와 유사한 여러 가지 계란이 판매되고 있음.

○ 동물복지축산인증제도의 보급을 위해서는 정부의 제도적 노력도 필요하지만 민간기업체 및 단체의 참여가 중요함. 영국의 경우 RSPCA의 Freedom Food 자회사를 건립하여 회원제로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회원제의 운영은 참여회원의 인식을 제고시킴과 동시에 시장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어 시장에서 높은 신뢰와 가격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고 판단됨.

- 식품유통업체가 동물복지 인증제도에 동참하면 동물복지 축산물 유통과정에서 대량으로 가공하고 소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안정적인 동물복지 축산물 생산·유통·소비망이 형성될 수 있음.
- 영국의 맥도날드의 경우 2013년부터 Freedom Food의 기준에 부합되는 돼지고기만 취급한다고 선언하였는데 이는 대형식품유통업체가 동물복지 인증제도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례임.

3.2. 친환경축산 직불제도

○ 주요 선진국의 친환경축산 직불제도는 국토 및 경관 관리, 수질악화 및 악취 등 환경문제 해결, 동물복지 향상 등 다양한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친환경축산의 관건은 자급사료의 공급원이 매우 중요하므로, 우리나라도 프랑스 등과 같이 환경친화적인 사료포 및 유기초지를 유지·관리하는 경우에도 친환경축산 직불금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도 경종-축산이 연계된 친환경축산 농가에게는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친환경축산 직불제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미국의 환경질개선장려프로그램 등과 같은 점수제 도입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일본도 친환경축산직불제는 환경친화적 낙농경영을 위해 경산우 두당 사료작물 재배지의 면적기준에 따라 등급화하여 지원금 단가를 차등화하고 있음. 점수제는 기준이 설정되면 정책집행은 물론 정책대상자들이 스스로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정책의 투명성 및 신뢰성은 물론 정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중장기적으로 도입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제 6 장

축산 인증제 및 직불제의 개선방안

1.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개선 방안

1.1. 현황

○ 무항생제 축산물에는 항생제를 사용할 수 없지만, 질병이 발생한 경우 항생제를 포함한 동물용의약품을 투여하여 질병치료가 이루어져야 함.

○ 무항생제축산물에 동물용의약품이 사용될 경우, 약품의 사용은 수의사의 관리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1) 수의사처방전(처방 의약품) 또는 처방매뉴얼(비처방 의약품)을 비치해야 하고, (2) 해당 약품 휴약기간의 2배를 준수하여야 하며, (3) 동물용의약품 잔류 허용기준의 1/10 이하이어야 함.

○ 일반적으로 휴약기간의 2배를 준수하면 잔류허용기준의 1/10은 만족되기 때문에 무항생제축산물과 일반 축산물의 실질적인 차이는 휴약기간의 차이와 비처방 의약품 사용시 처방매뉴얼을 비치해야 한다는 것에 불과함.

표 6-1. 무항생제축산과 일반축산의 동물용 의약품 사용 기준 비교

구분	무항생제축산		일반축산	
	기준	관련 규정	기준	관련 규정
수의사 처방 대상약품	수의사처방전 구비	친환경농업법 시행규칙 제40조 등	수의사처방전 구비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반약품	수의사처방전 또는 처방매뉴얼(동물용의약품 사용을 최소화하도록 작성) 구비		제약없음	-
휴약기간	휴약기간의 2배 준수 (최초 출하시 잔류물 질검사 의뢰 및 성적서 비치)		휴약기간 준수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자료: 감사원(2015. 2)「감사결과보고서: 축산물안전관리 실태」37쪽 내용을 수정함.

○ 2007년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가 실시된 이후
- 항생제의 사료첨가가 금지되고(2011.7)
-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수의사 처방제가 실시됨(2013.8)

○ 2007년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도가 도입될 당시 항생제 사용에 대한 강력한 규제로 인식되었음. 그러나 제도 개선에 따라 일반 축산물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면서 무항생제축산물과 일반축산물의 차이가 축소된 결과임.

1.2. 문제점

1.2.1. 무항생제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기대

○ 무항생제축산물에 항생제가 사용되고 있다는 소비자의 불만이 표출됨. 무항생제축산물 인증기준을 준수하더라도 가축에 항생제 사용이 허용되는 상황에서 무항생제축산물의 언어적 의미와 인증기준 간의 괴리에서 문제가 발생함.

○ 국민 의식 조사 결과, ‘무항생제축산물’에 대한 직관적인 의미에 대해 응답자의 65.3%는 사육하는 가축에게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응답하였고 33.7%는 축산물에서 항생제가 검출되지 않는 것이라고 응답함.

- 많은 국민들은 무항생제축산물을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고 가축을 사육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1.2.2. 언론, 국회, 감사원의 지적

○ 무항생제축산물과 일반 축산물의 차이가 축소되면서 무항생제축산물에 대한 비판의 여론이 조성되어 왔음. 이와 관련된 내용이 언론에 소개되고 소비자의 인식이 악화되었음. 또한 국회와 감사원의 지적을 받음.

○ MBC의 무항생제축산물에 대한 비판 보도

- “정부 기준에 따르면 무항생제와 일반 축산물의 차이는 동물을 도축하기 전 며칠 동안 항생제 사용을 금지하는 이른바 ’휴약기간’을 늘린 것뿐”

○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무항생제 인증 우유는 항생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젖소에서 나온 우유라고 생각을 한다. 하지만 실제 무항생제 인증우유는 일반 젖소보다 항생제 사용기간을 조금 더 줄이는 것뿐이지 항생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국회 양승조의원)

○ 감사원(2015. 2)에서는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기준에 제시된 동물용 의약품 사용 기준, 도축장의 잔류물질 검사 양성 판정 현황, 일부지역의 동물용의약품 구입 현황 등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표시에 대한 부적정성에 대해 지적한 바 있음.

○ 감사원은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농가도 항생제 등 동물용의약품을 일반 축산물 생산 농가와 동일하게 사용하는데 제약이 없다고 판단함. 또한 식육의 잔

류물질 모니터링 검사(출하전 생체잔류검사, 도축 후 식육잔류검사[38]) 결과, 일반축산물보다는 유해물질 검출 비율이 낮고 미미한 수준이지만 무항생제 축산물에서도 유해 잔류물질이 검출되고 있음.

- 이러한 이유로 감사원은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표시를 실제와 부합되도록 적정하게 변경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할 것을 관계 장관에게 요청함.

표 6-2. 도축장의 잔류물질 검사 양성 판정 현황(2013년)

축종		간이정성검사대상 두수(두)	양성판정 두수(두)	양성판정 비율(%)
소	일반축산물	49,127	16	0.03
	무항생제축산물	14,097	2	0.01
돼지	일반축산물	97,410	187	0.19
	무항생제축산물	24,818	17	0.07
계	일반축산물	146,537	203	0.14
	무항생제축산물	38,915	19	0.05

주: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상의 2013년 도축장 모니터링 간이정성검사 의뢰 농가 중 2013년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농가를 추출한 결과임.
자료: 감사원(2015. 2)「감사결과보고서: 축산물안전관리 실태」38쪽.

○ 무항생제축산물 명칭과 관련하여 소비자 혼동을 막기 위해서는 현재의 인증 기준에 맞도록 무항생제축산물 명칭을 변경하거나 무항생제 명칭에 맞도록 동물용의약품 사용과 관련된 인증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38 식육잔류물질 검사 항목(2014년 기준)은 항생물질 48종, 합성항균제 59종, 호르몬제 2종, 기타약물 6종, 농약 28종 임(황윤재 등 2014).

1.3. 개선방안

○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개선의 기본 방향은 생산자 조사, 국민인식 조사, 국제 기준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소비자의 인식과의 조화, 축산농가의 가축사육 여건 고려, 국제 기준과의 조화로 설정하였음.

그림 6-1.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개선(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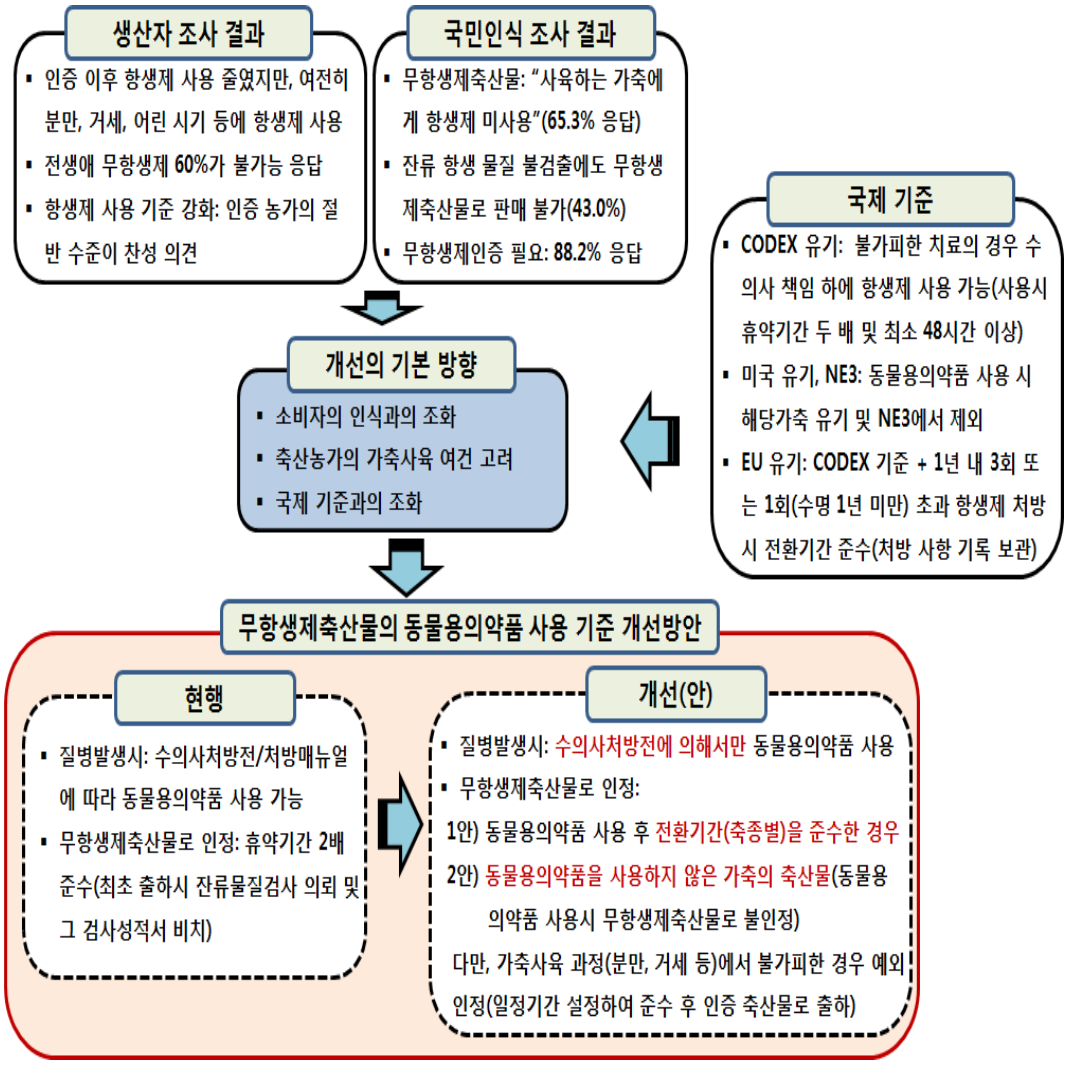

○ 무항생제 인증 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은 현재 무항생제 인증 기준이 명칭에서 기대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임. 따라서 이러한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하여 (1) 명칭을 변경하여 소비자 기대수준을 낮추거나 (2) 인증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음.

○ 명칭변경은 현행 인증기준을 유지하고 '무항생제'를 다른 명칭으로 변경하는 방안임. 비용이 적게 들고, 인증 축산물 공급 측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판단됨.

○ 반면, 인증품의 품질향상(인증기준 강화)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소비자의 기대를 낮춰 문제점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소극적인 대응으로 비판의 여지가 있음. 또한, (1) 항생제 사용을 감소시키려는 정책 방향과 일치하지 않고, (2) 항생제 내성균에 대한 경각심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대처로 부적절하며, (3) 무항생제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지불의사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적절한 대응으로 판단하기 어려움.

○ 따라서 무항생제축산물 인증기준을 강화하여 소비자 기대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항생제의 사용은 피할 수 없음. 따라서 항생제 사용에 대한 기준이 아닌 항생제 사용 후 관리 부분이 인증기준 강화의 대상이 됨.

○ 현행 기준에 따르면, 항생제가 투여된 경우 법적 휴약기간의 2배를 준수하면 무항생제 축산물로 판매가 가능함. 휴약기간 2배를 적용하는 기준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유기축산물에 관한 지침을 따른 것으로, EU의 유기축산물 인증 기준[39]과 동일함.

---

39 항생제가 반복 사용된 경우 별도의 규정이 있음(p.107 참조).

1.3.1. 휴약기간 연장

○ 항생제 투여 후 현행 ‘법정 휴약기간의 2배 경과’를 ‘전환기간 경과’로 변경하는 방안임. 국제수역사무국의 유기축산 지침과 EU의 유기축산 인증 기준에 비해 더 엄격한 변경안 임. 항생제 투여와 도축 사이의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체내 항생제 잔류 수준을 낮출 수 있음.

○ 전환기간은 외부농장(미인증 농장)으로부터 입식된 가축이 무항생제축산물로 인정받기 위해 경과해야 하는 기간임. 다시 말해 일반 가축이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가축으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기간임. 항생제가 투여된 가축을 일반가축으로 간주하고, 다시 전환기간을 거쳐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가축으로 전환되도록 하는 방안임.

○ 항생제와 관련한 기준이 강화되면 질병이 발생할 경우 사육농가의 경제적 피해가 커지고, 사육농가의 질병예방 노력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이에 따라 질병 발생이 감소하고 항생제 사용량도 이에 비례하여 감소할 것으로 기대됨.

○ 전환기간이 돼지의 경우 5개월(약 6개월 사육), 닭의 경우 3주(약 4주 사육)인 점을 고려하면 돼지와 닭의 경우 실질적으로 항생제 사용이 금지되는 효과가 있음.

○ 반면, 인증기준이 강화되더라도 ‘무항생제축산물’을 사육과정에서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은 축산물로 인식하는 소비자(소비자 조사 결과 65.3%)의 기대수준에는 미치지 못함.

1.3.2. 항생제 사용 축산물 격리(항생제 사용 금지)

○ 질병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치료가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에 항생제 사용이 불가피함. 이 경우 해당 축산물을 무항생제축산물로 표시하고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임. 미국의 유기축산물과 NE3의 항생제 관련 규정과 동일함.

○ 소비자가 기대하는 '무항생제축산물'과 일치하는 변경안임. 따라서 소비자 만족도가 극대화되는 개선안으로 평가할 수 있음. 소비자 만족도 증가는 가격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무항생제축산물 생산에 성공한 생산자에게는 경제적 이익이 증가함.

○ 사육가축에 질병이 발생할 경우 인증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박탈되기 때문에 농가는 질병예방 노력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됨.

○ 무항생제축산물 공급량이 큰 폭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있음. 이에 따라 인증축산물 시장에 혼란이 초래될 수 있음.
  - 친환경축산물 소비처인 학교급식의 경우 무항생제축산물 시장 혼란에 대비해야할 필요가 있음.
  - 친환경축산물 전문 유통채널에 유통량 감소로 인하여 극심한 매출감소가 뒤따를 수 있음.

○ 인증기준에 항생제 사용 축산물 판매에 관한 규정 추가가 필요함. 또한 항생제 사용 시 일반 축산물로 간주해야 하기 때문에 병행사육에 관련한 규정도 변경이 필요함.

1.4. 개선방안 비교

○ 무항생제축산물을 둘러싼 환경에는 인증 축산물을 선택하는 소비자가 있고, 이를 생산하는 농가가 있음. 또한 둘을 이어주는 시장(유통종사자)이 있음. 따라서 무항생제축산물에 대한 변경은 다각적 측면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음.

○ 소비자 측면에서는 무항생제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가 중요함. 소비자 기대는 소비자가 인증 명칭으로부터 연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40]. 이런 측면에서 명칭과 인증기준의 일치는 중요한 판단 요소임. 이 요소로 판단하면 항생제 사용 축산물 격리가 전환기간 적용에 비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을 도입한 주요 목적 중의 하나는 무분별한 항생제의 사용량 줄이려는 것임. 그런데 질병이 발생하면 항생제의 사용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생제 사용량은 질병예방 노력으로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음. 질병예방 노력은 질병이 발생한 경우 박탈되는 인증 농가의 경제적 이익의 크기로 판단할 수 있음. 이 기준에 따라 항생제 사용 축산물 격리가 전환기간 적용에 비해 더 우수하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인증농가 조사 결과 두 변경안에 대한 찬성 비율은 한우농가(항생제 사용 축산물 격리 57.1%, 전환기간 적용 73.7%), 한돈농가(62.5%, 20.0%), 젖소농가(0%, 0%), 오리농가(40.0%, 64.3%), 산란계농가(81.8%, 100%), 육계농가(28.6%, 60.0%)로 조사됨. 대체로 인증농가는 변경안으로 전환기간 적용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무항생제축산물을 항생제 사용 축산물의 시장 격리이나 항생제 사용 가축의 전환기간 준수로 변경할 경우 무항생제축산물의 공급량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음. 특히 항생제 사용 축산물을 시장에서 격리하는 방안으로 인증 기준을 변경할 경우, 무항생제축산물 시장에서의 공급량 감소가 전환기간 준수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시장충격 측면에서는 전환기간 준수가 더 낫다고 판단할 수 있음.

○ 4가지 판단 요소(소비자기대, 질병예방 노력, 농가선호, 시장충격) 중 소비자 기대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판단함. 소비자의 불만이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40 소비자 조사 결과: 사육과정에서 항생제 미사용(65.3%), 축산물에서 항생제 미검출(33.7%)

기준 개선 논의의 시작점이었고, 시장의 크기는 소비자 수요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측면을 고려함.

○ 질병예방 노력은 항생제 사용량과 직결되는 요소이고, 항생제 사용량은 친환경 축산물 인증 정책의 성과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음. 이런 측면에서 질병예방 노력을 두 번째 중요한 요소로 판단함.

○ 농가선호와 시장충격은 무항생제축산물 공급과 관련된 요소임. 인증기준이 강화되면 인증 축산물 공급 감소가 예상되고, 항생제 사용 축산물 격리 안의 경우 공급 감소 충격이 작지 않을 것으로 판단함. 단, 공급측면의 충격은 단기간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여 그 중요도를 낮게 판단하였음.

○ 위의 판단기준에 따라 항생제 사용 축산물 격리 방안이 개선안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함.

1.5. 그 외의 문제점

1.5.1. 전생애 무항생제 사육이 가능한가?

○ 가축의 전생애에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고 사육이 가능한지에 대한 수의전문가와 생산농가[41]의 의견은 회의적임. 가축은 임신 - 분만 - 유아기 - 성축의 과정을 거치면서 특별히 질병(또는 감염)에 취약한 시기가 있음. 현재의 기술수준을 고려하면, 특정 시기에 대한 항생제 사용 예외 규정을 두지 않으면 무항생제축산물 생산량이 의미 있는 수준에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41 농가조사 결과 전생애 무항생제 사육이 불가능하다고 응답한 농가는 59.6%에 달하였음.

○ 가축의 사육과정에서 질병(또는 외부감염)에 취약한 시기(또는 사건)는 다음과 같음.

- 분만 전후: 질병과 상처로 인한 감염에 취약함.
- 분만 후 육성기간: 질병에 취약할 뿐 아니라 질병에 노출되면 회복되더라도 가축사육의 경제성이 하락할 수 있음.
- 외과적 수술(예, 거세 등): 상처로 인한 감염에 취약함.
- 백신접종 직후, 건유기(젖소)

표 6-3. 축종별 사육과정과 질병 취약 시기

	부화/임신기간	육성과정	사육기간	취약시기
산란계	21일	18주	60주	입식 후 1주 백신접종
육계	21일	1주	4주	입식 후 1주 백신접종
오리	24~27일	2주	6주	입식 후 1주 사료변경
돼지	114일	이유 4주 이유 후 4주	6개월	출산 후 2개월 백신 / 입식직후
한육우	280일	6개월	30개월	출산 후 2개월 입식직후 / 거세
젖소	283일	10개월	임신-분만- 착유-건유 순환	출산 후 2개월 분만전후 / 건유기

자료: 한국친환경인증기관협회의 조사 자료.

○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기준이 항생제 사용 축산물의 격리로 강화되면 특정한 시기 또는 사건에 대하여 항생제 사용 예외 규정이 도입될 필요가 있음. 특히, 예외적 시기 또는 사건을 열거하여 예외 규정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또한, 취약기간(광범위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최소화하고 취약사건(예, 분만, 거세 등)을 중심으로 열거하여 항생제 사용 가능성을 낮추는 방향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항생제 사용 예외사항으로써의 취약기간 또는 사건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의 동의를 받는 과정도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

1.5.2. 처방의약품과 비처방의약품

○ 동물용의약품은 처방의약품과 비처방의약품으로 구분됨. 처방 의약품에 대한 접근은 수의사 처방전에 의하여 제한되지만, 비처방 의약품에 대한 접근은 아무런 제약이 없음.

○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기준에는 비처방 의약품에 대한 관리의 목적으로 처방매뉴얼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따라서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농가는 비처방 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에 처방매뉴얼을 비치해야 하는 제약이 있음. 반면, 일반 농가는 비처방 의약품 사용에 제약이 없음.

○ 처방 의약품과 비처방 의약품 구분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이 있음. 사용량이 많은 항생제 계열의 약품이 비처방 의약품으로 구분되어 있어 항생제 남용의 여지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임. 비처방 의약품으로 구분되는 대표적인 항생물질에는 페니실린계, 설파제 등이 있음.

○ 비처방 의약품으로 인한 항생물질의 오남용(무항생제축산물의 경우 낮은 수준의 제약이 부과되고 있고 일반 축산물의 경우에는 제약이 없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처방/비처방 의약품 구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필요에 따라서는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에 따로 적용되는 처방/비처방 의약품의 구분 도입도 고려해볼 수 있음.

1.5.3. 밀집사육과 항생제 사용

○ 축산분야에서 밀집사육이 일반화 되면서 대량생산이 가능해지고 생산자의 소득이 증가한 반면 항생제의 사용은 급증하였음. 밀집사육은 사육환경을 악화시키고 사육 개체 간 충돌을 빈번하게 발생시키는 요인임. 불결한 사육환경과 부상으로 인하여 질병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항생제를 포함한 동물용의약품의 사용이 증가함[42].

○ 향후 항생제 사용 축산물을 무항생제축산물에서 격리하는 규정이 도입되면 무항생제축산물 공급량은 확률에 따라 결정될 것임. 질병이 발생하면 항생제의 사용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질병의 발생 빈도가 무항생제축산물의 공급량을 결정하게 됨. 따라서 질병 예방 노력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임.

○ 질병 발생 억제를 위한 노력은 다양할 수 있지만, 항생제 사용의 급증 원인인 밀집사육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밀집사육 환경에서는 질병발생 억제 노력의 효과가 제한적일 것임. 따라서 사육환경 개선과 질병발생 억제를 위하여 사육밀도를 줄이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1.5.4. 오리의 전환기간 조정

○ 사육기술이 발달하면서 오리의 출하일령이 축소되었음. 친환경축산물 인증기준의 오리 전환기간은 6주로 오리의 평균 출하일령과 동일한 수준임. 가금산업은 부화장으로부터 새끼를 공급받아 사육하는 특징이 있음. 따라서 사육기간에 비해 전환기간이 더 짧게 운영되지 않으면 인증농가는 경제적 손실을 피할 수 없음.

---

42 “돼지에서 다른 축종에 비하여 높은 항생제 내성율을 보이는 것은 다른 축종에 비하여 밀집사육 등으로 인하여 질병발생이 많고 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하여 사료에 항생제를 첨가하거나 항생제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정귀옥 외, 2010)

○ 농업관측센터 오리 표본농가의 출하일령 조사 결과에 의하면, 오리의 출하일령은 여름철에 가장 길고 봄철에 가장 짧으며, 2013년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지난 3년 동안의 오리의 평균 출하일령은 42.8일로 나타남.

- 2015년 11월 기준, 무항생제 인증 농가와 일반 농가의 출하일령 비교 결과, 각각 42.9일, 42.6일로 다소 차이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표 6-4. 오리 사육농가의 오리 출하일령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전체
2월	응답 수(건)	70	34	37	141
	평균 출하일령(일)	43.0	42.2	41.9	42.5
5월	응답 수(건)	82	16	37	135
	평균 출하일령(일)	41.5	42.7	41.2	41.6
8월	응답 수(건)	72	61	57	190
	평균 출하일령(일)	44.9	44.2	43.8	44.4
11월	응답 수(건)	70	48	62	180
	평균 출하일령(일)	42.6	41.6	42.8	42.4
전체	응답 수(건)	294	159	193	646
	평균 출하일령(일)	43.0	42.8	42.6	42.8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오리 표본농가 조사결과.

그림 6-2. 오리 사육농가의 출하일령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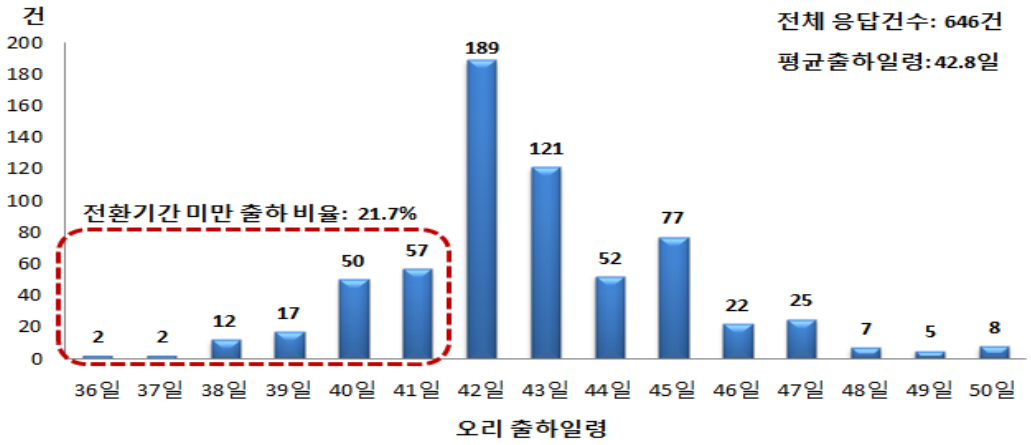

주: 2013~15년도의 2월, 5월, 8월, 11월에 조사된 응답 수를 모두 포함하여 나타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오리 표본농가 조사결과.

○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가 오리를 인증 축산물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최소 42일을 사육하여야 함. 오리 사육농가들의 출하일령 조사 결과에 의하면, 42일 이전에 오리를 출하하는 비율이 21.7%로 나타남.

○ 친환경축산물 인증 농가가 전환기간인 42일 이전에 오리를 출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환기간 조건을 맞추기 위해 사육 일수를 더 늘려야 한다면, 사육기간 초과에 따른 비용 증가로 소득이 감소할 수 있음. 인증 농가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오리의 전환기간 조정이 필요함.

○ 유기, 무항생제 인증 농가의 비용 절감, 오리 사육농가의 인증 참여 유도 등을 위해 오리와 사육 방식이 유사한 육계의 출하일령과 전환기간을 참고하여 오리의 전환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육계의 경우 최소 전환기간은 21일로 설정되어 있고 출하일령은 32.68일[43]이어서, 출하일령과 전환기간의 차이가 대략 11일 정도임.

○ 육계의 전환기간과 출하일령의 차이인 11일을 적용할 경우, 오리의 최소 전환기간을 32일[44]로 설정할 수 있고, 육계의 출하일령과 전환기간의 비율을 적용하면 오리의 최소 전환기간을 28일[45]로 설정할 수 있음. 이러한 근거에 따르면, 오리의 전환기간을 4주 또는 5주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함.

---

43 통계청(2015. 6)『2014년 축산물 생산비』84쪽.

44 42.77일(오리 출하일령)-11일(육계의 출하일령과 전환기간의 차이)=31.77일

45 21일(육계 최소전환기간)/32.68일(육계의 출하일령)=0.643, 42.77일×0.643=27.5일

2. 축산 인증제도의 효율적 운영 방안

2.1. 현황

○ HACCP, 친환경축산물(무항생제, 유기), 동물복지 인증제가 개별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또한 이에 대한 인증기관도 각각 상이함.

2.2. 문제점

○ 복수 인증 농가의 경우 개별 인증제도 간 유사한 항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복하여 평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임(부록 4 '축산관련 인증 간 기준 비교' 참고).

2.3. 개선안 검토

2.3.1. HACCP 인증과 친환경축산물·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간 관계

○ HACCP 인증은 가축사육과 관련된 법률(축산법, 축산물위생관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의사법, 가축분뇨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이 규정하는 조건을 효과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또는 수단)을 개별 농장별로 체계화한 것임.

○ 친환경축산물 인증과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은 각각 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과 동물보호법에서 제시하는 인증기준을 준수해야 함. 그런데 두 개의 인증기준은 가축사육 기본법을 준수한 후 추가로 준수해야할 사항들임. 다시 말하면, 두 가지 인증기준에는 사육 관련법 내용 이외의 추가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 따라서, HACCP 인증과 친환경축산물·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간의 유사점을 찾기 어려움. 단, 기록관리에 관한 내용은 각 인증 간 유사점이 많기 때문에 HACCP 인증을 기준으로 몇 가지 내용을 추가하면 복수 인증에 공통으로 사용될 여지가 있음.

2.3.2. 친환경축산물 인증과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간 관계

가. 무항생제축산물 인증과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 동물복지 인증의 주요 기준(사육 관련법과 차이가 있는)은 사육면적과 방목시설, 자연환기와 햇빛 제공, 가축의 본능과 관련된 시설물, 신체의 변형 및 절단 제한, 돼지의 경우 군사 조건, 조사료 제공 등이 있음.

○ 무항생제 인증의 주요 기준(사육관련법과 차이가 있는)은 동물용 의약품 사용 제한이 있음.

○ 동물복지와 무항생제 인증 간의 유사점을 찾기 어려움. 다만, 몇 가지 유사한 인증기준은 다음과 같음.
- 축사, 기구 등에 대한 청소 및 소독
- 사료첨가 금지 물질(포유류 또는 조류 유래 사료(동물복지), 포유동물 유래 사료(무항생제, 반추가축))

○ 위의 유사점을 이용하여 복수인증 간소화를 위한 통합인증 안이 마련된다고 하더라도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나. 유기축산물 인증과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 유기축산물 인증 기준은 동물복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음. 동물복지 요소에는 사육면적과 방목시설, 자연환기와 햇빛 제공, 신체의 변형 및 절단 제한,

돼지의 경우 군사 조건, 조사료 제공 등이 있음.

○ 유기축산물 인증기준에 포함된 동물복지 요소는 동물복지 인증기준과 유사점이 있음. 이들 요소를 대상으로 통합인증 안을 마련하면 복수인증(유기축산물과 동물복지 인증) 농가의 중복 인증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위의 요소가 두 인증제에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지만, 각 요소의 세부 기준에는 차이점이 있음. 예를 들어 사육면적, 군사 조건(돼지), 신체의 변형 및 절단 등의 세부 규정에 차이가 있음. 세부 규정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건을 제공하는 기본 정신은 동일함. 따라서 두 인증제 간 공통요소의 세부규정에 대한 통일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세부규정이 통일되면 통합인증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표 6-5. 유기축산물과 동물복지 인증 세부규정 차이점(돼지)

	유기축산물	동물복지
사육 면적	비육돈 자돈 후기: 0.3㎡/마리 비육돈 육성돈: 1㎡/마리 비육돈: 1.5㎡/마리	30kg 미만: 0.3㎡/마리 60kg 미만: 0.55㎡/마리 60kg 이상: 1㎡/마리
신체 절단 금지	꼬리, 이빨 자르기 필요한 경우 허용	꼬리자르기(절반 이하), 이빨 연삭
군사 예외	번식돈 임신말기와 포유기간	번식돈 수정 후 4주까지

2.3.3. 인증기관의 문제

○ 통합인증 기준이 마련되어 운영되는 경우, 어떤 인증기관이 통합 요소에 대한 인증 권한이 있는지에 관한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예를 들어, 동물복지와 유기축산물의 공통요소를 민간 인증기관이 판단할 것인지, 농림축산

검역본부가 판단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가 발생함.

○ 현행 축산 인증 기관은 인증별로 다음의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음.
- HACCP: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 친환경축산물: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민간 인증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동물복지: 농림축산검역본부

○ 인증제의 효율적 운영 안의 모색은 복수 인증 농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이 있음. 이 목적으로 판단하면, 인증기준의 통합보다는 하나의 인증기관이 복수의 인증심사를 수행하는 것이 농가의 부담 경감에 더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됨. 이 경우에도 종류에 따른 인증권한이 어디에 있는지(정부 인증기관 또는 민간 인증기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함.

3. 산지생태축산 활성화 방안

3.1. 현황

○ 산지생태축산은 유휴 산지를 축산 목적으로 활용하여 (1) 자원의 활용성을 높이고, (2) 농가의 소득 향상을 도모하고, (3) 가축의 사육환경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4) 친환경적인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음.

○ 2014년부터 산지생태축산 지정 및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며, 지정농장 4개소와 시범농장 18개소가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음.

○ 산지생태축산 농장이 친환경축산물 직불제의 조건을 만족한 경우 직불금의 20%를 추가로 지급하고 있음.

3.2. 문제점

○ 산지생태축산 지정농장의 수가 4개소에 불과할 정도로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음. 축산농가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유인을 제공하여 산지생태축산의 활성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산지생태축산 농장에 지정되더라도 인증표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산지생태축산 농장의 생산물이 시장에서 차별화될 기반이 조성되어 있지 않음. 이에 따라 참여농가가 시장가격 차별화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지 못하는 상황임.

3.3. 개선방안

3.3.1. 인증표시를 통한 시장 차별화

○ 축산물에 대한 정부인증은 HACCP, 무항생제축산물, 유기축산물, 동물복지 등이 있음. 또한 농식품 전체로 확대하면 GAP, 지리적표시, 식품명인 등 총 11개의 정부인증 표시제도가 운영 중임.

○ 인증에 대한 소비자의 추가지불은 인증표시에 대한 인지도와 인증기준에 대한 동의(또는 만족)와 신뢰도에 기반함. 따라서 인증표시제도가 과하게 운영되는 것은 해당 제품뿐 아니라 나머지 인증제품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 2013년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조사에 의하면 8가지 농식품 정부인증[46]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인증을 인지하지 못하는 비율이 89.8%에 이름.

---

46 유기가공식품, 친환경농산물, 전통식품품질, 식품명인, 지리적표시, GAP, HACCP, 가공식품KS.

이 결과는 소수의 소비자(약 10%)만 정부인증을 모두 인지한다는 의미임. 산지생태축산 인증표시를 추가하더라도 소비자가 인지하기까지는 많은 노력이 필요함을 의미함.

○ 소비자의 추가지불은 인증이 자신에게 이익을 주거나(품질보증 등) 추구하는 가치에 동의(동물복지 등)할 때 가능함. 따라서 산지에서 사육한 것만으로는 소비자 추가지불을 이끌어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산지에서 사육한 것이 소비자에게 이익을 주거나 추구하는 가치가 되기 어려움.

○ 따라서 산지생태축산 인증표시와 이와 연계된 소비자의 추가지불을 통한 사업 활성화는 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3.3.2. 기존 직불제 또는 정부사업 활용

○ 산지생태축산 자체가 추구해야 할 가치가 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직불제를 신설하는 것도 효율적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다만, 산지생태축산으로 인한 결과로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다면, 직접지불 및 지원의 근거가 될 수 있음.

- 유휴자원을 활용한 조사료 생산
- 조건불리지역에서의 소득창출
- 주변경관의 개선

○ 현재 산지생태축산 인증 및 시범사업은 가축의 사육을 전제로 진행되고 있음. 축산업 범위를 가축사육에서 가축사육 전 단계인 사료의 생산까지 포함하면, 초지 및 조사료 생산시설을 산지생태축산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음.

○ 산지생태축산에 대한 광의의 해석이 가능하다면, 조사료 생산에 대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을 통한 지원이 가능함. 조사료 사업 중 농가를 대상으

로 하는 지원내역은 다음과 같음.

- 볏짚 등 부존자원 활용 지원
- 초지조성 및 기반시설 지원
- 조사료용 종자구입비 등

○ 조건불리지역 직불은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실시되고 있음.

○ 조건불리지역 직불의 지원 조건은 경지율 22%이하, 경지경사도 14% 이상의 농지면적이 50%이상인 법정 리(里)임. 기준에 의하여 법정 리가 결정되면 해당 법정 리의 농지 및 초지에서 농업을 하는 농업인 또는 경영체가 대상임. 지원금액은 초지의 경우 ha당 25만 원임.

○ 경관보전직불제는 지역별 특색 있는 작물재배와 마을경관보전활동을 통해 농어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고 보전하여 농촌관광, 도농교류 등과 연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음.

○ 경관보전직불제는 개인농가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마을단위의 위원회(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대상으로 함. 위원회의 구성은 경관작물 재배농가 3인 이상과 재배자 외 마을주민 5인으로 구성됨.

○ 경관보전직불제의 재배작물은 경관작물 23종과 준경관작물 9종이 해당됨. 이 중 조사료로의 활용이 가능한 품종은 준경관작물에 포함되어 있음. 지원단가는 준경관작물의 경우 ha당 100만 원임.

3.3.3. 기존 인증제 활용

○ 산지생태축산의 장점 중 하나는 사육시설의 면적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점과 방목장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임. 이는 기존의 밀식사육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특징임. 이를 활용하여 친환경축산물과 동물복지축산농장 직불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친환경축산물 인증 직불제는 현재 운영 중인 제도로 산지생태축산 활성화를 위하여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음. 또한 친환경축산물 직불 요건을 충족하는 산지생태축산 지정 농가는 직불금의 120%를 수령할 수 있음.

○ 친환경축산물 중 무항생제축산물은 사육밀도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지는 않지만, 밀식사육으로 인한 사육환경의 악화로 인하여 동물용의약품 사용 증가한다는 측면을 고려하면 산지생태축산농가의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유기축산물 인증은 사육밀도와 방목조건이 인증조건에 포함됨. 따라서 산지생태축산농가는 일반농가에 비해 유기축산물 인증에 유리한 조건임. 단, 유기축산물에서 요구하는 동물용의약품 사용 제한과 유기사료 급여의 부분은 사육농가의 의지가 필요한 부분임.

○ 산지생태축산 농가의 조건은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에 유리함.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의 조건은 사육밀도와 방목장, 사육가축에 대한 인도적 배려가 포함됨. 이 조건 중 사육면적과 방목장 조건은 산지생태축산의 특성에 포함됨. 이에 더하여 사육가축에 대한 인도적 배려가 추가되면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의 요건을 만족할 수 있음.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산지생태축산농장이 획득하기 가장 용이한 기존의 인증은 동물복지로 볼 수 있음.

○ 다만, 동물복지축산농장에는 직불금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인증을 획득하더라도 경제적 이익의 증가는 소비자의 추가지불에 한정됨.

3.3.4. 경종부분 친환경직불제의 확대

○ 축산과 관련된 친환경직불은 유기축산물과 무항생제축산물이 있고 경종과 관련된 것은 유기농산물과 무농약농산물이 있음.

○ 산지생태축산의 초지가 유기와 무농약농산물 인증 기준을 만족시키는 경우, 경종부분에 지급되는 직불의 확대를 고려해 볼 수 있음. 초지에 화학비료와 농약을 투입하지 않는다면 친환경 직불에서 추구하는 목표가 달성되었고, 이 경우 타 경종작물과 차별없이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음.

4. 축산관련 직불제 개선 방안

4.1. 친환경축산물 직불금 개편

4.1.1. 현황

○ 친환경안전축산물 직불은 친환경축산 실천농가의 초기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축산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됨.

○ 친환경축산물 인증 농가가 HACCP 인증을 받은 경우 친환경안전축산물 직불금을 지급함. 유기축산물 직불은 지급횟수(기간) 5회(5년), 농가당 한도는 연간 3,000만원임. 무항생제축산물 직불은 지급횟수(기간) 3회(3년), 농가당 한도는 연간 2,000만원임.

4.1.2. 문제점

○ 2009년 친환경안전축산물 직불제가 도입된 이후, 축산업의 여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직불금 지급단가 조정이 없었음.

○ 한성일 외(2013)는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은 10개 축종의 103개 농가의 비용 분석을 통해 축종별, 인증 종류별로 지급단가를 재산정하여 제시하였음. 2014년부터 직불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 메추리알, 산양, 산양유의 지급단가는 한성일 외(2013)에서 제시한 연구결과를 반영하였지만 다른 축종에 대해서는 반영되지 않음.

○ 사슴의 경우, 친환경축산물 인증은 받을 수 있지만 HACCP 인증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직불금을 신청할 수 없음. 친환경축산물의 출하실적에 따라 직불금이 지급되고 있어 번식농가나 종축업은 대상에서 제외됨.

○ 친환경축산물 인증 농가 중 소규모 농가들인 경우 직불금을 신청할 만한 경제적 유인이 거의 없음. 직불금을 받기 위해 정부 지원없이[47] HACCP 인증 받아야 하기 때문에 소규모 농가들은 인증 비용 부담이 크지만, 직불금 신청 액수는 소규모 농가이므로 출하량이 많지 않아 작을 것임.

4.1.3. 개선방안

가. 직불제 개편의 기본 방향

○ 친환경안전축산물 직불제 개편은 친환경축산의 확산에 기여하도록 개편
- 직불금 지급단가의 현실화
- 축종별, 사육유형별, 규모별 형평성 고려

47 2016년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 사업부터 사육 규모 제한이 없어질 예정임.

- 산지생태축산 등 친환경축산 실천 농가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연계 방안 강구

나. 지급단가 및 지급기간 조정

○ 친환경안전축산물 직불금 지급단가 조정안은 다음 표와 같음.

표 6-6. 친환경안전축산물 직불금의 지급단가 조정(안)

축종	현행		한성일 안		조정 안	
	유기	무항생제	유기	무항생제	유기	무항생제
한우(마리)	170,000원	65,000원	245,065원	105,062원	259,989원	111,460원
-육우(마리)	85,000원	32,500원	122,533원	52,531원	129,995원	55,730원
우유(리터)	50원	10원	81원	13원	86원	15원
돼지(마리)	16,000원	6,000원	20,504원	8,333원	21,753원	8,840원
계란(10개)	100원	10원	107원	11원	114원	12원
육계(마리)	200원	60원	365원	70원	387원	75원
-토종닭(마리)	260원	78원	523원	161원	555원	171원
오리(마리)	400원	120원	468원	171원	497원	182원
오리알(개)	20원	2원	20원	2원	21원	2원
메추리알(10개 또는 100g)	-	4원	-	4원	38원	4원
산양(마리)	-	4,584원	-	4,584원	11,343원	4,863원
산양유(리터)	-	34원	-	34원	206원	36원

주: 메추리알, 산양, 산양유에 대한 유기축산물 직불금이 없어 유사한 축종의 유기, 무항생제 직불금 비율을 이용하여 계산함.

자료: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한성일 안은 한성일 외(2013) 연구결과, 조정안은 한성일 안에 물가상승율 년 3%(2년) 적용한 결과임.

- 직불금 지급단가는 2009년 도입 이후 인상되지 않아 지급단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친환경농업 직불금은 2012년에 인상됨.
  - 논(유기 392천 원 → 600천 원/ha, 무농약 307천 원→400천 원, 저농약 217천 원),
  - 밭(유기 794천 원→1,200천 원/ha, 무농약 674천 원→1,000천 원, 저농

약 524천 원)

- 메추리알, 산양, 산양유는 2014년 도입: 한성일 외(2013년)의 연구 결과를 적용함.

다. 직불금 수혜 대상 확대 방안

○ 사슴의 경우 HACCP 인증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HACCP 인증이 불가능하고 친환경안전직불금 수령도 불가능한 상황임. 사슴에 대한 HACCP 인증기준의 조속한 마련이 필요함. 다만, 인증기준 마련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증기준이 확립되기 전까지 사슴농가에 대해 HACCP 인증을 면제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음.

○ 초지를 친환경농업직불제 지급 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소규모 친환경축산물 인증 농가, 종축, 번식 등 다른 축종으로 대상이 확대될 수 있음.

4.2. 유기축산물 지속 직불금 신설

4.2.1. 현황

○ 2015년 친환경농업직불 사업 시행 지침에 의하면, 유기농산물 생산 농가에 대해서는 유기 지속직불금을 도입하여 최장 5년간 직불금을 지급받은 필지라도 추가로 3년간 유기농업 직불금의 절반을 지급하고 있음.

4.2.2. 문제점

○ 친환경안전축산물 직불제 사업 시행 지침에 의하면, 유기축산에 대해서는 유기지속직불금이 지급되고 있지 않음. 2012년 유기농업에 대한 직불금 지급 기한이 5년으로 연장되면서 유기축산에 대한 직불금도 2015년부터 5년

으로 연장된 바 있음. 유기농산물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유기축산물에도 유기지속직불금의 도입이 필요함.

4.2.3. 개선방안

○ 유기지속직불 도입 근거
- 유기축산물 인증 실적 감소: 11년 20,695톤 → 14년 13,863톤
- 친환경농업직불제의 유기농업 실천농가에게 유기지속직불금 지급 (유기농산물을 생산하여 직불금을 최장 5년간 지급(불연속인 경우 5회 지급) 받은 필지에 대해 추가 3년간 지급(불연속인 경우 3회 지급)
- 유기지속직불금: 유기 직불금의 50%(논: 30만 원/ha, 밭: 60만 원/ha)
- 독일, 프랑스 등 유럽국가에서는 농업생태계 환경의 질 보전에 대한 보상금 차원에서 5년차 이상에서도 지속적으로 지급하고 있음(정학균 외, 2014 연구)

○ 축산부분에 유기지속직불 신설
- 유기축산농가: 추가 3년간(또는 3회) 지급, 축종별 유기직불금 단가의 50%
- 예산확보가 가능할 경우 유기축산인증 농가에게 지속적으로 지급(정학균 외(2014)는 유기농업의 유기지속 직불금을 10년 정도 지급할 것을 제안)

4.3.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직불

4.3.1. 현황

○ 2012년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이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시행된 이후 총 77개 농장이 동물복지 인증을 획득함. 축종별로는 산란계 69농가, 돼지 6농가, 육계 2농가임.

○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농가는 생산물에 동물복지 인증표시를 할 수 있음.

4.3.2. 문제점

○ 동물복지 인증농가는 생산물에 인증표시를 하여 시장에서 차별화된 가격을 수취할 수 있으나, 소비자의 추가지불 의향이 생산비 증가분을 상쇄할 정도로 높지 않음.

○ 각 인증제의 소비자 인지도에 대한 조사에서 동물복지 인증에 대한 인지도가 가장 낮게 나타남. 동물복지 인증에 대해 모른다(전혀 들어본적 없다 + 잘 모르는 편임)는 답변이 50.7%에 달함. 반면, 가장 높은 인지도를 가진 HACCP에 대해 모른다는 대답은 10.4%에 불과함.

○ 생산농가는 추가 투자에 대한 부담과 소득의 감소 때문에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임. 동물복지의 사육밀도와 방목지 조건을 충족하려면 추가 부지를 확보하거나 생산규모를 축소해야 함.

4.3.3. 개선방안

○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으로 인한 소득감소분을 직불금으로 보전하는 방안이 있음. 동물복지 개념은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가치이고, 국내 소비자도 동물복지 축산 활성화에 찬성하는 비중이 85.0%,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77.9%로 조사됨.

○ 박종수 외(2014)은 동물복지를 도입할 경우 비용이 상승하고 수입이 감소하기 때문에 동물복지에 직불금을 지불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제기함. 축종별 직불 단가는

- 돼지: 마리당 1,793원 ~ 3,965원(소비자 추가지불 20% 가정)

- 계란: 100개당 61원 ~ 313원(소비자 추가지불 30% 가정)
- 육계: 마리당 831원 ~ 1,436원(소비자 추가지불 20% 가정)으로 제시하고 직불지급 기간은 5~7년으로 제시함.

5. 친환경축산물 인증기관 전문화 방안

5.1. 현황

○ 친환경농산물 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인증기관은 농산물품질관리원을 포함하여 69개소가 있음. 이 중 축산부분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은 소수에 불과함.

○ 축산과 경종을 구분하여 보면 친환경인증 업무는 경종부분에서 주로 발생함. 따라서 민간인증기관은 주로 경종에 전문성이 있는 심사원을 확보하고 있음. 또한 축산에 대한 전문지식 유무가 심사원의 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5.2. 문제점

○ 친환경농산물에 경종과 축산이 포함되어 있지만, 둘 간의 차이가 커 어느 한 쪽의 전문가가 다른 편의 산업 특성을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 또한 인증기관의 심사원이 주로 경종에 대한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어 축산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불만이 제기됨.

○ 축산 전문지식이 없는 심사원에 의한 인증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음. 이 때문에 인증대상 농가는 인증기관의 전문지식 부재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음.

○ 인증대상 농가의 불만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인증의 신뢰도 저하임. 산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으면 공정하고 정밀한 심사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임. 부실한 심사는 친환경축산물 인증에 대한 소비자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인증기관에 따른 인증의 난이도 편차 문제도 발생함. 일부 농가의 경우, 특정 인증기관에 신청 후 인증이 까다롭다고 판단되면 기관을 변경하여 인증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음. 인증 난이도 편차는 인증심사원이 경제적 이익을 위해 부실한 심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심사원의 전문성 결여와 산업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기인하는 경우도 있음.

5.3. 개선방안

○ 해당 부분(경종, 축산)에 전문성이 있는 심사원에 한하여 심사 자격을 부여하여 인증기관에서 전문 심사원 확보에 노력하도록 유도.

○ 심사원의 축산분야 전문성 평가
- 축산학과, 수의학과 등 축산관련 정규과정 졸업
- 축산관련 자격증(축산기사, 축산산업기사, 축산기술사)
- 축산관련 업무 종사 경력
- 축산분야 심사원 교육과정 이수(교육과정 신설 필요)

○ 인증 심사서에 심사원의 성명을 기재하는 인증심사 실명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개별 심사에 대해 심사원의 성명이 명시되기 때문에 심사원의 신중한 작업을 기대할 수 있음. 또한 향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심사기관과 함께 심사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정보가 됨[48].

48 정책실명제는 정부정책을 결정 집행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 이력을 기록·관리하여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음.

○ 자원 양성을 위하여 ‘축산분야 심사원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축산 심사원 희망자에 교육기회를 제공할 필요 있음. 또한 기존 심사원을 대상으로 하는 보수 교육과정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이는 인증기관에 따른 인증 편차(난이도 등)를 해소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심사기관이 심사원을 고용하는 형태는 상근과 비상근으로 구분됨. 비상근의 경우 심사기관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으나 심사의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비상근 심사원의 비율이 상근 심사원의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할 필요성이 있음.

○ 인증농가 표본 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인증기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면 부실심사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제 7 장

요약 및 결론

○ 무항생제축산물에 항생제가 사용되고 있다는 소비자의 불만이 표출됨. 무항생제축산물 인증기준을 준수하더라도 가축에 항생제 사용이 가능한 상황에서 무항생제축산물의 언어적 의미와 인증기준 간의 괴리에서 문제가 발생함. 또한 무항생제축산물과 일반 축산물의 차이가 축소되면서 인증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무항생제축산물 인증기준 개선을 위하여 휴약기간의 연장(전환기간 준수)과 항생제 사용가축 시장 격리의 두 개선안을 비교함. 비교 결과 소비자 기대수준과 일치하고, 항생제 사용량 감소 가능성이 더 높은 항생제 사용 가축의 시장 격리 방안이 더 적합한 개선안으로 판단함.

○ HACCP, 친환경축산물(무항생제, 유기), 동물복지 인증제가 개별적으로 시행되고 개별 인증의 인증기관도 상이함. 따라서 복수 인증 농가의 경우 개별 인증제도간 유사한 항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복하여 평가를 받아야 하는 부담이 있음.

○ 복수인증 농가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HACCP 인증과 친환경축산물·동물복지 인증간의 관계, 친환경축산물 인증과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간의

관계를 검토함. 검토 결과 인증제 간 공통사항이 충분하지 않아 통합인증 등의 방안 마련이 어렵다고 판단함.

○ 복수 인증 농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는 인증기준의 통합보다는 하나의 인증기관이 복수 인증을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음. 그러나 인증기관의 인증 영역이 분리되어 운영되는 상황에서 인증기관이 복수인증을 수행하는 것은 인증영역 구분을 무력화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함.

○ 산지생태축산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지생태축산 지정 및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지만 지정농장의 수가 4개소에 불과할 정도로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음. 축산농가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유인을 제공하여 산지생태축산의 활성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 산지생태축산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증표시를 통한 시장 차별화, 기존 직불제 또는 정부사업 활용, 기존 인증제 활용 등의 방안을 검토함.
- 산지생태축산 인증제 신설 방안은 산지축산 자체적으로 소비자에게 이익을 주거나 추구해야할 가치가 되기 어렵기 때문에 인증제 신설은 효과적이지 않을 것으로 판단함.
- 기존 직불제 또는 정부사업 활용 방안은 산지생태축산의 결과, 유휴자원을 활용한 조사료 생산, 조건불리지역에서의 소득창출, 주변경관의 개선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각각에 지원되고 있는 기존의 제도를 활용하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함.
- 기존 인증제의 활용 방안은 산지생태축산 농가를 친환경축산물 인증 또는 동물복지 인증으로 유도하여 기존의 인증제를 활용함과 동시에 산지생태축산 농가에 경제적 이익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함.

○ 친환경안전축산물 직불은 친환경축산 실천농가의 초기소득 감소분 및 생산

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축산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음. 그러나 2009년 친환경안전축산물 직불제가 도입된 이후, 축산업의 여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직불금 지급단가 조정이 없었음. 또한 경종부분의 친환경농산물 직불 단가가 인상되고 직불 기간이 확대되었음에도 축산부분에서는 이에 대응하는 조치가 없었음. 유기축산물 인증 실적이 감소(11년 20,695톤 → 14년 13,863톤)하고 있어 유기축산물 인증농가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함.

○ 친환경안전축산물 직불단가의 인상안으로 한성일 외(2013)의 친환경안전축산물 직불금 지급단가 조정안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함. 또한 유기지속직불을 실시하고 있는 경종부분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축산부분에도 유기지속직불금 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 사슴의 경우, 친환경축산물 인증은 받을 수 있지만 HACCP 인증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직불금을 신청할 수 없음. 따라서 사슴에 대한 HACCP 인증안 신설이 시급하고, 기준안이 마련되기 전까지 사슴에 대해서는 친환경안전축산물 직불의 조건으로 HACCP 인증을 한시적으로 면제해주는 방안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함.

○ 2012년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이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시행된 이후 총 77개 농장이 동물복지 인증을 획득함. 동물복지 인증농가는 생산물에 인증표시를 하여 시장에서 차별화된 가격을 수취할 수 있으나 소비자의 추가지불 의향이 생산비 증가분을 상쇄할 정도로 높지 않음. 또한 소비자 조사결과에서도 동물복지 인증에 대한 인지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됨. 이로 인해 생산농가는 추가 투자의 우려와 소득의 감소 때문에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임.

○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으로 인한 소득감소분을 직불금으로 보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동물복지 직불단가는 박종수 외(2014)의 동물복지 직

불단가 안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함.

○ 친환경농산물 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인증기관은 농산물품질관리원을 포함하여 69개소가 있음. 축산과 경종을 구분하여 보면, 친환경인증의 업무는 경종부분에서 주로 발생함. 따라서 민간인증기관은 주로 경종에 전문성이 있는 심사원을 확보하고 있음. 이에 따라 축산 전문지식이 없는 심사원에 의하여 인증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인증대상 농가는 인증기관의 전문지식 부재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음. 인증대상 농가의 불만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인증의 신뢰도 저하임. 산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으면 공정하고 정밀한 심사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임.

○ 인증기관의 전문성 강화 방안으로 심사원에 대한 축산관련 전문성을 평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평가의 기준은 축산관련 학위, 경력, 자격증 등이 있음. 또한 인증원에 대한 교육의 기회(자격취득 교육, 보수 교육)를 제공할 필요도 있음. 인증기관의 전문성과 별도로 인증원의 신분(상근, 비상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함. 비용절감의 목적으로 비상근 인증원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상황임. 따라서 상근과 비상근 비율을 제한하여 비상근 인증원이 지나치게 늘어나지 못하도록 통제의 필요성이 있음.

부록 1

소비자 조사표(축산물 인증과 친환경축산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 다음은 축산물의 안전, 친환경, 동물복지 등 사회적인 요구에 의해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축산물 인증에 대한 내용입니다. 친환경농축산물(유기, 무항생제)은 환경을 보전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유기합성 농약과 화학비료 및 사료첨가제 등 화학자재를 전혀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량 만을 사용하여 생산한 농축산물을 의미합니다.

식품안전관리인증 HACCP 식품의약품안전처	가축 사육부터 축산물 판매까지의 유통 과정에서 축산식품의 안전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위해요소가 축산식품에 혼입되지 않도록 사전에 관리하는 기법임. 즉 축산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전위해관리기법임.
무항생제 (NON ANTIBIOTIC) 농림축산식품부	무항생제축산물은 항생제, 합성항균제, 호르몬제가 첨가되지 않은 일반사료를 급여하면서 인증 기준을 지켜 생산한 축산물
유기농 (ORGANIC) 농림축산식품부	유기축산물은 유기농산물(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재배)의 재배·생산 기준에 맞게 생산된 유기사료를 급여하면서 인증기준을 지켜 생산한 축산물
동물복지 (ANIMAL WELFARE) 농림축산식품부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스트레스, 질병, 부상, 고통 등을 최소화하도록 사육) 기준에 따라 인도적으로 동물을 사육하는 축산농장에 대해 국가에서 인증하고, 인증농장의 축산물에는 동물복지 인증마크를 표시할 수 있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내용을 요약 정리함.

1. 귀하는 현재 시행 중인 축산물 인증제도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전혀 들어보지 못함	잘 모르는 편임	어느 정도 아는 편임	매우 잘 알고 있음
HACCP 인증		①	②	③	④
친환경 축산물	무항생제	①	②	③	④
	유기	①	②	③	④
동물복지 축산물		①	②	③	④

2. 귀하는 축산물을 구매할 때 정부의 인증표시가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편입니까?( )

① 전혀 영향 없음 ② 영향 없음 ③ 영향 있음 ④ 매우 영향이 큼

3. 귀하는 인증 축산물을 구매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인증이 있습니까?

① 예 (대상 인증을 적어주세요 :) ② 아니오

4. 귀하께서 구매경험이 있는 인증 축산물을 모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증의 종류	축산물 종류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우유	계란
HACCP인증					
무항생제축산물					
유기축산물					
동물복지축산물					

5. 위에서 인증 축산물에 대한 구매 경험이 없거나, 구매하였지만 앞으로 더 이상의 구매의사 없다면, 그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래 보기에서 골라 번호를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기 >

① 인증 축산물의 가격이 너무 비싸서 ② 일반축산물과 별다른 차이를 못 느껴서
③ 인증축산물을 구입하기 쉽지 않아서 ④ 인증제도를 신뢰할 수 없어서
⑤ 맛이 없어서 ⑥ 축산물 구입을 안 함

- HACCP 인증 축산물:( ) - 무항생제 축산물: ( )
- 유기 축산물:( ) - 동물복지 축산물: ( )

6. 귀하는 일반 축산물과 인증 축산물이 각종 기준을 잘 준수하고 투명한 유통과정을 거치는 것에 대해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인증의 종류		전혀 신뢰 안함	신뢰 안함	신뢰	매우 신뢰
일반축산물		①	②	③	④
HACCP 인증		①	②	③	④
친환경 축산물	무항생제	①	②	③	④
	유기	①	②	③	④
동물복지 축산물		①	②	③	④

7. 귀하께서 위와 같이 투명성이 낮다고 응답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 2가지만 순위별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기 >
① 원산지 속이기 ② 이력추적제도 미준수 ③ 유통마진 확대 ④ 판매 부위 속이기
⑤ 업소 위생상태 불량 ⑥ 판매 중량 속이기 ⑦ 제품 품질이 일정치 못함

- 1순위 ( ) - 2순위 ( )

8. 귀하께서 위와 같이 투명성이 높다고 응답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 2가지만 순위별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기 >
① 원산지 표시제도 ② 이력추적제도 ③ 유통마진 축소 ④ 둔갑판매 축소
⑤ 유통기한 준수 ⑥ 브랜드 판매 정착 ⑦ HACCP 적용 등 위생상태 향상

- 1순위 ( ) - 2순위 ( )

9. 귀하는 일반 축산물과 인증 축산물의 식품안전성 수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증의 종류		안전성 수준 매우 낮음	안전성 수준 낮음	안전성 수준 높음	안전성 수준 매우 높음
일반축산물		①	②	③	④
HACCP 인증		①	②	③	④
친환경 축산물	무항생제	①	②	③	④
	유기	①	②	③	④
동물복지 축산물		①	②	③	④

10. 귀하는 표에 제시된 일반축산물 가격과 비교해서 인증 받은 축산물의 가격으로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축산물 가격		HACCP	친환경축산물		동물복지
			무항생제	유기	
한우 등심 (1등급 100g)	7,740원	원	원	원	원
돼지 삼겹살 (냉장 100g)	1,939원	원	원	원	원
닭고기(도계육 1kg)	5,006원	원	원	원	원
우유(1리터)	2,547원	원	원	원	원
계란(특란 30개)	5,434원	원	원	원	원

주: at농산물유통정보 품목별 소매가격 동향 자료 참고(10월 27일 기준)

11. 귀하는 아래와 같은 축산물 인증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증의 종류		매우 필요 없음	필요 없음	필요함	매우 필요함
HACCP 인증		①	②	③	④
친환경 축산물	무항생제	①	②	③	④
	유기	①	②	③	④
동물복지		①	②	③	④

※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은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인도적으로 동물을 사육하는 소·돼지·닭 사육농장에 대해 국가에서 인증하고, 인증농장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에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마크'를 표시하는 제도로 국내에서는 '12년 산란계, '13년 돼지에 이어 육계가 포함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 위의 글을 읽은 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는 동물복지 축산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필요 ② 필요 ③ 필요 없음 ④ 전혀 필요 없음

13. 귀하는 동물복지 축산의 활성화를 위해 해당 농가에의 정부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필요 ② 필요 ③ 필요 없음 ④ 전혀 필요 없음

14. 귀하에게 “무항생제 축산물”의 의미는 직관적으로 어떤것입니까?( )

① 사육하는 가축에게 항생제 미사용 ② 축산물에서 항생제 미검출

③ 기타 의견( )

※ 무항생제 인증 기준에 의하면, 가축에게 질병이 발생할 경우 수의사의 처방전이나 처방매뉴얼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물약품을 사용하면 축산물의 출하 시 해당 약품의 휴약 기간의 2배가 지났음을 확인해야 하고, 최초 출하시 인증기관에 잔류물질 검사를 의뢰하고 그 검사성적서를 비치해야 합니다.

15. 위의 설명문구를 읽으신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귀하는 무항생제 인증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동물용 의약품 사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현재와 같은 기준에 따라 무항생제축산물로 판매 가능

② 동물약품이 사용되어 생산된 축산물은 무조건 무항생제축산물로 판매 불가

16. 귀하는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농가가 가축에게 동물용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라도 철저한 잔류물질 검사를 통해 항생물질이 검출되지 않는다면 무항생제축산물로 판매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판매해도 됨 ② 판매하면 안됨

17. 현재 거주 중인 지역 또는 여행 중에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악취, 소음, 수질오염 등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① 경험 있음 ② 경험 없음

18. 현재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악취, 소음, 수질오염 등의 심각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심각하지 않음 ② 심각하지 않음 ③ 심각 ④ 매우 심각

※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여 토양에 환원하고 농산물 및 조사료에 공급하는 자연순환농업을 구현하고 동시에 친환경 농업을 확산시켜 농업의 공익적인 기능을 제고하는 것이 친환경축산의 주요 내용입니다. 지금의 환경오염 관련한 부정적 인식을 극복하기 위해 미래 우리나라 축산업이 나아갈 방향으로 친환경 축산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19. 위의 글을 읽은 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는 친환경 축산의 실천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① 매우 필요 ② 필요 ③ 필요 없음 ④ 전혀 필요 없음

※ 정부 정책 중 “산지생태축산”은 자연 그대로의 산지를 최대로 활용하고 동물복지를 고려한 가축 사육과 환경 친화적인 축산물 생산을 추구하는 축산입니다. 그러나 투입된 자본과 노력에 비해 농가소득이 낮기 때문에 시장에 맡길 경우 활성화되기 어려운 단점이 존재합니다.

20. 위의 글을 읽은 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는 “산지생태축산”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필요 ② 필요 ③ 필요 없음 ④ 전혀 필요 없음

21. 귀하는 산지생태축산의 활성화를 위해 해당 농가에의 정부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필요 ② 필요 ③ 필요 없음 ④ 전혀 필요 없음

부록 2

생산자 조사표(친환경축산물 인증 농가 등)

1. 축종별 농가 조사표(농업관측센터 축산농가 이용 조사)

문 1. 현재 귀하의 농가는 아래의 축산물 인증 중에 받고 있는 인증이 있으십니까? 해당되는 인증에 모두 체크해주십시오. (중복응답)

①	②	③	④	⑤
없음	HACCP 인증	무항생제 인증	유기축산물 인증	동물복지 축산물

문 2. [문 1]에서 답한 인증 중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참여하실 인증을 모두 체크해주십시오.(중복응답)

①	②	③	④	⑤
없음	HACCP 인증	무항생제 인증	유기축산물 인증	동물복지 축산물

문3. 현재는 참여하고 있지 않지만 추후에 인증을 받을 의향이 있는 항목에 모두 체크해주십시오.(중복응답)

①	②	③	④	⑤
없음	HACCP 인증	무항생제 인증	유기축산물 인증	동물복지 축산물

문4. 동물복지 축산 농장 인증을 받을 의향이 없으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기입 : 1순위(　　), 2순위(　　)

① 추가 부지 및 추가 자금 확보의 어려움
② 동물복지에 맞는 사양관리 관련 지식 부족
③ 사육 마릿수 감소(등급저하) 등에 따른 소득 감소 우려
④ 판매처 확보의 어려움
⑤ 정부의 지원 미흡
⑥ 인증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
⑦ 기타(　　)

문5. 친환경축산물(무항생제, 유기)인증을 받을 의향이 없으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기입 : 1순위(　　), 2순위(　　)

① 추가 부지 및 추가 자금 확보의 어려움
② 친환경축산물에 맞는 사양관리 관련 지식 부족
③ 사육 마릿수 감소(등급저하) 등에 따른 소득 감소 우려
④ 판매처 확보의 어려움
⑤ 정부의 지원 미흡
⑥ 인증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
⑦ 기타(　　)

2. 친환경축산물 인증 농가 조사표

친환경축산물 인증 농가 조사표(산란계)

안녕하십니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주한 *"친환경축산물 인증 및 직불제 개편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친환경축산물 인증 농가의 경영실태, 인증제 도입 동기, 애로사항, 건의사항 등을 조사* 중에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친환경축산물 인증과 직불제의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설문조사를 통해 취득한 정보는 연구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는 결코 이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바쁘시더라도 빠짐없이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문 작성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농 장 명		사육경력	_____년 _____개월
성 명		연 령	_____세
주 소 (위 치)			
조사일시	2015년 월 일	연 락 처	휴대폰: 자 택:

문 1. 축산 인증제 도입 현황

인증 명		도입한 경우 √ 표시	인증 년 월	인증기관 명칭
친환경	무항생제		년 월	
축산물	유기		년 월	
동물복지 축산농장			년 월	
HACCP			년 월	

문 2. 친환경축산물(유기, 무항생제) 인증 받은 이유 또는 동기는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두 가지: 1순위( ), 2순위( )

① 환경과 축산물 안전에 대한 고려 없이 축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②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통해 높은 가격에 판매하기 위해
③ 친환경안전축산물 직불금 등 정부 보조를 받기 위해
④ 안정적인 출하처(학교급식, 생협 납품 등)를 확보하기 위해서
⑤ 가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⑥ 지자체의 권유 ⑦ 출하처의 권유
⑧ 기타( )

문 2-1. 귀하께서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이었습니까? 1순위( ), 2순위( ) *순서대로 두 가지 기입*

① 친환경 축산을 위해 필요한 추가 부지 확보
② 시설 등 환경개선을 위한 추가자금 확보
③ 사양관리, 시설개선 방향에 대한 지식 부족
④ 비용 추가 대비 판매가격이 낮아 소득 감소 우려
⑤ 판매처 확보 곤란 ⑥ 정부의 지원 부족
⑦ 기타( )

문 2-2. 친환경축산물 인증 후 운영하시면서 어려웠던 점은 무엇입니까?

1순위(　　), 2순위(　　) *순서대로 두 가지 기입*

① 정부의 관심과 지원 부족　　② 친환경축산 사육 경영 관리 적응

③ 생산비 증가　　④ 생산물 판매 어려움

⑤ 관련 지식의 부족

⑥ 기타(　　)

문 2-3. 친환경축산물 인증과 더불어 다른 인증을 함께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증 명	인증별로 이유를 작성
동물복지 축산농장	1순위(　　), 2순위(　　)
HACCP	1순위(　　), 2순위(　　)

① 환경과 축산물 안전에 대한 고려 없이 축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②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통해 높은 가격에 판매하기 위해

③ 친환경안전축산물 직불금 등 정부 보조를 받기 위해

④ 안정적인 출하처(학교급식, 생협 납품 등)를 확보하기 위해서

⑤ 가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⑥ 지자체의 권유　　⑦ 출하처의 권유

⑧ 기타(　　)

문 3. (복수 인증 취득 농가 대상)인증제도간 중복적인 서류 작성 및 제출 등으로 복수의 인증을 받은 농가들이 번거롭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인증 신청 또는 연장 서류 작성, 현장 심사 등 다른 인증을 신청할 때 중복되는 내용이 있습니까?

중복되는 서류 또는 내용:

문 4. 귀하께서는 친환경축산물 인증 이후, 모든 계란을 친환경축산물로 판매하십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인증 축산물로 판매하지 않은 비중: %)

문 4-1. '아니오'라고 응답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전환기간이 충족되지 않아

② 동물용 의약품을 사용하여 휴약기간의 2배가 지나지 않아

③ 사육중인 가축의 일부만 인증을 받았으므로

④ 기타( )

문 5. 친환경축산물 인증 계란 10개당 평균 판매 가격은 일반 계란에 비해 얼마나 더 받습니까? ( )원/10개 또는 ( )%

문 6.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은 이후 인증 전과 비교하여 생산성, 생산비, 소득 등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습니까?

	인증 이전(연도:)	2015년 기준
사육수수(마리)	마리	마리
축사면적(㎡)	㎡	㎡
방사장면적(㎡)	㎡	㎡
산란율(%)	%	%
1마리당 연간 산란 개수(개)	개/1년	개/1년
폐사율(%)	%	%
도계월령		
월매출(만원)	만원	만원
월지출비용(만원)	만원	만원
소득(만원)	만원	만원

문 6-1. 사육수수 중 친환경축산물로 인증 받은 비율

① 전부 인증 ② 일부만 인증(_____% 또는_____수)

문 6-2. 다음의 비목 중 친환경축산물 인증 이후 증가한 항목을 모두 작성해주십시오.

중복응답가능 ( )

① 사료 ② 방역치료비 중 동물용 의약품비

③ 방역치료비 중 생약 등(약품 대체 물질)

④ 동물용 의약품, 생약 외 방역치료비 ⑤ 수도광열비

⑥ 고용노동비 ⑦ 기타( )

문 6-3. 기타 친환경축산물 인증 이후 변화된 사항

문 6-4. 인증 이후 소득이 감소한 경우, 지속적으로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

문 6-5. 인증 이후 소득이 늘어난 경우, 인증 받은 이후 소요 기간

① 인증 받은 시점부터 ② 인증 받고 1년 후 ③ 인증 받고 2년 후

④ 인증 받고 3년 후 ⑤ 인증 받고 4년 후 ⑥ 인증 받고 _____년 후

문 6-6. 사육기간 동안 항생제가 사용되는 시기에 체크(√)해 주십시오. 인증을 받기 전과 후로 나누어 표시해주십시오.*(※사육기간은 배합사료 급여기준임.)*

	산란전	산란초기	산란중기	산란말기
인증전				
인증후				

※ 무항생제란 명칭 사용이 가축에게 항생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의미로 소비자들이 오해할 수 있으므로 무항생제 명칭을 변경하거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습니다. 또한 무항생제 명칭에 맞게 동물용 의약품 사용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문 7. 귀하께서는 무항생제축산물 명칭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칭을 바꿔야 한다면 현재의 인증 기준을 고려하여 어떠한 명칭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예 (새로운 명칭:_____)

② 아니오(이유:_____)

문 8. 친환경축산물 인증 농가의 항생제 등 동물용 의약품 사용 관련 질문

질병이 발생한 경우 수의사 처방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 사용	① 예 ② 아니오
질병이 발생한 경우 처방매뉴얼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 사용	① 예 ② 아니오
인증 받은 가축에게는 동물용 의약품을 전혀 사용하지 않음.	① 예 ② 아니오

문 8-1. 사료나 음수에 항생제를 첨가하여 사용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문 8-2. 2015년 기준 동물용 의약품을 사용한 가축 마릿수 (수)

문 8-3. 귀하께서는 병아리 입식 혹은 생산부터 도계까지 항생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사육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문 8-4. 소비자 신뢰 구축을 위해 항생제 등 동물용 의약품을 사용한 가축에게서 생산된 축산물은 친환경축산물 인증 표시를 못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이유: _____)
② 반대(이유: _____)

문 8-5. 가축에 항생제를 사용할 경우 전환기간을 재준수한 가축에게만 친환경 축산물 인증 표시를 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이유:_____)
② 반대(이유: _____)

문 9. 향후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유지하실 계획이십니까?( )

① 현행 친환경축산물 인증 유지 ② 인증 중단

문 9-1. 인증을 포기하시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수지 타산이 맞지 않아서 ② 축산업을 포기할 계획으로
③ 기타( )

문 10.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을 받지 않으셨다면, 추후에 인증을 받을 의향이 있으십니까?

① 있음(→문10-1) ② 없음(→문10-2)

문 10-1. 동물복지 인증을 받을 의향이 있으시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두 가지: 1순위( ), 2순위( )

① 축산물 안전에 대한 고려 없이 축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② 인증을 통해 높은 가격에 판매하기 위해
③ 정부 보조를 받기 위해

④ 안정적인 출하처(학교급식, 생협 납품 등)를 확보하기 위해서
⑤ 가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⑥ 지자체의 권유 ⑦ 출하처의 권유
⑧ 기타( )

문 10-2. 동물복지 인증을 받을 의향이 없으시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두 가지: 1순위( ), 2순위( )
① 추가 부지 및 추가 자금 확보의 어려움
② 동물복지에 맞는 사양관리 관련 지식 부족
③ 사육 마릿수 감소(등급저하) 등에 따른 소득 감소 우려
④ 판매처 확보의 어려움 ⑤ 정부의 지원 미흡
⑥ 기타( )

※ 정부는 친환경축산의 확산을 위하여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고 HACCP 인증을 받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친환경안전축산물 직불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 11. 직불금 수령 실적

____년: _____개, 총금액_____만 원	2015년 예상 실적
____년: _____개, 총금액_____만 원	_____개
____년: _____개, 총금액_____만 원	_____만 원

문 11-1. 직불금을 수령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HACCP 인증을 받지 않아
② 직불금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음
③ 인증 축산물의 생산량을 늘린 후 직불금 수령액을 늘리기 위해
④ 다른(유기 또는 동물복지축산) 직불금 수령을 위해
⑤ 기타( )

문 12. 직불금 지급단가 및 유기지속직불금에 대한 만족 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 12-1. 현재의 유기축산물 인증 계란 10개당 지급단가 100원(　　)
① 만족　　② 불만족

문 12-2. 현재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계란 10개당 지급단가 10원(　　)
① 만족　　② 불만족

문 12-3. 유기축산물 인증에 대해서는 5년간(또는 5회) 지급
① 만족　　② 불만족(직불금 지급기간 연장:_____년)

문 13. 친환경축산물 직불제 개선을 위해 건의사항 있으시면 기술하여 주십시오.

부록 3

동물용의약품 휴약기간

부표 3-1. 동물용의약품 휴약기간

동물용의약품	대상 동물	휴약기간
아목시실린 (Amoxicillin)	소(5개월 이하) 돼지(4개월이하)	소 20일 돼지 15일
암피실린 (Ampicillin)	소(6개월이하) 돼지 닭	소 5일 돼지 5일 닭 2일
암피실린 (Ampicillin)	소 돼지	소28일(착유전 3일) 돼지 7일
암피실린 (Ampicillin)	소	소5일(착유전12시간)
카바독스 (Carbadox)	돼지	돼지 70일
염산클로르테트라싸이클린 (Chlortetracycline HCL)	소(착유시제외) 돼지 닭,오리(산란시제외)	소 10일 돼지 15일 닭,오리 7일
다노푸록사신 (Danofloxacin)	소(착유시제외) 돼지 닭,오리(산란시 제외)	소 5일 돼지 25일 닭,오리 5일
디클록사실린나트륨 (Dicloxacillin sodium)	소(착유시제외)	소 30일
엔로푸록사신 (Enrofloxacin)	소(3개월이하) 닭(산란시제외)	소 30일 닭 12일

동물용의약품	대상 동물	휴약기간
엔로푸록사신 (Enrofloxacin)	소(착유시제외) 돼지	소 20일 돼지 20일
에리스로마이신 치오시아네이트 (Erythromycin thiocyanate)	닭(산란시제외)	닭 5일
에리스로마이신 (Erythromycin)	소(6개월 이하) 돼지	소 14일 돼지 7일
후로르페니콜 (Florfenicol)	돼지 방어, 송어, 은어, 뱀장어	돼지 3일 방어 5일 송어, 은어14일, 뱀장어 7일
후루메퀸 (Flumequine)	방어, 광어, 송어, 잉어, 붕어, 뱀장어	방어, 광어, 송어, 잉어, 붕어, 뱀장어 8일
겐타마이신 (Gentamicin)	돼지	돼지 14일
황산겐타마이신 (Gentamicin sulf ate)	돼지	돼지 40일
황산카나마이신 (Kanamycin sulf ate)	돼지 닭(산란시제외)	돼지 14일 닭 7일
황산카나마이신 (Kanamycin sulf ate)	소(착유시제외) 돼지 닭	소 5일 돼지 10일 닭 7일
황산카나마이신 (Kanamycin sulf ate)	소 돼지 닭	소 30일(착유전36시간) 돼지 30일 닭14일(산란전10일)
황산카나마이신 (Kanamycin sulf ate)	돼지	돼지 3일
황산네오마이신 (Neomycin sulf ate)	소(착유시제외) 돼지 닭	소 30일 돼지 20일 닭 14일

동물용의약품	대상 동물	휴약기간
노푸록사신 (Norfloxacin)	닭(산란시 제외)	닭 5일
올라퀸독스 (Olaquindox)	돼지	돼지 28일
옥소린닉산 (Oxolinic acid)	돼지 닭(산란시제외) 방어 송어 잉어 뱀장어	돼지 5일 닭 5일 방어 16일 송어 21일 잉어 28일 뱀장어 25일
옥소린닉산 (Oxolinic acid)	뱀장어 은어	뱀장어 25일 은어 14일
염산옥시테트라사이클린 (Oxytetcycline HCL)	소(착유시제외) 돼지 닭,오리(산란시제외)	소 7일 돼지 7일 닭, 오리 7일
염산옥시테트라사이클린 (Oxytetcycline HCL)	소(착유시제외) 돼지	소 15일(비지속성제제) 소28일(지속성) 돼지 15일(비지속성제제) 돼지 26일(지속성제제)
염산옥시테트라사이클린 (Oxytetcycline HCL)	소 돼지	소 14일(착유전60시간) 돼지 14일
설파디메톡신 (Sulfadimethoxine)	돼지 닭(산란시제외)	돼지 10일 닭 14일
설파디메톡신 (Sulfadimethoxine)	소 돼지	소14일(착유전5일) 돼지 14일
설파메타진나트륨 (Sulfamethazine sodium)	소(착유시제외) 돼지 닭, 오리(산란시제외)	소 10일 돼지 15일 닭,오리 10일

동물용의약품	대상 동물	휴약기간
티아무린(Tia-mulin)	돼지	돼지 5일
티아무린(Tia-mulin)	돼지	돼지 21일
주석산타이로신 (Tylosin tartrate)	소(3개월이하) 돼지(1개월이하 닭(산란시제외)	소 14일 돼지 3일 닭 3일
타이로신 (Tylosin)	소 돼지	소 28일(착유전4일) 돼지 28일
옥시테트라사이클린 (Oxytetracycline)	방어, 뱀장어, 송어, 참돔, 넙치, 조피볼락, 담수어(잉어, 메기)	방어 20일, 뱀장어 20일, 송어 30일, 참돔 20일, 넙치 40일, 조피볼락 20일 담수어(잉어, 메기) 20일
엔로푸록사신 (Enrofloxacin)	돼지	10일
틸미코신 포스페이트 (Tilmicosin phosphate)	소(생후 20개월 이상의 착유우 제외) 돼지(번식돈과 임신돈 제외)	28일 7일
포르말린	넙치	100도일(degree day) $= \frac{100}{\text{수온}(^{o}C)}$
	어란(무지개 송어 및 연어)	-

자료: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1-20호.

부록 4

축산관련 인증 간 기준 비교

1. 시설기준

가. HACCP

○ 축산법에 의한 시설기준

부표 4-1. 한우/육우 사육밀도(축산법)

단위: ㎡

시설형태	번식우	비육우	송아지
방사식	10.0	7.0	2.5
계류식	5.0	5.0	2.5

부표 4-2. 젖소 사육밀도(축산법)

단위: ㎡

시설형태	경산우		미경산우	육성우	송아지
	착유우	건유우			
깔짚방식	16.5	13.5	10.8	6.4	4.3
계류식	8.4	8.4	8.4	6.4	4.3
프리스톨	8.3	8.3	8.3	6.4	4.3

부표 4-3. 돼지 사육밀도(축산법)

단위: ㎡

구분	웅돈	번식돈				비육			
						새끼돼지		육성돈	비육돈
		임신돈	분만돈	종부대기돈	후보돈	초기	후기		
면적	6.0	1.4	3.9	1.4(스톨) 2.6(군사)	2.3(군사)	0.2	0.3	0.45	0.8

부표 4-4. 닭 사육밀도(축산법)

구분		시설	면적	비고
산란계		케이지	0.05㎡/마리	
		평사	0.11㎡/마리	
산란육성계		케이지	0.025㎡/마리	100일령까지 사육
육계	무창계사		39kg/㎡	
	개방계사	강제환기	36kg/㎡	
		자연환기	33kg/㎡	
	케이지		0.046㎡/마리	

나. 무항생제축산물

○ 축산법에 의한 시설기준(HACCP 기준과 동일)
○ 병행사육의 경우 축사 구분

다. 유기축산물

○ 유기 축산물의 사육밀도 준수
○ 병행사육의 경우 축사 구분

부표 4-5. 한우/육우 사육밀도(유기축산물)

단위: ㎡/마리

시설형태	번식우	비육우	송아지
방사식	10.0	7.1	2.5

부표 4-6. 젖소 사육밀도(유기축산물)

단위: ㎡/마리

시설형태	경산우		미경산우	육성우	송아지
	착유우	건유우			
깔짚방식	17.3	17.3	10.9	6.4	4.3
프리스톨	9.5	13.2	8.3	6.4	4.3

부표 4-7. 돼지 사육밀도(유기축산물)

단위: ㎡/마리

구분	웅돈	번식돈				비육			
						새끼돼지		육성돈	비육돈
		임신돈	분만돈	종부대기돈	후보돈	초기	후기		
면적	10.4	3.1	4.0	3.1	3.1	0.2	0.3	1.0	1.5

부표 4-8. 닭 사육밀도(유기축산물)

단위: ㎡/마리

구분	면적	비고
산란계	0.22	
산란육성계	0.16	
육계	0.1	

○ 휴식공간에 깔짚 깔아줄 것

○ 횃대 제공

○ 방목시설

- 포유동물은 조건이 허용하는 한 방목지 또는 운동장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함.
- 가금류는 개방조건에서 사육되어야 하고 조건이 허용되는 한 방목장 접근이 가능해야 함.
- 물오리류는 시냇물, 연못, 호수에 접근이 가능해야 함.

○ 반추동물의 방목시설

- 축사시설의 2배에 해당하는 방목시설 또는 운동장
- 충분한 자연환기와 햇빛이 제공되는 경우 축사 내에 2배 이상의 공간 확보하여 방목시설 대체

○ 케이지 사육 금지

라. 동물복지

○ 동물복지 사육밀도 준수

○ 병행사육 금지

부표 4-9. 돼지 사육밀도(동물복지)

단위: ㎡/마리

면적	후보돈	임신돈	웅돈	10kg이하	10-20kg	20-30kg	30-60kg	60kg이상
휴식공간	0.92	1.3	6.8	0.1	0.13	0.2	0.36	0.66
최소면적	2.3	3.0		0.15	0.2	0.3	0.55	1.0

○ 산란계 사육밀도(동물복지)

- 바닥면적 1㎡당 성계 9마리(7마리 권장)
- 다단구조물 설치된 계사는 다단구조물 포함 ㎡당 9마리, 바닥면적 ㎡당 17마리

○ 육계 사육밀도(동물복지) : ㎡당 19마리 및 30kg

○ 축사에 자연환기와 햇빛 제공

○ 계사

- 깔짚(육계: 전체 계사, 산란계: 계사의 1/3)
- 횃대 제공
- 다단구조물(산란계)

○ 돈사

- 휴식공간은 깔짚이 깔려야 함.

○ 방목시설은 수당 1.1㎡ 이상 제공(닭의 경우)

2. 질병 예방 및 관리

가. HACCP

○ 선행요건 프로그램에 질병관리절차서가 포함됨.
- 자체적인 질병관리 프로그램 작성
- 혈청검사, 위생평가 등의 질병모니터링 실시
- 구충/백신 프로그램 실시

○ 질병발생 시 수의사 처방전에 의한 치료를 실시하고 휴약기간 준수

나. 무항생제축산물

○ 가축의 품종과 계통의 적절한 선택
○ 질병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육장 위생관리
○ 비타민 및 무기물 급여를 통한 면역기능 증진
○ 백신 및 구충제 사용 가능
○ 약초 및 천연물질을 이용한 치료 가능
○ 질병발생시 수의사 처방전에 의한 치료를 실시하고 휴약기간의 2배 준수
○ 동물용의약품 사용 시 잔류물질 허용기준의 1/10 이하

다. 유기축산물

○ 가축의 품종과 계통의 적절한 선택
○ 질병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육장 위생관리
○ 비타민 및 무기물 급여를 통한 면역기능 증진
○ 지역적으로 발생되는 질병이나 기생충에 저항력 있는 종의 선택
○ 백신 및 구충제 사용 가능
○ 약초 및 천연물질을 이용한 치료 가능
○ 질병발생시 수의사 처방전에 의한 치료를 실시하고 휴약기간의 2배 준수
○ 동물용의약품 사용 시 잔류물질 허용기준의 1/10 이하

라. 동물복지

○ 수의사의 자문을 받아 예방 접종 등 질병예방 프로그램 작성
○ 질병예방 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돼지)
- 살모넬라·대장균 등에 의한 질병 관리 프로그램
- 백신 접종 프로그램
- 내·외부 기생충 관리 프로그램
- 병들거나 상처입은 동물의 격리 절차
- 파행 등 발 질병 관리 방법

○ 내·외부 기생충은 적절한 방법으로 방제
○ 질병이나 상처가 있는 가축은 격리시설에 격리하여 치료
○ 매일 1회 이상 병들었거나 상처입었거나 이상행동 등을 보이는지 정밀점검
○ 점검결과 이상 발견되면 즉시 조치하고 점검기록 유지
○ 질병발생시 처방전에 의한 치료실시 ⇒ 휴약기간 2배 준수

3. 사료

가. HACCP

○ 일반사료

나. 무항생제

○ 일반사료
○ 사료에 포함금지 물질
- 포유동물 유래 물질(반추동물)
- 합성항균제, 성장촉진제, 구충제, 항콕시듐제, 호르몬제

다. 유기축산물

○ 유기사료
○ 사료에 포함금지 물질
- 합성화합물
- 포유동물 유래 물질(우유 제외, 반추동물)
- 합성질소 또는 비단백태질소화합물
- 합성항균제, 성장촉진제, 구충제, 항콕시듐제, 호르몬제
- 인위적 합성 및 유전자조작에 의해 제조, 변형된 물질

○ 자급사료포 확보
- 한·육우: 목초지 2,475㎡/마리 또는 사료작물재배지 825㎡/마리
- 젖소: 목초지 3,960㎡/마리 또는 사료작물재배지 1,320㎡/마리
- 면·산양: 목초지 198㎡/마리 또는 사료작물재배지 66㎡/마리
- 사슴: 목초지 660㎡/마리 또는 사료작물재배지 220㎡/마리

○ 외부에서 유기적으로 생산된 조사료를 도입할 경우
- 한·육우: 374㎡/마리
- 젖소: 916㎡/마리

라. 동물복지

○ 포유류 또는 조류 유래 단백질 포함 금지(우유, 계란 제외)
○ 풀 제공

4. 입식 및 전환기간

가. HACCP

○ 특별한 규정 없음

나. 무항생제축산물

○ 무항생제 인증기준에 맞는 가축 입식
○ 아래의 경우 또는 일반농가에서 무항생제 농가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기간 준수
- 이유 직후 또는 부화 직후의 가축
- 번식용 수컷
- 폐사로 인한 새로운 가축 입식

○ 전환기간

부표 4-10. 축종별 최소 사육기간

축종	생산물	최소 사육기간
한우·육우	식육	입식 후 출하 시까지(최소 12개월)
	송아지식육	6개월령 미만의 송아지 입식 후 6개월
젖소	시유	착유우는 90일, 새끼를 낳지 않은 암소는 6개월
산양	식육	입식 후 출하 시까지(최소 5개월)
	시유	착유양은 90일, 새끼를 낳지 않은 암양은 6개월
돼지	식육	입식 후 출하 시까지(최소 5개월)
육계	식육	입식 후 출하 시까지(최소 3주)
산란계	알	입식 후 3개월
오리	식육	입식 후 출하 시까지(최소 6주)
	알	입식 후 3개월
메추리	알	입식 후 3개월
사슴	식육	입식 후 출하 시까지(최소 12개월)
	녹용	녹용 성장기간 4개월

다. 유기축산물

○ 유기축산물 인증기준에 맞는 가축 입식
○ 아래의 경우 또는 일반농가에서 유기축산물 농가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기간 준수

- 이유직후 또는 부화직후의 가축
- 번식용 수컷
- 폐사로 인한 새로운 가축 입식

○ 전환기간: 무항생제 축산물과 동일

라. 동물복지

○ 입식제한
- 돼지: 동물복지 인증농장에서 생산된 가축 입식(웅돈, 후보돈 제외)
- 육계: 일반농장으로부터 입식의 경우 4주 이상 사육
- 산란계: 일반농장으로부터 입식의 경우 2개월 이상 사육

5. 기록관리

가. HACCP

○ 원료
- 규격에 적합함을 증빙하는 원료공급업체의 시험증명서
- 공급업체의 시험성적서를 검증한 업소의 지도·감독 기록
- 온도에 민감하거나 유통기한이 설정된 원료에 대한 보관온도 및 보관기간 기록

○ 공정관리
- 중요관리점과 관련된 모든 모니터링 기록
- 축산식품 취급과정을 적절하게 지속적으로 운영하는지를 검증한 기록

○ 완제품
- 축산식품의 안전한 생산을 보장할 수 있는 자료 및 기록
- 제품의 안전한 유통기한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기록
- HACCP 관리계획의 적합성을 인정한 문서

○ 보관 및 유통
- 보관 및 유통온도 기록
- 유통기간이 경과된 제품이 출고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기록

○ 한계기준 일탈 및 개선조치
- 중요관리점의 한계기준 이탈 시 취해진 공정이나 제품에 대한 모든 개선조치 기록

○ 검증
- HACCP 관리계획의 설정, 변경 및 재평가 기록

○ 종업원 교육
- 축산식품위생 및 HACCP 수행에 관한 교육훈련 기록

나. 무항생제축산물

○ 경영관련자료 기록 및 보관하고 열람을 요청할 때 제공. 1년 보관
- 가축입식 등 구입사항과 번식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자료: 일자별 가축 구입 마리수·번식 마릿수, 가축 연령 및 가축 인증 사항
- 사료의 생산·구입 및 급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자료: 사료명, 사료의 종류, 일자별 생산량·구입량·급여량, 사용가능한 사료임을 증명하는 서류
- 예방 또는 치료목적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자료: 자재명, 일자별 사용량, 사용목적, 자재구매 영수증
- 동물용의약품 구매·사용·보관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자료: 약품명, 일자별 구매·사용량·보관량, 구매영수증
- 질병의 진단 및 처방에 관한 자료: 수의사 처방전 또는 수의사 처방매뉴얼
- 퇴비·액비의 발생·처리 사항을 기록한 자료: 기간별 발생량, 처리량, 처리방법
- 축산물의 생산량·출하량, 출하처별 거래 내용 및 도축·가공업체에 관하여 기록한 자료: 일자별 생산량, 일자별·출하처별 출하량, 일자별 도축·가공량, 도축·가공업체명

○ 병행사육의 경우 인증을 신청하지 않은 가축에 대한 동물약품관련 기록 및 출하 현황

다. 유기축산물

○ 무항생제와 동일

라. 동물복지

○ 사육·유통 관련 자료를 2년 이상 보관, 관계기관이 열람을 요구할 때 제공
- 동물의 입식·출하 현황 폐사체 관리현황
- 성장 단계별 사육 개체수 및 축사 내부면적(휴식공간 별도 표시)
- 사료의 생산·구입, 영양성분 및 급여내용
- 사료 섭취량 및 음수량(음수량은 측정이 가능할 경우에만 기록)
- 일일 최고 및 최저 온도
- 청소 및 소독내용
- 깔짚 소요내역 및 구입 증빙자료
- 질병예방 프로그램
- 약품, 백신 구입·사용내용 및 질병관리 현황
- 건강상태 등 점검 내용
- 기계화·자동화 설비, 경보장치, 보조전력 공급장치 등의 점검내용
- 출하량 및 운송차량, 출하처 별 거래내역
- 점등 시간

6. 가축의 신체 절단 및 변형

가. HACCP

○ 관련 규정 없음

나. 무항생제축산물

○ 관련규정 없음

다. 유기축산물

○ 부리/꼬리/이빨/뿔 자르기 금지
○ 꼬리부분에 접착밴드 붙이기 금지

라. 동물복지

○ 부리/꼬리/이빨 자르기 금지

7. 분뇨처리

가. HACCP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나. 무항생제축산물

○ 경축 순환: 퇴비 또는 액비로 자원화
○ 가축 운동장의 분뇨 배출 관리

다. 유기축산물

○ 무항생제축산물과 동일

라. 동물복지

○ 경축순환 권장

8. 인증제 간 비교

부표 4-11. 인증제 간 비교

	HACCP	무항생제	유기	동물복지
단체관리	규정없음	단체관리가능	단체관리가능	규정없음
사육시설	축산법	축산법	사육밀도, 깔짚, 횃대	사육밀도, 깔짚, 횃대
방목	규정없음	규정없음	필요	필요
질병예방	질병예방프로그램	위생관리/면역증진	위생관리/면역증진	질병예방프로그램
질병치료	수의사처방 휴약기간	수의사처방 휴약기간 2배	수의사처방 휴약기간 2배	수의사처방 휴약기간 2배
사료	일반	화학합성물질 금지 포유동물유래 물질 금지	유기사료 화학합성물질 금지 포유동물유래 물질 금지	포유류,조류 유래물질 금지
조사료포	규정없음	규정없음	필요	규정없음
입식제한	규정없음	무항생제인증	유기인증	동물복지인증
신체변형	규정없음	규정없음	불가(예외인정)	불가(예외인정)
생축운송	규정없음	고통최소화	고통최소화 전기자극/안정제금지	규정없음
분뇨처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축 순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축순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HACCP	무항생제	유기	동물복지
기록관리	입식/구입	O	O	O	O
	번식	O	O	O	X
	사료생산/구입	O	O	O	O
	사육개체수	O	O	O	O
	사료급여	O	O	O	O
	동물약품 구매/사용/보관	O	O	O	O
	처방에 관한 사항	O	O	O	O
	축산물출하현황	O	O	O	O
	도축/가공업체	X	O	O	X
	퇴·액비 발생/처리	X	O	O	X
	온도	O	X	X	O
	청소/소독	O	X	X	O
	시설점점내용	O	X	X	O
	점등시간	O	X	O	O
	깔짚소요내역	X	X	X	O

참고 문헌

감사원. 2014. 2.「감사결과 보고서: 농식품 인증제도 운영실태」. 특정감사.

감사원. 2015. 2.「감사결과 보고서: 축산물 안전관리 실태」. 특정감사.

김창길·우병준·이상건. 2008. 3.『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직불제 도입방안 연구』. 연구보고 C2008-1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창길·정학균·문동현. 2012.『친환경농식품의 생산·소비실태와 시장전망』. P15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창길·정학균·장정경·권회민·문동현. 2009. 12.『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개편 및 환경기준 준수조건 지원정책 도입방안 연구』. C2009-6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현중·송우진·최승철. 2015. 9. "계란의 속성가격 분석을 이용한 인증 축산물의 가치 평가."『농업경영·정책연구 제42권 제3호』. 한국축산경영학회·한국농식품정책학회.

농림축산식품부·(사)한국초지조사료학회. 2014. 12.『산지생태축산 운영 매뉴얼』.

박동규·김창길·임송수·송미령·김배성·박경철. 2004.『중장기 직접지불제 확충방안 연구」. C2004-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종수·석희진·문상호·김기현·황규민. 2014. 12.『동물복지 축산 직불제 도입방안』. 충남대학교·농림축산식품부.

석희진. 2015. 2. "친환경축산물 차별화를 위한 소비자 구매행동 분석." 건국대 박사학위 논문.

신용광·황윤재. 2007.『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개선방안』. R55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병준·허덕·김현중. 2010. 11.『동물복지형 축산의 동향과 정책 과제」. R61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유병덕·김난영·한의선. 2014.『친환경축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타당성 검토: 친환경축산인증제도 개편을 통한 통합운영 방안』. 농림축산식품부.

유환진·송원일·장경만. 2010. 9. "친환경축산물 관련제도의 개선방안."『농업경영·정책연구 제37권 제3호』. 한국축산경영학회·한국농식품정책학회.

이종인·김희걸·신동민·오송련·노성훈. 2014. 11.『해외 동물복지 축산정책 현황조사』. 강원대학교·농림축산식품부.

정귀옥·허정호·이종민·윤이란·최유정·김종수. 2010. "돼지 분변 및 도체에서 분리한 대장균, 장구균의 항생제 내성율 조사". 한국가축위생학회지. 33(3): 241-248.

정민국·이명기·황윤재·김윤형·김현중·이용건. 2011. 9.『축산업 선진화 방안 연구』.

C2011-2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학균·김창길·김종진. 2014. 1.『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개편방안 연구』. C2014-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통계청. 2015. 6.『2014년 축산물 생산비』.

한성일·허덕·김기현·김현중·이휘. 2013. 3.『친환경안전축산물 직불제 개편 방안 연구』. 건국대학교·한국농어촌연구원.

허 덕. 2014. 3. "일본의 동물복지정책과 사례."『세계농업 제163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허 덕·김창길·송주호·임성진. 2005. 3.『친환경 축산 직불제 시범사업 평가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 C2005-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허 덕·이병오·김현중. 2014. 6. "친환경축산 정책의 방향: 유기축산을 중심으로." 한국축산경영학회 하계 심포지움.

황윤재·허 덕·반현정. 2014. 10.『축산물 안전성 검사 개선방안 연구』. C2014-3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사)친환경축산협회. 2015. 12.『월간 친환경축산 종합정보 12월호』.

Changhee Kim and Chanjin Chung. 2011. "Hedonic Analysis of Retail Prices Using Store Scanner Data: An Application to the Korean Egg Market." *Journal of Food Distribution Research* 42(3): 14-27.

Hermansen, J.E. 2003. 3. "Organic Livestock Production System and Appropriate Development in Relation to Public Expectation." *Livestock Production Science* Vol. 80 Issues 1-2: 3-15.

Jae Bong Chang, Jayson L. Lusk, and F. Bailey Norwood. 2010. "The Price of Happy Hens: A Hedonic Analysis of Retail Egg Prices." *Journal of Agricultural and Resource Economics* 35(3): 406-423.

Lohr, Luanne and Lennart Salomonsson. 2000. "Conversion Subsidies for Organic Production: Results from Sweden and Lessons for the United States." *Agricultural Economics* 22: 133-146.

OECD. 2004. Agriculture, Trade, and the Environment: The Dairy Sector.

Sneeringer, S., J. MacDonald, N. Key, W. McBride, and K(2015). Mathews, "Economics of Antibiotic Use in U.S. Livestock Proudtcion," *Economic Research Report* Number 200, USDA.

Thasanee Satimanon and Dave D. Weatherspoon. 2010. "Hedonic Analysis of Sustainable Food Products." *International Food and Agribusiness Management Review* 13: 57-7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내부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인증관리정보시스템(www.enviagro.go.kr).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www.naqs.go.kr) 고시 제2014-38호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www.naqs.go.kr) 고시 제2015-56호(2015. 11. 30).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등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 일부개정고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www.naqs.go.kr)-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지급선정신청.
농림축산식품부 2014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브랜드경영체지원사업(축산계열화사업).
축산법.
세계무역기구협정의이행에관한특별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미국 농무성(http://www.usda.gov).
일본농림수산성(www.maff.go.jp).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www.ihaccp.or.kr).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www.ihaccp.or.kr)-친환경인증-절차안내.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www.ihaccp.or.kr)-친환경인증-친환경축산물인증제도 소개.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통계청(kosis.kr)-가축동향조사.
농림수산식품부 2010. 4. 9일자 보도자료 “사료용 항생제 없이 축산 가능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4-25호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농림축산식품부 2013. 10. 24일자 보도자료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전면 개편.”
농림축산식품부 2013. 7. 24일자 보도자료 “동물약품 수의사 처방제, 8월 2일부터 실시.”
농림축산식품부 2014. 1. 16일자 보도자료 “농식품부,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 종합대책 마련.”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각 연도).
농림축산식품부(www.mafra.go.kr)-산지생태축산농장 시범조성사업 지침.
농림축산식품부(www.mafra.go.kr)-정책 홍보-축산분야-산지생태축산활성화.